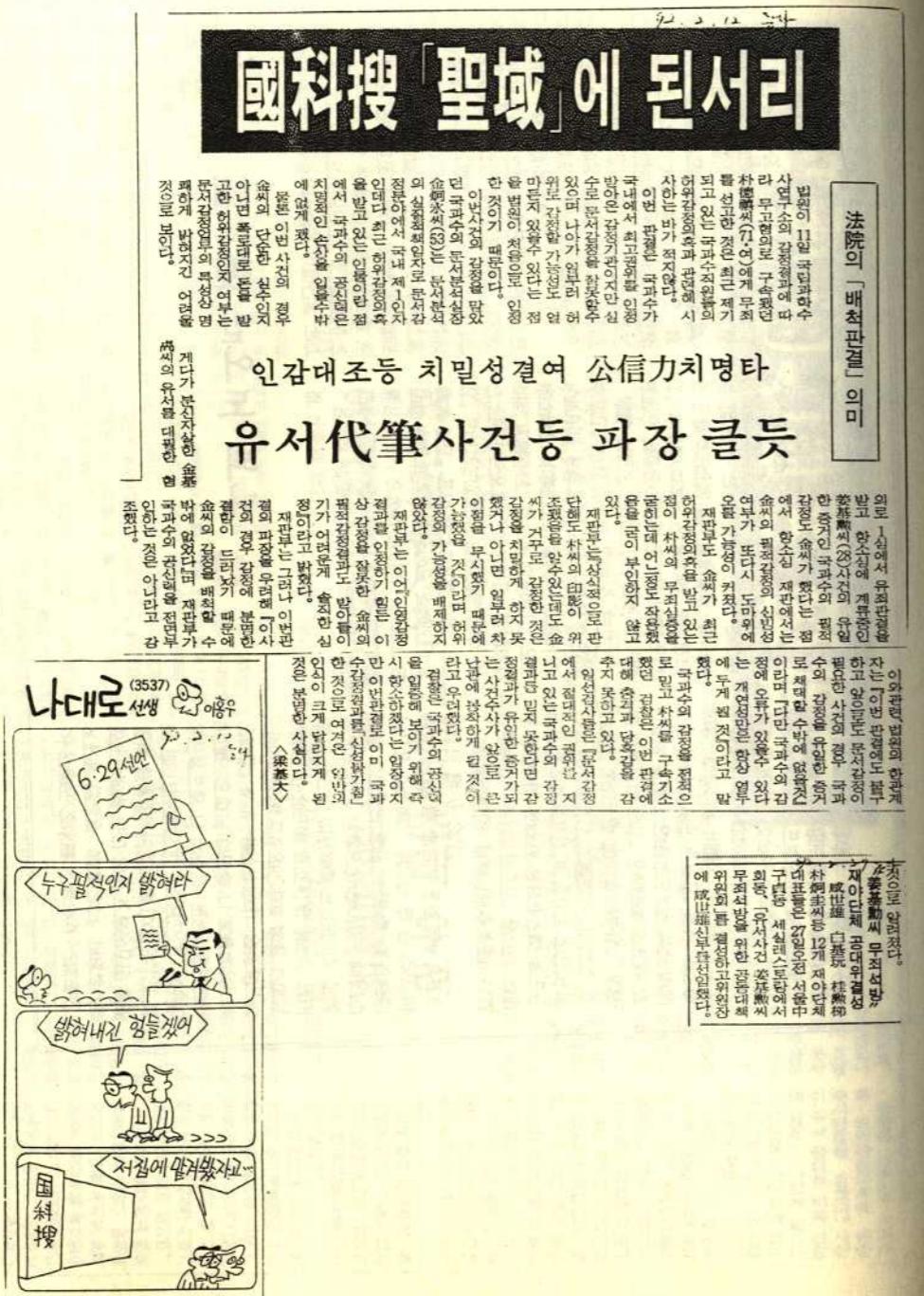


■자료 A-23 (동아, 92.2.12.)



■자료 B-11

성명서

국과수 허위감정사건에 대한 입장

본회는 이번 국과수 직원의 허위감정사건이 드러난 것에 대해 엄청난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번 국과수의 비리는 국가기관이라는 허울을 쓰고 국민을 기만해온 6공정권의 부도덕성과 부폐상을 잘 반영하는 사건이라는 점에 주목한다.

더우기 이번 사건은 지난 해 5월 김기설씨 유서사건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재판부는 국과수의 감정결과를 존중해 강기훈씨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으나 이번 사건을 통해 국과수의 판정결과는 도저히 신뢰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앞으로 진행될 강기훈씨의 2심 재판에 앞서 재판부는 먼저 국과수에 대한 단죄를 내려야 할 것이다.

본회는 이번 사건의 진상을 철저하게 밝히고 아울러 책임자를 처벌하여야 하며 국과수의 필적감정결과를 근거로 유죄선고를 받은 강기훈씨의 무죄를 온 국민앞에 철저히 밝히고 강기훈씨를 비롯한 민족민주진영 명예회복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줄 것을 현 정권에 강력히 촉구한다.

1992.년 2월 12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위원장 박광재

■자료 B-12

국립과학수사연구소 허위감정사건에 대한 우리의 입장

이번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문서분석실장 김형영씨의 허위감정사건을 접한 우리는 전국민과 함께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음을 밝힌다. 그간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국가 공공기관의 권위와 엄정성을 내세워 수많은 재판의 판결에 영향을 미쳐왔다. 이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그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과학을 빙자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비리행각은 6공정권의 부도덕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며, 현정권의 총체적 부패상, 타락상의 일각에 불과한 것이 이번 허위감정 폭로사건의 본질이다.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과 관련하여 허위감정의 핵심인물인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문서분석실장 김형영의 경우, 지난해 5월 분신한 김기설씨의 유서를 강기훈씨가 대필했다고 감정하고 법정에서 증언한 자이다. 이번 허위감정 폭로사건을 통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결코 중립적 기관이 될 수 없으며, 강기훈씨가 유서를 대필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가 얼마나 허위에 찬 날조였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설립된 이후로 정치적 사건의 경우 역대 독재정권이 저지른 범죄행위에 대해 국립과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면죄부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 멀리는 4·19혁명 당시 김주열역사의 타살을 의사로, YH사건 당시 김경숙씨의 죽음을 추락사로 부검결과를 발표하였으며, 가까이는 박종철역사 고문실해사건, 당시 외압에 의해 부검감정서를 날조한 바 있다. 또한 인천연안가스 노동자 신호수 경찰각서에 대한 감정, 이철규군 사망사건, 박창수씨 사건 등에서 허위감정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국가기관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또한 그동안 피해받았을지 모를 많은 국민들의 명예와 재산권을 회복하기 위해서도 이 사건의 진상을 신속히 규명되어야 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검찰은 수사에 대한 소극적 태도를 버리고 신속히 진상을 규명해야 하며, 은폐하거나 축소하려 해서는 안 된다.
2.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고 김기설 열사의 유서대필 혐의로 구속된 강기훈씨를 즉각 석방하고 이 사건을 원점에서부터 다시 재규명해야 한다.
3. 김형영씨 등 이번 사건 관계자 및 김기설 열사 유서대필 조작사건에 관여한 관계자 모두를 구속 처벌하고 내무부장관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

1. 허위감정 웬말이냐, 국과수를 해체하라!
2. 허위감정 책임지고 내무장관 사퇴하라!
3. 유서대필 조작이다. 강기훈을 석방하라!
4. 유서대필 허위감정 김형영을 즉각 구속 처벌하라!
5. 국과수를 비호하는 검찰은 각성하라!
6. 허위감정 진상규명 관련자를 구속 처벌하라!
7. 국민은 분노한다. 허위감정 웬말이냐 국과수를 박살내자!

1992년 2월 14일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모임, 대한성공회 전국정의실천사제단,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주의 민족통일전국연합, 민주화실천기족운동협의회, 민중당, 민중회의준비위원회, 박노해석방대책위원회, 불교 인권위원회, 사회주의연구회, 윤석양후원사업회, 임수경후원사업회,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수임위원회,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인권위원회, 한국여신학자협의회

■자료 B-13

성명서

검찰의 국과수 감정비리사건에 대한 축소은폐수사를 규탄한다.

우리는 이번 국과수 뇌물수수 및 허위감정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태도에 대해 온 국민과 함께 분노하면서 이를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그동안 「국립」과 「과학」이라는 미명하에 각종 민·형사사건에서 뇌물을 받고 허위감정을 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했을 뿐만 아니라 무고한 사람들을 죄인으로 만드는 펜펜스러운 범죄행위를 저질러 왔음이 드러났다. 또 시국사건의 경우 국과수는 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 이철규군 사망사건, 박창수씨 사망사건 등에서 소위 부검결과를 통해 검찰의 축소조작 수사에 근거를 제공하여 왔다. 뿐만 아니라 국과수는 소위 유서대필사건에서 검찰의 압력에 굴복하여 강기훈씨가 김기설씨의 유서를 대필했다고 허위감정함으로써 무고한 강기훈씨로 하여금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만들었다.

우리는 국과수의 뇌물수수 및 허위감정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이 이번에야말로 과거의 이와 유사한 사건에서 보여왔던 국민여론 무마를 위한 축소·은폐의 태도를 벗어나 사건의 전모를 명백히 밝혀주기를 기대왔다. 그러나 그러한 기대를 저버리고 검찰은 이번에도 역시 진화성 수사와 사건의 축소·은폐에 급급하여 서둘러 수사를 마무리지었다.

우리는 검찰의 이번 사건 수사발표 내용이 국과수 감정비리의 빙상의 일각에 지나지 않음을 확신하다. 따라서 우리는 검찰이 그동안 국과수가 저질려온 뇌물수수 행각의 전모를 밝히고, 그것이 허위감정의 댓가였음을 밝힐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의 의혹과 검찰에 대한 불신은 더욱 커질 것이며 검찰은 자신의 권위를 스스로 땅에 묻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하늘을 결코 손바닥 하나로 가릴 수는 없다. 우리는 검찰이 계속해서 이번 사건에 대한 축소·은폐를 기도한다면 국과수 고발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검찰의 축소·은폐행위를 폭로할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1992. 2. 1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불교 인권위원회,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연합 인권위원회, 대한성공회 정의실천사제단, 민주화실천기족운동협의회,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수임위원회, 단국대학교 총학생회, 서울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

■자료 B-14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주소: 성북구 동소문동 1가 51번지 무성빌딩 301호

전화: 743-9127.8

팩스: 742-8289

수신: 각 언론사 사회부

제목: 국과수 허위감정 제보자 조병길씨 법정구속에 대한 논평

우리는 국과수 허위감정비리에 대한 검찰의 축소 은폐수사에 이어 감정비리 제보자인 조병길씨에 대한 법정구속을 보면서 검찰당국의 치졸한 행위에 대해 분노와 함께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이번 제보자에 대한 법정구속은 이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큰 허위감정 제보를 원천봉쇄하려는 대국민 협박에 다름 아닌 것이다.

더구나 밝혀지기 어려운 국가기관의 비리와 부정을 폭로한 제보자에 대해 사법부가 보호해주기에는 커녕 오히려 법정구속한 것은 누가 보아도 납득할 수 없는 처사이며, 검찰뿐만 아니라 사법부에 대해서도 불신과 의혹을 더욱 가중시키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번 제보자에 대한 법정구속이 허위감정 과문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현재 재판에 계류중인 사건들, 특히 소위 유서대필사건에서 검찰이 받을 치명적 타격을 회피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는 의혹을 떨쳐버릴 수 없다.

이처럼 사회정의를 바로세워야 할 검찰당국이 국가기관의 비리와 부정을 축소 은폐하고 사법부가 이를 방조한다면 공권력의 부정과 비리는 계속될 것이며 그 과정에서 무고한 국민의 희생은 계속될 것이다.

검찰은 지금이라도 이성을 되찾아 조병길씨를 석방하고 국과수 허위감정사건을 전면 재수사해야 할 것이다.

■자료 B-15

기자회견문

'유서사건' 강기훈씨 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결성에 즈음하여

지난해, 백끌단의 쇠파이프에 의하여 강경대 학생이 타살된 사건을 계기로 공권력의 폭력에 항의하는 국민적 분노의 합성이 무섭게 물결쳤다. 그 분노의 물결이 절정에 이른 무렵, 폭력정권에 항의하여 분신한 점니련 사회국부장 고 김기설씨의 유서가 대っふ된 것이라는 해괴한 주장이 검찰로부터 언론에 유포되어 우리를 놀라게 했다. 그후 강기훈이라는 젊은이가 언론의 집중포화 속에서 영문도 모른 채 자살방조자가 되어 검찰에 의해 구속 기소되기에 이르렀다. 강기훈씨가 구속에 이르는 과정에서 검찰이 저지른 주변 여러 사람에 대한 인권침해 또는 결코 목과할 수 없는 것이었다.

검찰은 공소장에 유서를 대っふ한 시기는 물론 장소와 경위를 밝히지도 못한 채 강기훈씨를 구속 기소하였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정치권력이 자신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무고한 개인의 명예와 인권을 제물로 삼으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심각한 우려와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재판과정에서 진실이 밝혀지고 강기훈씨의 결백이 입증되어 그의 인권이 끝내 회복될 수 있으리라 기대해왔던 것이다.

그러나 강기훈씨에 대한 1심 재판의 결과는 강기훈씨에게 징역 3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함으로써 우리의 그러한 기대를 짓밟았다. 재판부는 마땅히 기각하여야 했을 강기훈씨에 대한 검찰의 막연하고도 부실한 기소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였다. 또한 과학적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비슷해보이는 글씨 몇개만을 끌라 확대비교해 놓은 것에 불과한 국과수의 감정결과를 유죄의 가장 유력한 증거로 채택해버렸다. 반면에 결론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설득력 있는 근거를 열거하면서 상세히 제시하고 있는 일본인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극히 사소한 문제를 트집잡아 외면했다. 더구나 자유로운 상태에서 임의로 진술한 홍성은씨의 법정증언 대신에 검찰에서의 불법적 강압수사 아래 이루어진 진술을 채택해버림으로써 법원 스스로가 자신의 권위를 팽개치고 권력의 요구에 복종하는 태도를 보여주었다. 그 판결은 비약과 억측과 강변으로 가득차 있다.

우리는 강기훈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을 앞둔 이 시점에서 무고한 개인의 양심과 결백이 거대한 공권력 앞에 무참히 짓밟히는 비참한 현실을 보고 앉아만 있을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유서사건' 강기훈씨의 무죄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하기에 이르렀다.

강기훈 공대위는 강기훈씨의 무죄석방을 목표로 항소심 재판부의 공정한 재판을 촉구하는 운동, 유서사건의 전상과 강기훈의 결백을 알리는 운동 등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다.

최근 국과수의 허위감정비리가 드러나 온 국민을 경악시킨 바 있다. 허위감정비리의 주범인 김형영(국과수 전문서분석실장)이 강기훈씨가 유서를 대っふ했다고 감정한 바로 그 장본인이라는 사실에 의하여 이제 강기훈씨의 결백은 더욱 분명해졌다. 강기훈씨는 즉각 석방되어야 하며, 그동안 흔 것을 짐은 것이라 우겨온 세력들은 심판받아야 한다.

우리는 이 암심과 비양심, 진실과 거짓의 싸움에서 결국 양심과 진실이 승리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 싸움에서의 승리는 강기훈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양심과 진실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승리로 기록될 것이다.

1992.2.24.

'유서사건' 강기훈씨 무죄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위원장 신부 함 세 웅

■자료 B-16

성명서

국과수 허위감정 의혹사건에 대한 검찰의 축소·은폐수사를 규탄한다

우리를 경악케 하는 대형비리 의혹사건이 터질 때마다 권력의 검은 손은 언제나 그 진상을 은폐하기 위해 집요하고도 치열한 공작을 일삼아왔다. 이것은 병든 이 시대를 특징짓는 뚜렷한 증후다.

우리는 이번 국과수 직원의 허위감정 의혹사건과 이에 대한 검찰의 축소·은폐수사, 그리고 문서감정에 얹힌 비리를 폭로한 조병길씨에 대한 구속조치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다시 한번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국과수는 그동안 '국립'과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민·형사사건 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쳐왔다. 그러나 이번 허위감정 의혹사건으로 인해 온 국민을 국과수의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하여 크게 의심하고 있다. 과거에는 속삭임으로서만 간간히 들려오던 국과수 문서감정에 대한 국민의 원성은, 이른바 '유서대필사건'에 뒤이은 이번 허위감정 의혹과 같은 충격적인 사건을 거치면서 이제는 분노의 거센 물줄기가 되어 우리 사회를 뒤흔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이번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하여 힘을 다하는 커녕 오히려 분노하는 국민 여론 무마를 위하여 사건의 축소·은폐에 급급하고 있다. 검찰은 "뇌물수수는 있었으나 허위감정은 없었다" 따위의 비상식적인 궤변을 앞세워 수사를 서둘러 마무리지었을 뿐만 아니라 놀랍게도 감정비리의 제보자인 조병길씨마저 기어이 구속하기에 이르렀다.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제보자를 무고죄로 구속해버린 것은 강압과 회유로써 그 제보자의 입을 막아버림과 동시에 앞으로도 이어질지도 모르는 있는 또 다른 감정비리 제보를 미리 막으려는 의도를 드러낸 치졸한 처사로 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처사는 국과수의 감정비리와 관련된 각종 사건들, 그중에서도 특히 항소심 재판을 바로 눈앞에 둔 이른바 '유서대필 사건'에서 검찰이 반드시 입게 될 치명적인 타격을 어떻게든 회피해보려는 절망적인 몸부림 속에서 나왔을 것임을 우리는 의심하지 않는다.

사회정의를 바로세워야 할 검찰이 계속 이런 사건의 은폐와 축소에 골몰한다면 우리 사회 공권력의 호이포와 비리는 계속 판을 칠 것이며, 그 과정에서 무고한 국민들의 고통은 늘어만 갈 것이다.

이에 우리는 자구책으로서 우선 국과수 전 문서분석실장 김형영을 허위감정 혐의로 고발하는 것을 신중히 검토·준비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검찰의 검은 기도에 맞서나갈 것을 천명한다.

검찰은 지금이라도 이성을 되찾아 조병길씨를 석방하고 국과수 허위감정 의혹사건을 전면 재수사해야 한다.

1992. 2. 24.

'유서사건' 강기훈씨 무죄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 하는 모임, 단국대학교 총학생회, 대한성공회 정의실천사제단, 민주주의 민족통일 전국연합 인권위원회, 민주화실천기족운동협의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불교 인권위원회, 서울 민주·통일 민중운동연합, 서울지역 민주청년단체협의회,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수임위원회,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연합 인권위원회, 한국 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자료 다-5 (공판기록 2243~2249)

서울지방검찰청

1992. 2. 18.

수신 서울고등법원 발신 서울지방검찰청
제목 항소이유서 검사 신상규

아래와 같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합니다.

피고인 성명 강기훈(姜基勳)

주민등록번호

죄명 자살방조, 국가보안법 위반

선고 법원 서울형사지방법원 제25부

선고 일자 1991. 12. 20.

항소 일자 1991. 12. 26.

항소 이유 별지와 같음.

비고 2나 401호

항소이유

1. 본건 공소사실은 공소장 기재내용³¹²⁾과 같으므로 이를 원용합니다.

원심은 본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에게 징역 7년에 자격정지 3년의 선고를 구하는 검찰의 의견과는 달리 징역 3년에 자격정지 1년6월을 선고하였으나 이는 그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합니다.

1. 첫째로, 장장 5개월 동안 10차에 걸쳐 특별재판기일까지 지정하면서 때로는 자정까지 계속되는 원심 재판부의 철저한 공판과정에서 명백히 밝혀진 바와 같이, 피고인은 단국대학교 재학 당시 "군부독재타

312) 총자료집 II 책 27쪽 참조.

도와 민중민주정부 수립 및 민족자주통일을 위한 투쟁위원회"(약칭:삼민투)의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반체제 학생운동을 전개하다가 1985. 8. 31. 학사경고 제적당한 후 1985. 11. 18.에는 "가락동 민정당 연수원 점거방화사건"을 주동하여 1986. 3. 28.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마산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1987. 7. 8. 가석방으로 출소한 자로서 그후에도 개전의 정이 없이 1988. 11.에 이르러서는 "상우"라는 가명으로 무장봉기 등에 의한 폭력혁명을 목적으로 하는 이적단체인 "혁명의 불꽃"그룹에 가입한 후 1989. 4. 경에는 피고인 스스로 공개된 외부조직에 침투, 활동할 것을 자원하여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약칭: 전노운협)의 연대사업실무 간사로, 같은 해 5월경 "이현우"라는 가명으로 전국민주운동연합(약칭: 전민련)에 가입, 위 그룹을 위하여 암약하고 같은 해 8.경 등 이적단체가 "혁명적 노동자계급 투쟁동맹" (약칭: 혁노맹)으로 확대 개편된 후에까지 "김정훈"이라는 가명으로 그 혁심멤버인 노성철 등과 계속 접촉하면서 급진적 파격 변혁노선인 소위 민족민주 혁명이론(NDR)에 따라 활약한 좌경폭력혁명분자입니다.

피고인이 가입활동해 온 "혁명의 불꽃"그룹은 그 연루자들에 대한 재판과정에서 그 성격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듯이 우리나라를 기층민중에 대한 억압과 차취의 기구일 따름인 신식민지국가독점자본주의 체제로 규정하고 노동자, 농민 등 기층민중이 무장봉기하여 미제국주의와 파쇼독재권력인 현정권 및 독점자본을 타도하고 임시혁명정부를 구성, 혁명적 사회변혁을 수행함으로써 소위 민중 주체의 민중공화국을 구성한 다음 북한과 연방제로 통일하여 궁극적으로는 공산주의 사회를 실현한다는 것을 최소 강령으로 하고 있으며, "혁명의 불꽃"그룹을 모체로 확대 개편된 혁노맹은 그 목표실현을 위하여 지하 노동당 건설, 혁명군대 창설, 요인암살 등 테러, 무장수단 비축 등 구체적 전술계획까지 수립한 하이적단체입니다.

피고인은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도 진술했듯이 그의

낡은 혁명이론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피고인은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공산주의자의 10대 신조를 맹신하고 지하이적단체인 “혁명의 불꽃”그룹에 가입하여 민족민주혁명이론(NDR)으로 무장, 그 실천의 장을 엿보던 중 1991. 봄 소위 “강경대군 치사사건”으로 고조된 재야운동권의 반정부투쟁분위기와 잇단 분신자살로 야기된 극도의 사회혼란을 이용하여 현정부를 타도한 후 민중 주체의 민중민주정부의 수립을 획책하면서 민중봉기를 유도, 그 기폭제로 삼기 위하여 피고인의 친구이자 이념적 동지인 김기설의 유서를 대필해 주어 그의 자살을 부추겼습니다. 이는 목적을 위하여는 동료의 생명까지도 혁명의 도구로 사용하는 좌경혁명분자로서의 피고인 자신의 비인간적, 반인륜적 성향을 여지없이 드러낸 것으로 인간의 존엄의 가치를 지상의 이념으로 삼고 있는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 아래에서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천인공노할 범죄라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셋째로, 이 사건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피고인의 비도덕적이고 이중적인 이중적인 태도에 대하여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기설의 분신자살사건이 있은 후 그 배후가 있거나 하는 국민적 의혹이 있어, 그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검찰이 수사에 착수, 유서대필 여부가 수사의 초점이 되었고, 피고인이 혐의자로 부각되어 증거가 수집되어 가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검찰이 이 사건을 조작하였고, 피고인 자신은 가장 도덕적인 것처럼 선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김기설이 남긴 수첩이 조작된 것으로 명백히 밝혀졌을 뿐 아니라 일부 변호인은 검찰에 조사를 받으러 가는 참고인에게 거짓 진술을 하도록 지시 내지 유도하는가 하면 피고인 자신은 마치 재야운동권의 도덕성이 좌경혁명분자인 자신의 유·무죄에 걸려 있는 듯한 태도를 보이며 명백한 증거가 있는 사실에 대하여도

궁지에 몰리면 묵비하거나 기억이 없다고 하고 불리한 때에는 명백한 허위진술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는 겉으로는 도덕성 운운하면서 내심으로는 목적을 위하여 증거도 조작하고 거짓말도 할 수 있다는 피고인측의 평소 비도덕적이고 이중적인 성격의 발현이라 아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피고인측의 이율배반적인 태도는 한글도 모르는 일본 감정인에게 한글을 감정시키고 그를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내세워 문화민족으로서의 민족적 자존심을 손상시킨 데에서도 극명하게 나타났습니다. 피고인측은 자신들이야말로 애국애족의 표본으로 숭고한 민족주의자인 것처럼 행세하였습니다. 그러한 민족주의자가 과연 한글도 모르는 일본인에게 민족문화의 표상인 한글의 감정을 시키고 그를 이 법정에 내세워 그 감정이 신빙성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이 피고인측이 입만 벌리면 외쳐대는 민족주체성의 발현인지 묻지 않을 수 없고 이것이야말로 피고인측의 이중적 성격을 나타낸 것이라 아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피고인의 이러한 이중적 반사회성은 선고기일에 판결을 선고하고 퇴정하는 재판부에 대하여 반말로 모욕적인 언사를 가하는 태도에서도 백일하에 노출되었습니다.

1. 따라서, 검찰은 이 사건을 계기로 이 사회에 다시는 소위 “죽음을 부추기는 어둠의 세력”에 의하여 고귀한 생명이 회생되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국민적 충정을 모아, 개전의 정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7년에 자격정지 3년의 형을 선고, 피고인을 장기간 이 사회로부터 격리하고자 하였음에도 원심에서는 징역 3년에 자격정지 1년6월에 선고하였으므로 이는 형벌의 목적을 달할 수 없는 부당한 판결인 동시에 이 판결로서는 형사정책적 견지에서도 형벌권을 적정히 실현하였다 할 수는 없다고 판단되어 원심판결의 파기, 시정을 구하고자 이건 항소에 이른 것입니다.

항 소 이 유 서

사건 92노 401 자살방조 등
피고인 강기훈

위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항소 이유를 개진합니다.

다 음

1. 항소이유 제1점

원심 판결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자살방조의 점에 있어서 이 사건 유서대필의 시기, 장소, 방법 등에 관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였고, 또 피고인이 막연하게 유서를 대필하였다고만 기재되었을 뿐 그 구체적인 경위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공소는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4호 또는 같은 법 제25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법원의 결정 또는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규정들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을 하였습니다.

원심판결은 피고인이 공소장 기재의 내용을 담은 유서를 써서 자살을 결심한 고 김기설군에게 주었다면 이는 정신적, 무형적 방법에 의하여 자살하려는 자의 자살 수행을 용이하게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자살방조죄가 성립하고, 또 공소사실은 범죄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는 외에 시효에 저촉되지 아니하며 토지관할을 가름할 수 있는 정도 등으로 기재되면 죽하다

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남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만에 의하여 절도죄로 처벌할 수 없는 것처럼 그 경위가 적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유서대필 사실만으로 자살방조죄는 성립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적어도 공소장에는 김군이 자살을 결심을 하게 된 것이 언제, 어떤 경위로 하게 되었는지, 피고인은 언제, 어떤 경위로 김군의 자살의도를 알게 되었는지, 또 피고인이 김군의 유서를 대필하게 된 사정과 정황은 어떤 것이었는지 구체적으로 윤리원칙에 따라 상세히 기재되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장에는 이와 같은 전후 사정이 전혀 적시되어 있지 않고 막연히 1991. 4. 26. 소위 강경대군 치사사건이 발생한 무렵 김기설군이 분신자살할 결심을 갖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이를 알고서 유서를 대신 써주었다고 기재되었을 뿐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는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결정으로서 공소를 기각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공소기각되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또한 형사소송법이 범죄사실의 특성을 요구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공소권의 남용을 막고 무기대등의 원칙에 따라 피고인으로 하여금 검사와 대등한 입장에서 충분한 방어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입니다.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되므로, 검사는 범죄행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밝히고 그를 뒷받침하는 엄격한 증명자료를 갖고 있지 아니하는 한 기소하여서는 안될 것입니다.

만일 이렇게 공소사실의 특성에 관하여 엄격한 적용을 요구하지 않는다면, 공소권은 남용될 것이고 형사소송법의 일반원칙인 당시자주의는 유명무실해지고 말 것입니다. 따라서 공소사실의 특정여부는 시효나 관할 문제 등에서 나아가 실질적인 의미에서 과연 범죄라고 할 만한 것이 공소장에 기재되었느냐의 여부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장은 막연히 “1991. 4. 27. 경부터 같은 해 5. 8까지 사이의 일자별상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유서를 대필하였다라고

만 기재되어 있을 뿐입니다. 이러한 공소사실은 실질적인 의미에 있어서도 전혀 특정되어 있지 아니 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으로 하여금 이른바 현장부재증명 등에 관한 무죄의 항변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모로 보나 이 사건 공소는 공소장에 범죄 사실을 특정하여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의 규정에 위반된 것이 분명하므로, 마땅히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였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은 이 사건 공소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 바, 원심판결에는 형사송법 제328조 제1항 4호 및 같은 법 제254조 제4항의 범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으므로 파기되어야 합니다.

2. 항소이유 제2점

원심판결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자살방조죄에 반하여 검사의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피고인은 “김기설이 1991. 4. 26. 소위 강경대군 치사사건이 발생하여 재아운동권의 반정부 투쟁분위기가 고조되자 민중을 사주하여 고조된 반정부 투쟁분위기를 더욱 확산시키기 위하여 분신자살을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음을 알고 위 김기설의 분신자살 결행을 용이하게 도와주겠다는 의도로” 이 사건 유서를 대필하여 주었다고 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수사기록이나 원심판결이 열거한 증거 어디에도 첫째로, 피고인이 1991. 4. 26. 강경대군 치사사건이 발생하자 고 김기설군이 분신자살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음을 알고 있었다는 점과 둘째로, 그리하여 그 무렵 김기설군의 분신자살 결행을 용이하게 도와주었다는 의도를 품게 되었다는 부분에 대한 증명이 전혀 없습니다. 원심 설시만으로는 김기설군이 분신자살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된 경위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이 언제, 어떤 경위로 김기설군의 생각을 알게 되었고, 또 어떤 경위와 이유로 김군의 분신자살 결행을 용이하게 도와주려고 하였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심판결 설시 내용을 뒷받침하는 증거도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원심은 마땅히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함에도 자살방조죄의 범리를 오해하고 채증법칙에 위배하

여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습니다.

3. 항소이유 제3점

가. 원심판결은 피고인이 이 사건 유서 2매를 대필하였다고 판단하였으나, 이는 채증법칙 및 경험칙에 위배되어 사실을 오인한 것입니다.

원심판결은 피고인이 이 사건 유서를 대필한 직접증거로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 결과를 거시하고 있고, 간접증거로서 홍성은 등 증인과 참고인들의 진술 등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은 허위로 감정되었거나 중대한 감정 착오에 의한 것임이 명백하므로 믿을 수 없고, 홍성은 등 기타 증인 또는 참고인의 진술 등은 이건 유서대필 여부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거나 신빙성이 없는 것들입니다.

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 결과

(1)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문서분석실장 김형영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감정은 그의 책임하에 국과수 감정요원 모두가 참여하여 얻은 결론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원심은 이 사건 국과수 감정에 대하여 전제적으로 세심하고 신중한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으며, 공정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으로서 신뢰할 수 있는 감정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원심판단은 잘못된 것입니다.

(2) 국과수 문서분석실장 김형영은 10여회에 이르는 이 사건 감정을 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감정의 중립성과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감정의 대상이 된 필적자료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일체의 사전 지식을 주입받음이 없이 감정을 하고 매 감정이 끝날 때마다 감정자료를 반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실제로 있어서는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필적자료를 반환하지도 않았고 수시로 검사와 상의하여 감정을 하였습니다. 그가 한 이 사건 필적감정은 객관성과 중립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3)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검찰의 하부기관이 아니므로 이 사건 감정에 관한 검찰의 감정요인에 관한 문서나 국과수의 감정회보서는 각각 엄격하게 득립되

어 작성되어야 함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김형영이 작성한 이 사건 감정회보서를 살펴보면, 국과수의 감정회보 내용이 처음 검찰이 요구한 감정사항과 다르게 변경되어 있고, 일부는 아예 감정회보가 누락된 경우도 있습니다. 김형영의 증언에 의하면 이와같은 감정사항의 변경이나 회보누락은 검사의 양해하에 서로 협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동인은 특히 일부 감정서에 대하여는 아예 문서접수를 생략하고 다른 감정회보서와 풍뚱그려 검찰에 보낸 듯이 중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서접수는 발신처나 내용에 관계없이 국과수 문서접수 규정에 따라 일률적으로 날자와 시각을 명시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문서접수는 동인의 재량이나 검사의 협조를 받아 생략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감정사항의 변경이나 회보 누락사실 및 이 부분에 관한 동인의 모순되고 이치에 맞지 않는 증언은 국과수의 이번 감정이 얼마나 불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4) 김형영은 이 사건 감정을 행함에 있어 대조되는 필적자료에 있어 공통적인 특징을 찾아 대조문서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특징수의 비율이 70% 이상일 때에는 양 문서의 필적은 동일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45% 이하면 상이한 필적, 45~60%면 이동식별 불능, 60~70%면 동일, 불능 중 택일한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컨대 동일특징수의 비율이 60~70%일 때는 감정인의 주관이 잘못 개입될 경우 정반대의 감정결과가 나올 위험이 얼마든지 있다는 말이 됩니다. 이러한 사실은 필적감정이 본질적으로 과학성과 객관적 엄밀성을 갖기 위해 어렵다는 점 외에, 적어도 이와 같은 동일특징수의 비율에 더 잡아 감정결론을 얻기 위하여서는 누가 보기에도 설득력이 있게 추론과정을 제시하고 해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특징을 판단하는 기준은 어느 한 글자나 필법만에 의거하여서는 판단이 그칠 위험이 있으므로, 적어도 남독할 만한 디수의 특징을 찾아내어 세밀하게 비교 검증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감정인이 차안한 특징점 및 이를 대비한 비율계산 등이 합리적인 통계방법을 첨부하여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감정서 어디에도 이와같은 검증을 한 흔적이 보이지 않고 자료도 붙어 있지 않습니다. 김형영이 필적감정의 일반적인 원칙에 따라 감정을 하였다면 이러한 일은 불가능합니다. 이건 감정은 이런 상식적인 수준에서의 조사과정도 전혀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건 감정은 그 결론 여하에 관계없이 믿을 수 없음이 명백합니다.

(5) 이 사건 국과수 감정결과에 의하면 유서와 전민련이 김기설군의 필적자료로 검찰에 제출한 업무일지는 똑같이 한 사람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감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업무일지는 3인이 작성한 것으로, 이러한 감정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 점에 관하여 김형영은 마치 처음부터 업무일지가 여러 사람에 의하여 작성된 것임을 알고 있었던 듯이 진술하면서 뒤에 밝혀진 내용과 정확히 일치하는 상이필적 부분까지 지적하고 있으나, 이 증언은 명백히 거짓말입니다. 그가 만일 처음부터 3인 이상의 필적이 섞여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당연히 감정서에 이 내용을 적시했어야 할 것이고, 그래야 마땅합니다. 만약 어떤 문서가 여러 사람에 의하여 작성되었어도 그중 일부가 다른 문서의 필적과 동일하므로 결국 양 문서가 동일인에 의하여 작성되었다는 감정은 옳다라고 결론지을 수 있고 또 그러한 감정소견의 기재가 허용된다면, 이것은 논리적으로 모든 필적감정의 패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가 유서와 업무일지가 동일필적으로 감정서에 기재한 것은 업무일지의 작성자가 1인임을 전제한 것이며, 그렇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관한 동인의 증언은 위증과 허위감정 또는 중대한 감정착오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6) 이 사건 유서의 필체와 피고인이 쓴 필적자료에서 뚜렷이 구별되는 것은 ‘ㅎ’의 필법입니다. 김형영은 유서를 쓴 바로 그 사람이 동일한 분량의 글을 속필체로 쓴다면 마찬가지로 ‘ㅎ’의 필법이 두 가지로 혼용되어 나타날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증언과는 달리 피고인의 필적에서는 이러한 필법상의 특색이 전혀 보이지 아니 하자, 그는 궁여지책으로 피고인의 필적에 있어서 이러한 독특한 필법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이유로서 최근에 변형된 것처럼 보인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왜 그렇

게 보느냐에 대해서는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종'의 필법상의 현저한 차이 및 이에 관한 동인의 증언은 국과수의 감정결과의 신빙성을 의심케 하고도 남습니다.

(7) 국과수는 김기설의 가족이 제출한 책표지 글씨 및 주민등록 분실신고서와 유서 필적과의 이동여부에 관하여 처음에는 이동여부 논단 불능으로 감정하였다가, 뒤에 가서는 서로 상이한 필적으로 감정소견을 변경하였습니다. 이건 감정서에 의하면 처음에 이동여부 논단 불능으로 감정한 까닭은 유서와 앞의 두 자료가 그 필체 및 필기구에 있어서 변화점을 알 수 없어서 이동여부를 판별하기 어렵다고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이와같은 필체와 필기구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는 한 감정소견이 바뀌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근거 없이 국과수는 뒤에 가서 양자가 상이한 필적이라고 결론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와같은 감정결과의 변경은 중대한 감정상의 잘못입니다.

(8) 더욱이 유서가 작성된 시기는 김기설이 분신한 1991. 5. 8 무렵이고, 가족이 제출한 책표지 글씨의 작성시기는 1981년이어서, 양자는 10년여의 시간적 간격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981년 무렵은 김기설군이 중학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와같은 시간상의 차이 및 작성시기 등이 고려되지 않는다면, 가사 양자의 필적이 의견상 다르게 보인다 해도 동일인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김형영은 이점을 간과한 채, 또는 이와같이 중요한 감정요소를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를 애써 의면하고 아무런 근거 없이 감정소견을 변경하였습니다.

다. 김기설의 수첩조작의 문제

원심판결은 국과수 감정결과와 일부 진술을 토대로 전민련이 검찰에 제출한 김기설의 수첩이 조작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이는 명백한 사실 오인입니다. 위 수첩은 전민련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있는 형상 그대로 제출한 것입니다. 원심은 수첩에 떨어진 채로 끼워져 있었던 전화번호 기재부분 3매가 수첩 본체의 잔류부분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는 국과수의 감정결과를 그대로 믿은 듯하나, 이 감정이 터무니없는 것임은 공판과정에서 분명히 밝혀진 바 있습니다. 수첩 절취

선의 일치여부를 판별하기 위하여서는 최소한 위 김기설의 수첩의 본래 모습과 완전하게 제본된 전민련 수첩에 관한 정확한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김형영이 작성한 이번 감정서에는 주먹구구식으로 떨어진 부분을 수첩 본체에 대조하여 보니 겹친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변호인은 수첩의 본래의 완전한 형태나 재반 형상에 관하여 아무런 과학적 검증 없이 내려진 이번 감정결과는 믿을 수 없음을 공판과정에서 특히 강조하여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원심판결은 아무런 근거 없이 "이 사건 수첩의 떨어져 나간 바로 다음에 붙어 있는 장의 앞면은 전화번호부 기재란이고 뒷면은 메모 기재란인데 이를 기준으로 하여 그 앞에 4매가 떨어져 나간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고 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툼 없는 사실의 전제는 잘못된 것으로서, 이러한 전제가 잘못된 이상 이에 바탕을 둔 나머지 설시 또한 정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수첩기재시 사용된 필기구 등에 관한 홍성온의 기억도 반드시 정확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동인은 예컨대 변호인측 증거자료 중 제8호(노트)의 형상에서 명백히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떨어지지 아니한 상태의 김기설의 노트를 받아 거기에 녹취내용을 풀어 썼음이 분명한 데도, 기억을 하지 못하거나 법정에서 변호인으로부터 위 노트를 받아 동인의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집스럽게 김기설이 노트를 찢어 동인에게 주어 거기에 녹취내용을 기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동인 스스로 수시간 동안 기록한 노트에 관하여도 이렇게 반대로 기억하거나 잘못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수첩에 관한 동인의 진술을 모두 그대로 믿을 수는 없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김기설이 수첩을 홍성온에게 교부한 경위, 전민련의 보관 과정, 제출경위 및 현재의 수첩의 형태 및 기재내용, 필적의 특징 등의 정황을 종합할 때, 이 수첩은 김기설이 생전에 사용하던 것임이 분명합니다. 원심은 이러한 결정적인 정황에 관하여는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아니한 채, 근거 없이 일부 사실을 임의로 전제하고 믿기 어려운 국과수의 감정결과와 홍성온 등의 진술을 바탕으로 수첩이 조작되었다고 결론짓고

있는 것입니다.

라. 홍성온의 검찰 진술

원심은 수첩 조작문제 관련 앞서의 홍성온 진술과 피고인이 홍성온의 수첩에 김기설의 전화번호를 기재하였다는 검찰 제2회 진술을 피고인에 대한 유죄인정의 자료로 삼고 있습니다. 특히 김기설의 전화번호 기재에 관한 부분은 동인이 법정에서 선서한 후 분명하게 김기설이 분신한 후 피고인이 이를 기재한 바는 없고, 동 기재가 사소한 것이라서 기억 속에서 지워졌다고 증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검찰 진술이 보다 신빙성이 있어 위 기재는 피고인이 한 것으로 본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심이 그렇게 판단한 주된 근거는 홍성온이 피고인과 친구 이영미와의 의리 때문에 법정에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한 것으로 추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같은 원심의 소박한 사실 인정은 상식과 크게 어긋나는 것입니다.

홍성온은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예컨대 앞서의 수첩 조작문제를 포함하여 중요한 쟁점에 관하여 피고인을 의식하여 이 법정에서 종전 검찰 진술과 달리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변경한 것이 없습니다. 만일 피고인을 동정하거나 이영미와의 의리를 생각한다면, 다른 증언도 보다 정확하게 하거나 진술내용을 변경했어야 할 것입니다. 다른 내용은 그대로 두고 김기설의 전화번호 기재에 관한 내용을 특별히 바꿀 이유는 없습니다. 원심은 아무런 근거 없이 홍성온의 심리상태를 추론한 것입니다.

또 만일 피고인이 홍성온이 보는 앞에서 위 전화번호 부분을 기재하였더라면 이는 홍성온에 대한 검찰의 소환에 대비하여 홍성온과 처음부터, 예컨대 유서 대필을 숨기기 위한 의도에서 서로 의사소통이 되어 그렇게 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홍성온은 1991. 5. 17. 검찰에서 조사받기 전까지 이 사건 유서가 김기설이 쓴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동인이 피고인에 대하여 의심을 하기 시작한 때는 위 5. 17. 검찰이 피고인이 쓴 것이라며 제시한 압수물 중 제9-1호(서신)³¹³⁾을 보고 유서와 동일필적으로 오인한 때부터였습니다. 1991. 5. 17. 동인은 김기설군과 피고인

모두에 대하여 깊은 배신감을 느끼며 의혹과 혼돈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어떤 경위로 피고인이 김기설의 전화번호를 기재했는지 전혀 아무런 진술내용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와같은 정황을 염두에 두더라도 이 기재는 피고인이 아니라 김기설이 기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재 내용, 방식 등을 살펴보더라도 이것은 김기설이 기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원심이 이 부분에 관하여 검찰 진술이 보다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마. 변호인측 증거자료에 대한 원심의 판단

원심은 변호인들이 제출한 각종 필적자료 중 14건 여의 김기설의 필적자료에 관하여는 몇가지 이유를 대면서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사 위 필적들이 김기설의 것이라 해도 이들과 유서에 관한 필적감정 결과가 없으므로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우선 위 자료들은 하나하나가 모두 이 사건 유서를 김기설이 썼다고 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들로서, 각각 다른 증인들의 증언에 의하여 김기설의 것임이 밝혀진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증인이 피고인과 생연부지의 사람들인 것을 감안하면, 이들의 진술이 사실이 아니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반증도 없으므로, 위 증인들의 증언이 사실이 아니라고 단정지울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들 자료나 증언을 배척하기 위해서는 설득력 있는 반대논리가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원심의 설시를 보면 예컨대 법원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하여 자료의 지질이 일치하지 않아서 믿기 어렵다고 하든가 자료의 실체는 살펴보지도 아니하고 사소한 사항에 관하여 관련자들의 진술이 엉길린다는 등의 이유를 기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척 이유로 설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이 사건 감정서와 마찬가지로 지극히 불성실하다는 점 외에 타당하지 아니 할 뿐만 아니라 논리적 근거가 박약한 것입니다. 변호인측 증거자료 자체를 눈으로 보면 명백한 바와 같이 이 자료들의 필체는 크게 나누어 이른바 정서체, 정서체와 속필체의 혼합, 속필체로 되어 있습니다. 만일 자료 제출자들이 어떻게든 이 자료들이 유서와 같게 보이려고 꾸미거나 불순한 의도가 있었다면, 이중에서

313) 총자료집 I 책 652쪽 참조.

특히 유서 필체와 똑같은 속필체만 끌라 제출하였을 것입니다. 언뜻 보아 동일성의 식별이 용이하지 아니한 정서체의 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진실을 드러내겠다는 뜻 외에는 아무런 다른 의도가 없었으므로 그 자료가 의견상 유서와 같게 보이든 다르게 보이든 있는 형상 그대로 법원에 모두 제출하였던 것입니다(변호인측 증거자료 중제8호 노트314) 2면 아래 왼쪽 부분에 있는 김기설의 사인, 같은 중제23-1호 각서315) 아래 김기설 이름 옆의 사인, 압수물 중제11호 전민련이 제출한 김기설의 수첩316) 4. 25. 메모란 아래에 쓰여 있는 “원석 삼백” 기재, 변호인측 증거자료 책표지317)에 낙서 형식으로 쓰여진 것 중 “원석 전화, 수요일 오전 …” 부분 등은 모두 생전에 김기설이 한원석으로부터 돈을 꾼 것과 관련된 기재로서, 위 자료들이 김기설의 것들임을 보여주는 너무나 분명한 예들 중의 하나이다).

그리고 원심은 이 자료들과 유서를 대비한 필적감정 결과가 없으므로 유서가 김기설이 쓴 것인지 알 수가 없다는 취지로 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설시야말로 원심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막중한 사법적 판단 기능을 포기한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형사소송법의 감정에 관한 범리를 굳이 언급하지 않지 않는다 하더라도, 형사소송절차에서 감정이란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법원의 판단에 참고가 되는 보조 내지 보완자료로서 역할을 할 뿐입니다. 특히나 필적감정이 본질적으로 언제나 100% 타당한 과학의 범주에 있지 아니하고 감정인의 자질과 능력 및 감정 당시의 상황 등 제 조건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더 더욱 그렇다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굳이 필적감정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김기설의 필적자료들과 피고인의 자료를 포함한 20여종의 필적자료와 유서를 비교해 볼 때, 법원은 유서는 김기설이 썼으며 피고인은 쓰지 않았다는 결론에 충분히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점은 피고인이 교도소에서 검열을 받아 가족에게 보낸 속필체의 편지와 김기설의 유서를 대비해 볼 때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교도소 검열인이 찍힌 “객관적으로 명백한” 피고인의 서신에 관하여 그 필적이 이 사건 유서와 동일필적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한편 원심은 변호인들이 제출한 김기설의 필적자료 등에 관하여 국과수에 감정을 하도록 촉구하였으나 변호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한 점을 특히 판결에 인용하면서, 마치 원심의 판단회피나 판단유발의 책임이 변호인에게 있는 듯이 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죄의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변호인이 김기설의 필적자료 등에 관하여 감정을 신청할 법률상의 의무는 없으며, 오히려 검사로 하여금 교도소의 검열인이 찍힌 피고인의 서신이 유서와 동일필적이라는 점을 입증하도록 촉구하였어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원심은 국과수에의 감정을 촉구하였는 바, 국과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사실상 반대 당사자에 해당하므로 그 지위상 감정을 말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허위감정을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객관적인 감정기관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변호인이 법원의 국과수 감정촉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을 판결에 설시하면서 그 판단 회피의 책임을 변호인에게 전가한 것입니다(이 사건 제10회 공판조서에는 원심이 국과수 외의 다른 감정기관을 추천하도록 촉구한 듯이 기재되어 있으나, 원심은 국과수에 감정의뢰하도록 강력히 촉구하였을 뿐 제3의 감정인 추천요청은 없었다. 물론 원심이 제3의 감정인을 추천하도록 변호인에게 촉구하였다 하더라도 그 공신력이 담보되지 아니하는 한이 사건의 성격상 변호인들은 거절하였을 것이다).

4. 항소이유 제4점

원심판결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국가보안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검사의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하여 피고인이 1989. 1. 경 “혁명이 불꽃”이라고 하는 반국가단체인 북한 공산집단의 활동에 동조하여 이른바

314) 총자료집 II 책 811쪽 참조.

315) 총자료집 II 책 854쪽 참조.

316) 총자료집 I 책 717쪽 참조.

317) 총자료집 II 책 824쪽 참조.

이적단체에 가입하고, 관련 이적표현물을 소지 탐독하였다고 설시하면서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전제하고 있는 것에 따른 것인 바, 남·북한이 이미 유엔에 동시가입하였고, 남·북한이 직접 상당한 규모의 교역을 하고 있으며, 아무런 법적 규제없이 북한 당국자가 남한에 와서 고위급 회담을 하거나 그 초청에 의하여 남한 당국자나 민간인이 자유롭게 북한 지역을 방문하고 있고, 한 민족의 일원이며 통일을 향한 대등한 당사자임을 상호 분명히 명시한 남·북 합의서가 조인되는 이 시점에 있어서, 사실 관계의 당부에 관계없이, 국가보안법은 이미 그 규범력이 상실되었고 가별성도 소멸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미 오래전에 관련자에 대한 형사적 제재가 모두 끝난 사안으로서, 이 사건 유서대필에 장식으로 덧붙여진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하여도 마땅히 공소권 남용으로 공소가 기각되거나 무죄가 선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5. 결 론

피고인은 유서를 대필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유서는 분신자살한 김기설군이 쓴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편견없이 이 사건 수사기록 및 공판과정에 현출된 모든 증거자료를 살펴볼 때 명백한 것입니다.

우리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무죄추정의 원칙은 형사소송에 있어서 피의자와 피고인의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외에, 거증책임의 소재를 규정하고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기까지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것으로 보아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증거법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제인권규약에도 명시되어 있는 형사소송의 기본이념으로서 무죄추정의 원칙은 “의심스러울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In dubio pro reo)라는 법언으로 확립되어 있습니다. 형사재판이 국민의 생명, 신체의 자유 및 명예에 직접적으로 관련되기 때문에 그 오판의 폐해가 민사재판의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자각에서 무고한 사람을 벌하는 일이 없도록 일찍이 형사법의 대원칙으로 뿐리내린 것입니다. “한사

람의 무고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보다는 열 사람의 범인을 놓치는 것이 낫다”(Better than guilty escape than one innocent sufferers)는 법언도 같은 뜻입니다.

이와 같은 무고한 사람을 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는 범죄사실의 증명에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정도의 증명”(proof beyond a reasonable doubt) 또는 “모든 합리적 의문을 없앨 만큼 강한 우세”(preponderance so great as to eliminate all reasonable doubt)를 요한다는 것이 확립된 영미법의 판례입니다. 우리나라 대법원도 “범죄사실의 증명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에 대한 심증 즉 이른바 확신을 요한다”(1985. 6. 22 선고 65도 370 판결)고 하거나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1991. 11. 12. 선고 91도 1278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에도 법원이 유죄를 인정하기 위하여서는 유일한 김활측 직접증거인 국과수의 감정결과에 대하여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실한 것으로 판단하였어야 하고, 유서대필 사실 자체나 유서대필에 이르게 된 경위 전반에 대하여 모든 합리적 의문을 없앨 만큼 고도의 개연성의 뒷받침되는 심증을 얻었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원심은 1991. 12. 20. 이 사건 판결을 선고하면서, “재판부로서는 이번 판결이 객관적으로 절대적 진실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알 수 없으나 현재까지의 증거로 볼 때 피고인이 유서를 대신 썼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대필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이 사건과 같이 자살하는 것을 방조하는 것은 엄벌에 처해 마땅하지만 대필 경위가 밝혀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중형을 선고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돼 징역 3년에 자격정지 1년 6개월을 선고한다”고 요지를 밝혔습니다(1991. 12. 21 일자 신문기사 참조).

이 판결 요지는 법원이 유서대필 경위가 전혀 밝혀지지 아니하였음은 물론이고 그 대필 자체에 대하여도 고도의 개연성이 뒷받침된 확신을 가지고 있지 못

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직 직접증거라고는 국과수 감정결과밖에 없고 압도적으로 변호인측 증거 자료가 우월한 상태에서, 원심 재판부의 이러한 고백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지 모릅니다. 따라서 원심은 앞서의 무죄추정의 원칙, 즉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법언에 따라 마땅히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순간에 진실을 의면한 것입니다.

최근 이 사건 필적감정을 담당한 국과수 문서분석 실장 김형영 등이 개인 또는 사설감정인들로부터 돈을 받고 허위감정을 해온 의혹이 언론에 의하여 폭로 됨으로써 국민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처음 돈을 받은 바 없다고 극구 부인하던 김형영은 다른 사설감정인 등과 함께 2. 17. 구속되었습니다. 두 말할 나위 없이 우리나라의 사법절차에 있어서 국과 수의 감정결과는 국민의 생명, 재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아무런 법적 규제나 제재를 받음이 없이 김형영 등에 의하여 감정비리가 횡행해 왔다는 사실은 우리나라 사법의 공정성과 공신력을 크게 실추시키는 더 없는 불행한 사건입니다. 김형영이 관련된 이번 사건은 철저히 수사되어야 하고 진상이 규명되어야 하며, 뇌물감정 관계자들은 엄중처벌되어야 합니다. 오염된 독나무의 가지를 잘라내고 비리의 죽을 제거해야 합니다. 국

과수는 감정을 함에 있어 객관성과 과학성, 중립성이 보장되는 제도적 장치를 갖추어야 하며, 새로 태어나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 하는 한 국과수와 사법의 공신력과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요원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동시에 이번 사건은 객관적인 정황증거 없이 감정결과만에 의하여 사건의 전말을 결정지어서는 않 된다는 교훈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으므로 원심판결은 파기되어야 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1992. 2

변호사 유현석
변호사 김창국
변호사 이석태

서울고등법원 형사 2부 귀중

■자료 다-0-7 (공판기록 2276~2302)

사건번호 : 92-노-401호

항소이유서

인양교도소 재감증
항소인 : 강기훈
수번 : 5006

* 인적사항 *

본적 : 서울
주소 : 서울
이름 : 강기훈(姜基勳)

위 본인은 1991년 12월 20일 서울 형사지법에서 징역 3년에 자격정지 1년6월을 선고받고, 이에 동년 21일 불복하여 항소장에 서명한 바, 지난 92년 2월 13일자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라는 법원의 소송기록 통지서를 직접 접수하였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항소이유의 변을 제출코자 합니다.

序 ---

“나는 궁극적 승리에 대해 조금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더욱 강력한 신념으로 거듭 말합니다. 진실이 행군하고 있고 아무도 그 길을 막을 수 없음을! 진실이 지하에 묻히면 자라납니다. 그리고 무서운 폭발력을 축적합니다. 이것이 폭발하는 날에는 세상 모든 것을 힘쓸어버릴 것입니다. 우리는 이내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까운 장래에 가장 먼 곳까지 재앙을 미치게 할 지뢰를 매설했는지 아닌지를 ...”(에밀 졸라의 ‘나는 고발한다’ 中. 한길사 간드레퓌스와 지식인에서 발췌함).

‘설마 무고한 사람에게 재판부가 유죄판결을 내릴 것인가’, ‘너무나 명백한 진실과, 사실을 응변해주는 수많은 증거를 두고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이하 국과수)의 엉터리 필적감정을 인정하겠는가.’

제가 1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12차에 걸쳐 포일동 산자락과 서초동을 오가며 수없이 되뇌이던 상념의 주제들입니다. 모든 것이 순리대로 펼릴 것이라는 믿음을 몇번이고 재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악의에 찬 사실왜곡과 억설을 기초로 공소를 제기한 검찰의 주장을 한획 한자의 고침도 없이 그대로 받아들인 1심 재판부의 판결을 듣는 순간, 저에게는 하늘이 무너지는 절망감과 함께,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은 진실은 한틈도 비치지 않고 허위와 가식이 판을 치는 재난의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심리과정 전반에 걸쳐, 이미 결론을 예단하고 있는 듯한 재판부의 말을 들으면서도 설마했던 상식에 대한 믿음과 기대가 여지없이 깨어져 나가며 그간에 한 가닥의 희망을 마음 한켠에 담고 하루하루를 감내해 내던 한 인간과 그의 가족을 더욱 처절한 고통의 나락으로 떨어뜨린 순간이었습니다. 구치소로 돌아와서 몇시간을 반정신병자처럼 명하니 있었고, 밤엔 남몰래 숨죽여 흐느끼며 오열하다 지낸 하루. 다음날 ‘도대체 법원에는 반편이 판단력 불구자들만 있단 말인가’하는 불끈불끈 터져나오려는 감정을 추스르며 항소장에 서명을 했습니다. 마음 한 구석에서 ‘그래 너희들이 씌우려는 이 글례를 복수의 마음으로 감내하련다.’하는 항소를 포기해버리자는 감정적인 행동을 꾸욱 누르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부터 200년전 프랑스에서 벌어졌던 이성과 양심을 회복하기 위한 12년간에 걸친 쌔움-드레퓌스 사건에서 조르쥬 끌레망스가 외쳤던 그 절규를 통해서 말입니다.

‘국가이익. 오늘 그것은 드레퓌스를 치고 있지 만 내일은 다른 자를 칠 것이며, 국가이익은 이성을 잃은 채 공공의 이익이라는 명분 아래 반대자를 비웃으며 쓸어버릴 것이고, 군중은 겁에 질린 채 쳐다만 볼 것이다. 정권이 국가이익을 내세우면 끝이 없이 마련이다. … 만일 그것이 드레퓌스

스에게 적용된다면, 다른 누구에 대해서도 적용될
게 분명하다. …'(같은 책 187쪽에서 발췌함).

그렇습니다. 부도덕하고 비열하기조차 한 검찰은 필두로 한 국가권력의 정권유지를 향한 몸부림은 수많은 회생의 상처들 위에, 오늘은 저를 유서대필자라는 오명을 뒤집어씌우며 치고 있지만, 내일은 그 누군가를 치게 될 것이며, 정권의 안위를 위해 정치적 반대자를 처단하듯이 이성을 잃고 광분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진실을 짓밟고 한 무고한 사람을 회생시켜서라도 자신들의 안위를 추구하고자 하는 자들이 드세하는 세상-그린 정신병적인 폭력은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지금 이 순간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눈앞에 펼쳐 보이는 진실을 앞에 두고도 겉으하지 못한 이들. 그리고 검찰장-국과수 감정이라는 국가공신력의 안위 앞에 명약관화한 사실을 편견과 변명으로 메꾸어버리고, 한 개인의 무고함과 국가공신력을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바꿔치기했던 1심 재판부에게도 이 끔찍망소의 말은 정문에 일침이 된 듯합니다.

이성에 대한 공공연한 도전으로 자유·평등·박애라는 프랑스혁명의 기본이념을 퇴색시키는 각종의 기도들이 인종적 편견(반유태주의)과 국가이익이라는 명분과 결합되어 자행되고 있던 시기에 발생했던 드레퓌스 사건, 그리고 정의와 진실을 갈구하며 외쳐진 끔찍망소의 절규의 메아리가 오늘 우리에게 적합한 말이 되리라고 그 누가 예상을 했겠습니까? 200년전의 프랑스와 같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반복되어선 안된다는 소박한 다짐때문에 제 사건을 '한국판 드레퓌스사건'이라 불리는 것을 싫어했던 저는 이제 주저없이 이렇게 밀칩니다. 지난 12월 20일 법원의 판결 이후 소위 '유서사건'은 '한국판 드레퓌스사건'이 되었습니다. 애드벌룬은 박홍 총장의 '어둠의 세력 운운' 발언과 정구영 현검찰총장의 '분신배후수사 지시', 시나리오 작성은 서울지검 강력부 前부장검사 강신욱과 신상규 수석검사가, 회극적인 효과는 국과수가 내세운 엉터리 필적감정서가,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저를 피고인으로 세운 서초동 417호 대법정에서 몇번의 리허설을 거친 후, 1심 재판부가 그 명석(?)하신 판단 아래 '한국판 드레퓌스사건', '유서사건'이라는 제하의 회대의 코메

디물을, 만인의 복리를 지향한다는 법의 지엄하신 권위를 빌어 공인 허락하였던 것입니다. 이 웃지 못할 현실 자체도 한편의 회극과도 같습니다. 결국 인종주의 편견-반유태주의는 민주화운동에 대한 편견과 공산주의 캠페인을, 국가이익은 검찰의 권위와 국과수의 공신력, 나아가 정권의 안위로 바꿔었을 뿐, 매우 불행스럽게도 '유서대필사건'은 '드레퓌스사건'이 겪었던 그 길을 되밟아 오늘 이땅에 옮겨 놓고 있는 듯합니다.

"우리의 판단이 객관적 절대적 진리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으나…."라는(1심 재판부의) 득백처럼 전혀 객관적이지도 양심에 비추어 진실하지도 않은 판결을 해놓고도, 편안히 잠을 자고, 가정에선 훌륭한 아버지가 되고 싶어하며, 자식들에게 정직이라고 가르치며, 법대 앞에선 근엄한 표정을 지으면서 저울대 노릇을 하고 있을 1심 재판부에 한껏 조소를 보냅니다. 이들은 훗날 모든 사실들이 환히 드러났을 때 '그때 난 어쩔 수 없었다'며 변명을 늘어놓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소위 '유서대필'에 관한 한, 제 모든 것을 걸고 무죄임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그렇기에 무고한 제게 1심에서 유죄를 인정하여 징역형을 선고한 재판부는 '유서대필 조작사건'에 있어 검찰, 국과수와 함께 공동정범이 되었음을 선언합니다. 국가 권력기구에 의해서 저질러진, 무고한 한 인간에게(그것도 재야 민주화운동을 국민으로부터 고립시키고, 작년 5월의 국민적인 항의를 잠재우기 위한 수단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파렴치법의 명예를 썩운, 천인공로할 범죄행위에 그동안 '정권의 시녀'라는 오해 아닌 오해(?)를 받아왔던 사법부도 그동안 행보에 걸맞게 아주 자연스럽게, 범죄자의 대열에 합류하였다고 규정합니다. 어여한 미사여구나 변명으로도 절대 해명되지 않는 이 집단적이며 자기발작적인 범죄행위가 9개월 가까이 험연에 걸린 사람들의 중세처럼 국가기관의 일단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힘의 논리와 법의 권위를 차용하여 덮어진 듯한 진실은 쓰라린 상처투성이의 아픔을 딛고서, 봄이면 어김없이 움트는 파릇한 생명의 새순처럼, 역사의 도도한 줄기속에서 끈끈하게 이어져온 고난받는 민중의 면면한 숨결처럼, 그

렇게 진실에의 행진은 시작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번 재판은 협소한 의미에서는 무고한 자의 방면이겠으나, 좀더 넓은 의미로는 검찰-법원이 진정 국민의 공복으로 자리매김되는 기회이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저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다시 한번의 기회를 법원에게 부여하는 것입니다.

"진리는 모든 것을 자유케 한다"고 합니다. 제 양심에 비추어 한점의 부끄러움도 없는 데도 죄워진 유서대필 혐의…

어쩌면 숨쉬기마저 답답하고 암담하기만 한 이런 현실과 0.7평의 안양교도소 독방에서도 저는 자유인임을 선언합니다.

'유서대필'이라는 공상적 시나리오의 배경-공산주의자 10대 신조 "너 공산주의자 10대 신조가 뭔지 알아?", "혹시 살부회라고 들어봤어?"

작년 5월 24일 검찰에 자진출두하여 조사를 받기 시작한 얼마 뒤에 검사가 제게 던진 질문입니다. 강압적이고 공포스런 분위기에서 한참을 시달리던 와중에 지나가듯 던진 질문치고는 너무나 묘하여 검찰청 11층의 한쪽을 차단한 수사·취조실만큼이나 오싹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한번도 들어본 적이 없기에 "모릅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곤 "정말 몰라?"하면서도 조금은 풀어진 것 같은 분위기 턱에 갑자기 뚱딴지 같은 질문을 한다고만 느꼈던 제가 그 本意를 알아챈 것은 잠시 후의 다음과 같은 검사의 장황한 설명을 듣고 나서였습니다.

"공산주의자 10대 신조중에 목적을 위해 모든 수단을 정당화될 수 있다(검사의 정확한 표현방식은 기억나지 않습니다.)는 항목이 있다. 우리나라 공산주의 운동의 시작은 일본 유학생들이었고, 이들 중 다수는 지주의 자식들이었다. 인민의 적인 자기의 아버지를 스스로 죽일 수 없었기에 이들은 살부회(殺父會 : 서로의 아버지를 대신 죽여주는 모임(?))라는 조직을 만들었다", "결국 목적을 위해서는 아버지마저 대신 죽여버리는 자들이 너와 같은 공산주의자들이다."라고 닦달을 시작하면서 말입니다. 짧은 근·현대사 지식을 갖고 있는 저로서는 이것이 사실인지는 아직까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을 빗대어 계속 검찰이 1심증에서

"피고인은 공산주의자 10대 신조를 아나요?"라고 질문을 하거나 결심논고문에서 "... 유서를 대신 써주어 동료를 죽게 한 피고인의 행위는 그 사상적 경력으로 보아 전혀 놀랄 일이 아닙니다. ... 이들은 공산주의자 10대 신조를 신봉하고 ..."에서도 또다시 인용하고 있는 걸 보아 진심으로 저를 그 정도의 악마로 믿고 있는 듯합니다. 역사적 사실인지도 알지 못하는 제게 그런 오명을 뒤집어씌운 검찰의 놀라운 상상력 그리고 바로 이런 구시대적 발상의 한가운데에 '유서대필 조작사건'의 배경이 있습니다. 자살하는 사람이 남이 써준 유서를 갖고 죽을 수도 있다는 비상식을 검찰은 "공산주의자들이니까 그럴 수 있다"는 어쩌면 천치와도 같은 득백을 되뇌이면서 용해시켰으며, 이 사건을 창조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보면 검찰이 무고한 저에게 억지논리를 펴며 적인으로 단죄하며 사생결단 던졌던 일도 그리 놀랄만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누가 목적을 위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가.

1심 최후진술에도 한번 언급한 바 있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대부분 검찰의 수사진행과 그간의 행태에서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열 사람의 죄인을 놓치더라도 한 사람의 무고한 자를 만들어선 안된다.'는 법조계의 격언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제 수사담당 검사가 자기는 "열 사람의 죄인도 놓치지 않고, 한 사람의 무고한 사람도 만들지 않겠다"며 자신만만한 어조로 위의 격언에 대한 반박을 하였습니다. 실소를 금할 수 없는 이 이야기를 듣고 그곳이 검찰청사안이었다는 현실때문에 그 내색을 하지도 못하면서 "그러면 무고한 나를 잡아놓은 것은 그 말과 위배되지는 않는지"를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검찰은 사건 초기부터 재판과정까지 참고인에 대한 불법적이고 강압적인 수사를 했습니다. 며칠씩 잡아놓고 집안을 헛박하고, 저와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을 수배령을 내리는가 하면 유언비어란 유언비어는 있는데도 유표하고, 심지어는 개인 사생활을 날조 왜곡하여 건전한 인간관계를 파탄시키려 하는가 하면

이런 방식으로 서로에 대한 배신감을 심어주기 위해 이간질하고(저와 흥성은에 대해, 저와 임무영에 대해), 대필공법으로 엎으려다 안되니까 다른 것을 억지로 들씌워 구속시키는가 하면, 폭언폭행을 일삼고 함정 수사를 벌여 진술의 차이를 유도해내는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각종의 수단을 총동원하였음은 필지의 사실입니다.

작년 5월 18일 '유서가 대필되었다'는 발표를 언론에 대대적으로 유포함으로써 이미 허위와 거짓이라는 루비콘강을 건너버린 이후의 검찰이 위한 자기합리화를 위한 아집의 발버둥은 무고한 제게 돌아갈 수 없는 상처를 안겨주었을 뿐만 아니라, 참고인으로 연행되어 조사를 받은 모든 사람들이 받았던 정신적인 피해는 일일이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열 사람의 죄인도 안 놓치고 한 사람의 무고한 자도 없게 하겠다'는 검찰관의 공언은 자신들이 범인(凡人)으로 단정해버린 한 사람을 진짜 범인으로 만들어 공상적 시나리오를 완성해 나가려 한 결과,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합법을 가장한 폭력적인 수사를 해나간 결과, 수십여명의 피해자를 양산해 내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수집된 각종의 정보(?)를 제니름대로 취사선택하여 만들어진 '대필 시나리오'를 법원이 진실이라고 손들어 주었습니다.

법원의 공신력 - 판결문에 대한 감상(?)

지나간 수사과정과 특히 재판과정을 되돌아볼 때마다 치밀어오르는 분노와 허탈감만이 교차되고, 검찰이 악의적으로 애곡해 낸 치졸한 주제(재판부 또한 앵무새처럼 인용하고 있는)들을 일일이 재거론하여 사실을 있는대로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 자체가 제겐 또 다른 의미의 고통을 수반합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결문으로 충화되어 있는 '검찰 작사 법원 작곡'의 허위의 땅어리를 하나하나 짓부수지 않으면 안된다는 무거운 책임감도 제 어깨에 짙어진 짐이라는 것도 사실입니다. 머지 않는 시간이 지나 범인들에게도 웃음거리밖에 되지 않을 그 허위의 땅어리=판결문은 오늘 이 시간의 자그마한 노력으로부터 해체되어 간다는 것을

명심하여 하나씩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몰라도 오늘 이 시간까지의 검찰의 행보 이유서가 제게 전달되지 않아 이에 대한 적절한 반박을 함께 할 수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이 부분은 항소이유보충서로 미룰까 합니다). 거의 대부분이 왜곡투성이인 1심 판결문이 왜 허위인가는 그 해답의 대부분이 1심의 변호인 반대신문과 증인신문 과정에서 밝혀졌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놀라우리만치 아둔하다고밖에 볼 수 없는 1심 재판부의 그 후안무치를 탓하기 앞서 자율적 판단을 저해하는 각종의 요소들에 시달린 그들을 일견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 내용의 판결을 받으려고 12차례에 걸쳐 재판에 임했었다는 걸 생각하면 그 시간들이 아까울 따름입니다. 재판부의 권위를 세워주기 위해(혹은 그토록 믿고 싶었기에) 어지간한 일도 참아 넘기고, 예의를 지키려 애했던 것까지 후회가 될 정도입니다. 도대체 이땅의 사법부의 권리와 법의 공정성은 어디로 갔습니까? 정권의 시녀라는 해묵은 오명을 스스로 자초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모든 판단을 검찰에 위임한 듯한 사법부는 정녕 피의자가 아닌 검찰의 편일 뿐이며, 그러면서도 독립기관임을 내세우고 법의 권위를 빌어 자부심을 갖습니까? 하나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필적감정

진실은 이를 은폐하려는 자들의 몸부림 속에서 오히려 드러납니다. 검찰이 전가의 보도처럼 입이 닳도록, 시도 때도 없이 인용했었고 법원에서도 저를 유죄로 인정하는 결정적 증거능력을 부여했던 그 웬수와도 같은 국과수의 필적감정. 검찰과 법원은 소위 '대필 시나리오'가 1심 재판과정 특히 증인신문 과정에서 얼마나 허위에 가득찬 엉터리였는가를, 주의깊은 그리고 세심한 판단력이 아니라더라도 아주 쉽게 이해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국과수 필적감정이 객관적으로 보아도 완전 허위라는 사실은 이전에도 진술한 바와 같이 전민련 사회국 업무일지의 감정에서 극명히 드러납니다. 세 사람의 필적이 그 안에 있었습니

다. 그런데 국과수의 감정결과에 따르자면 이 업무일지는 유서의 필적과 동일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변명도 소용없습니다. 이미 국과수의 감정은 파탄난 것입니다. 그런데도 국과수 문서분석실장 김형영의 법정진술을 그대로 원용한 재판부의 판결문에는 "검찰로부터 여러 사람이 썼을 가능성이 있으니 유서와 동일한 필적부분만 있으면 그것만 감정대상으로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동일필적이 있느냐에만 주안을 두고 감정한 결과, 동일필적이 발견되어 유서와 업무일지가 동일하다고 감정한 것이지 업무일지상의 모든 필체가 동일하다는 뜻으로 감정한 것은 아니라고 ..." (판결문 38-39쪽) 318)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미 여기에서 국과수의 필적감정(과학으로서의)은 다른 필적을(다른 사람이 쓴 것을) 분간해낼 수 없을 만큼의 허위였음이 객관적으로 드러나버린 것입니다. 그런데도 법원은 국과수를 옹호하기에 급급한 나머지 "모든 필체가 동일하다는 뜻"이 아닌 감정이 "동일필적"이라고 주장한 논리적으로도 합당치 않고, 명백한 위증에 불과한 김형영의 증언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기억합니다. 검찰수사 당시 제가 업무일지를 보면서 "이것은 이동진 선배, 이것은 임무영의 글씨요"라고 진술했을 때 화들짝 놀라던 검사들의 모습, 급히 부장검사들이 취조실에 흥분된 모습으로 들어와 "이게 어떻게 다른 글씨냐"며 박박 우기다가는 오히려 제게 '업무일지를 어떻게 조작' 했느냐를 자백하라며 낚달해대던 신상규 검사의 격앙된 표정, 검사들의 모습들을 말입니다. 뒤이어 검찰은 임무영의 필적을 어디선가 수집해와서는 "이럴 수가 있느냐(유서들과 너무나 흡사하게 보였다는 이유로)"며 임무영에게 대필 혐의를 두기 시작한 것은 이미 진술한 그대로입니다. 이런 과정을 충분히 알고 있는 재판부가(이 진술에 대한 검찰의 침목이 이를 증명합니다.) 어이없게도 그 거짓 증언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도저히 범인(凡人)의 상식으로 납득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 재판관들 셋은 정녕 백치였더란 말입니까? 다음을 봅시다.

318) 총자료집 II책 332쪽 참조.

"... 김형영은 현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문서분석실장으로 재직하면서 사법연수원 등에서 문서감정에 관한 ... 1977년 3월경 위 과수연의 문서감정요원으로 공채된 이후 1980년도의 2년 3개월 제외하고는 계속하여 문서감정임무에 종사하여 왔고 그동안 처리한 문서감정건수는 수만건에 달하였으나 인영감정 한 건에 관하여 시비가 있었던 것을 제외하고는 그 감정결과가 잘못된 것으로 판정된 것이 한건도 없었으며, 동인의 오랜 경험과 연구...에 비추어 동인을 한글필적감정의 최고권위자라 볼 수 있고, 또한 신뢰할 수 있는 ..." (판결문 35-36쪽 319)에서 발췌)

마치 국과수의 홍보자료를 보는 듯한 이 장문(長文)의 격찬은 가히 판결문의 압권이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과 허위감정.뇌물수수로 구속된 김형영의 모습은 아무래도 어울릴 수 없는 어색함만이 감돌 뿐입니다. 1심 재판부는 부끄러움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1심 재판부는 객관적인 증언으로, 죽은 김기설 동지의 것임이 확인되었고, 육안으로 보아도 확연히 유서와 일치하는 각종의 필적자료들에 대해서는 아주 소소한 것들을 물고 늘어졌던(그것이 진본임과는 하등 관계도 없는) 검찰의 주장은 토씨하나 빼뜨리지 않고 앵무새처럼 원용해가며 중거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단지 제가 명동에 있을 때 수집된 것들이고, 이들 필적들이 유서의 필적이 같다 는 객관적 감정자료가 없다는 점을 들어 이를 모두 배척하였습니다. 말을 바꾸자면 법원은 고인이 생전에 남긴 필적을 가져온 모두를 필적조작범으로 단정한 것이나 다름없으며 시기상 제가 명동에서 농성할 때에 수집된 것들이라 전부 믿을 수 없다는 말같습니다. 판단은 객관적이든 자의적이든 간에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인으로서 그것도 엄청난 꾼문을 던진 전대미문의 대필조작사건을 판단하는 국가의 최고기관으로서의 공적인 판단이고자 할 때에는 최소한 그렇게 자의적이어선 안됩니다. 결론적으로 말해 법원은 변호인측 증인 모두를 조작범으로 몰아부치고자 했던 검찰의 악선전에 아무런 의견 없이 그대로 수용한 것입니다.

319) 총자료집 II책 330쪽 참조.

“… 각 증인은 전민련 관계자이거나 친근한 사람들로서 … 선뜻 믿기도 어렵고 …”(판결문 47쪽320) 중 발췌)라는 법원의 자의성은 양심과 도덕성 하나로 온갖 외압을 견디며 끽끗이 살아온 모든 사람들에 대한 보독입니다. 객관적으로 드러난 국과 수의 감정과 허위증언은 모두 다 받아들이고, 변호인 측은 모두 다 조작(검찰이 말하는)의 공동정범으로 몰아버리는 물상식을 가지고 어떻게 만인의 공평을 보장한다는 법의 권위를 지킬 수 있습니까? 법원이 그 토록 치켜세우고 청찬해 마지 않았던(아니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들의 미숙함을 그리고 어리석음을 감추려 하는 마음이 활동했을지도 모릅니다.) 국과수 문서분석실장 김형영은 허위감정과 관련된 뇌물수수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애써 뇌물수수임을 강조하는 서울지검의 비상식-뇌물을 왜 받는지도 모르는 제 사건에서 보여준 다른 의미의 비상식과 너무나 비교가 됩니다. 실상의 내용은 허위감정임은 만인이 다 아는 사실인데도 말입니다. 돈 몇푼(얼마인지는 아직도 모릅니다만)에 공직자의 양심을 파는 알량한 인간들의 감정을 치켜 세운 법원의 풀을 되돌아보십시오.

진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본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문제는 다만 그 시간을 얼마만큼 앞당겨서 속히 건전한 상식을 회복하느냐(이것이 제가 법원에 거는 유일한 기대일지도 모릅니다) 하는 것뿐이며, 이는 제 무고함을 밝히는 문제와 아울러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우를 또다시 범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1심 재판부는 결심을 앞두고 재감정의 의지를 천명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국과수에 재감정을 하자고 하였습니다. 저는 그 물지각함에 치를 멀었습니다. 한창 감정의 진위여부를 놓고 다투는 국과수에 재감정을 의뢰하자는 것은 무식의 소치입니까? 결국 법원은 국과수의 감정결과에 기대어 자신들의 진짜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는 인상마저 받았습니다. 그리고선 판결문에다가는 “… 위 필적(변호인 제출필적)들과 이 사건 유서의 필적과의 동일성 … 객관적 자료도 없으므로 위 필적들에 관하여 재판부는 변호인측에게 감정신청을 촉구하였는 바, 변호인들은 이를 강력히 거부하였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정이 없으니(객관적 증거가 충분한 데도) 잘 모르겠고, 감정을 못하게 한 책임은 변호인측에 있고, 고로 난 책임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정도의 상식과 판단력이라면 저도 재판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재감정하겠다는 의견에 대해서 최근의 사건에서 많은 시사를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소위 감정인들은 폐쇄적인 이익집단입니다. 국과수건 사설감정인이건 서로간의 이해관계-공생공사가 거미줄처럼 얹혀 있습니다. 게다가 제 사건의 경우 누가 공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공명한 감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지선다형도 아닌 오지선다형의 그 어렵다는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수년간 법원에서 판사를 했던 사람의 판단력이 이 정도라면 저와 같이 무고함을 증명코자 하는 사람들은 어딜 가서 하소연 해야 합니까? 자신들의 책임하에 용기와 신념을 가지고 모든 것을 치우침없이 공명정대하게 처리해야 할 책무를 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국민의 공복이 될 수 없습니다. 사심없는 깨끗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조금만 상식적인 판단을 했더라도 허위감정한 혐의로 구속된 자를 추켜세워 법원의 권위에 뚱칠을 하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썩어 문들어져 가는 국가감정기관의 행태를 좀더 일찍 바로잡아 억울한 사람도 만들지 않았을 것이며, 더 나아가 검찰의 무분별한 공권력 남용과 무소불위적인 횡포를 막을 수도 있었을 것이고 지금 제가 피눈물을 삼키는 심정으로 항소이유서를 쓰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법의 권위. 이것은 공명정대함과 신념·용기를 가지고 법원이 분투하는 과정에서 모든 국민들이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구시대적인 편견에 사로잡혀 “선뜻 믿을 수 없다”느니 하며 아전인수격 해석을 그대로 받아들여 ‘역시 정치적인 사건을 다루는 재판에선 법원은 검찰의 편이다.’라는 설을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거나 감정으로만 판단해야 하는데 변호인이 감정을 못하게 했다는 따위의 책임회피만을 하고 있을 때엔 결코 세워질 수 없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사실을 두고 ‘사법부 독립 요원하다’고 말할 뿐인 것입니다.

* 이 부분은 검찰의 부분적인 사실왜곡을 하나씩 들어 사실을 설명하고, 국가보안법 위반에

대한 부분을 서술하려 했으나 법원의 두 차례에 걸친 항소이유서를 가능하면 빨리 내달라는 독촉과 현재 며칠간의 단식으로 인해 회복기간까지는 일정한 시일이 소요되어 26일까지는 집필을 할 수 없기에 앞서 말씀드린 검사 항소이유서에 대한 반박과 함께 묶어 항소이유보충서로 제출할까 합니다.

을 받던 그날 저의 호송책임을 맡은 한 교도관은 선고 직후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을까요?” 라며 처연해진 눈빛을 제게 던지면서 말입니다.

저는 주장합니다. 바로 이런 미담속에서도 진실은 속절없이 찾아오고야 만다는 것을. 드레퓌스 사건에서 에밀줄라는 그를 법정에 세웠던 이들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드레퓌스가 결백함을 나는 맹세코 주장합니다. 나의 생애와 명예를 걸고 확인합니다. … 나의 작가생활 40년과 필생의 작업으로 획득한 모든 것을 걸고서 … 내가 얻은 모든 것, 내가 이루한 명성, … 만일 드레퓌스가 결백하지 않다면 신(神)이여! 이 모든 것을 파멸하고 나의 작품이 잊혀지도록 하옵소서! …”(『드레퓌스 사건과 지식인』, 199쪽중 발췌).

정말 그런 심정입니다. 저는 명동성당 농성중에 김수환 초기경에게 이런 글을 써서 전달한 적이 있습니다.

“제 모든 것, 제 양심과 명예를 걸고 저는 대っふ한 적이 없습니다.”라고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소위 검찰에서 말하는 ‘운동권’의 일원들은 평범한 인간들과 똑같은 생각과 상식을 갖고 살아갑니다.

--- 끝 ---

항소인 강기훈 인

위 본인의 무인임을 증명함.

교사 : 김상대 인

(공판기록 2303~2309)

* 변호인 선임신고서 <생략>

■자료 B-17

강기훈씨는 공정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 고등법원장 및 항소심재판부에 보내는 공개서한 -

작년 5월, 검찰에 의하여 발표된 이른바 '유서대필사건'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6공 최대의 위기'로 일컬어진 강경대학생 타살정국 한가운데서 발표되어 재야의 도덕성에 큰 흥집을 내면서 그 위기정국을 반전시키는데 결정적인 구실을 했던 이 사건의 정치적 위상에 비추어 이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문제의 그 유서를 남기고 김기설씨가 분신자살을 한 바로 직후부터, 기초적인 수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배후세력에 의한 분신자살 조종"이라는 이성 잃은 예단을 공공연히 언론매체에 발표했던 검찰의 태도를 보면서 우리는 벌써 이 사건의 정치적 성격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공권력의 위신이 걸린 정치적 사건에 있어서 검찰의 공정수사를 기대하기란 언제나 대단히 어리석은 꿈이었음을 우리의 현대사는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 있어서도 역시 검찰 수사는 결코 공정했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 참고인들에 대한 법정시한을 넘기는 불법수사가 다반사로 감행되었으며, 특히 1심 재판에서 강기훈씨 유죄판결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던 홍성은씨의 검찰 조사는 놀랍게도 100시간이라는 장시간에 걸친 것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 사건을 처음부터 주시해온 우리는 우선 강기훈씨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을 보면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에는 유서를 대필했다는 시기, 장소, 경위 등 그 어느 것 하나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물로 구름을 잡는" 듯한 이 모호함으로써 한 인간을 범죄자로 단정하는 감각은 분명히 우리의 상식과 크게 어긋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우리는 공권력이 자신의 위신을 지키기 위해 무고한 한 인간을 기어이 제물로 삼고야 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깊은 우려와 의혹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우리가 재판과정에서마는 진실이 밝혀지고 끝내 강기훈씨의 인권이 회복될 수 있으리라 천진스러운 기대를 해본 것은 유서필적과 강기훈씨 필적이 근본적으로 달라 강기훈씨의 결백은 너무도 분명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심 재판의 결과는 우리를 크게 실망시키는 것이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이 "그물로 구름잡는" 기소내용을 그대로 인정하고 강기훈씨를 범죄자로 단정해버렸습니다.

1심 재판부는 또한 우리의 양식과 달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미심쩍은 필적감정을 유죄의 가장 유력한 증거로 채택해버렸습니다. 그 누가 보아도 결코 같을 수 없는 유서필적과 강기훈씨 필적을 납득할 만한 아무런 설명 없이 "같다"고 감정했던 그 기관에 대한 우리의 의혹은 이 판결로써 사법부에 대한 의혹으로까지 확대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설령 양자 필적의 동일특징비율이 70% 이상이었다 하더라도 거기서 왜 강기훈씨가 유서를 '대필'했다는 비약이 감행되어야 하는지 우리는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1심 재판부는 홍성은씨의 자유로운 상태에서의 법정진술 대신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검찰에서의 진술을 증거로 채택하므로써 권리의 요구에 복종하는 듯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요컨대 1심 재판부의 판결은 비약과 억측과 강변으로 가득차 있으며, 검찰의 억지주장을 하나하나 친절하게 '번호'해주는 그 모습에서, "우리의 판단이 객관적 진리와 얼마나 부합하는지 알 수 없다"고 고백하면서도 유죄를 선고하는 그 모습에서, 그리고 피고인에게 눈길 한번 주지 못하고 고개 숙인 채 판결요지를 읽어나가는 그 모습에서 우리는 오늘날의 사법부의 위기를 실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온 국민을 경악케 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허위감정 비리사건은, 황급히 불을 끈 검찰의 축소 은폐수사에도 불구하고 썩어문드러진 감정업계의 추악한 모습뿐만이 아닌, 사실상 '유서사건'의 진상까지도 백일하에 드러내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강기훈씨 필적을 감정한 문서분석실장 김형영씨를 1심 재판부가 '최고권위자'라고 극찬을 하거나 말거나 또한 검찰이 '뇌물 받은 결백'을 주장하거나 말거나 국민들은 그가 '국립'과 과학의 이름을 도용하여 무슨 짓을 저질러왔는지를 잘 알게 되었습니다.

국민이 환히 눈으로 보고 있는 사실을 덮어버리려 하는 행위는 궁극적으로 폭력에 입각하고 있으며, 폭력으로써 공권력의 위신을 세우고자 하는 기도는 왕왕 사법부까지도 공범으로 끌어들이면서 사태를 겪을 수 없이 벼랑으로 몰고 가게 마련입니다. 드레퓌스사건은 우리에게 이 진리를 똑똑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공권력의 위신은 강압이나 은폐 위에 서는 것이 아니라 진실과 전진한 양식 위에 서는 것임을 우리는 굳건히 믿습니다.

강기훈씨 재판 항소심에서 귀 법정이 1심 재판부 판결의 오욕과 불명예를 씻고 엄정하게 진실을 가려냄으로써, 정치권력에 의해 농락당하고 썩은 우리의 이 시대에 건전한 양식과 진실을 살려내기 위한 거대한 싸움에 동참하여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우리는 건전한 양식의 승리를 믿는 온 국민과 함께 재판의 전 과정을 예의 주시할 것입니다.

1992년 3월 11일

『'유서사건' 강기훈씨 무죄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자료 다-1-1 (공판기록 2310~2340)

서울고등법원 제1회 공판조서	
사건 92노401 자살방조 등	기일 1992. 3. 12. 14:00
재판장 판사 임대화	장소 제309호 법정
판사 윤석종	법정의 공개여부 공개
판사 부구옥	고지된 다음 기일 1992. 3. 26. 14:00
법원사무관 최인기	고지된 기록검증기일 1992. 3. 23. 15:00, 16:00
피고인 강기훈	출석
검사 안승규, 신상규, 윤석만	각 출석
변호인 변호사 이석태, 유현석, 김창국, 박연철, 한기찬	각 출석
재판장의 인정신문	
성명: 강기훈 (姜基勳)	
생년월일: 원심판결 기재와 같음	
주민등록번호:	"
직업:	"
주거:	"
본적:	"
재판장	피고인에 대하여
문: 피고인은 1991. 12. 20.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이 건으로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1년6월의 판결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 항소를 제기한 사실이 있는가요.	
답: 예, 있습니다.	
문: 위 판결에 대하여 검사도 항소한 사실을 알고 있는가요.	
답: 예, 알고 있습니다.	
재판장	본건 항소사건의 심리를 개시할 것을 고지.
재판장	변호인의 녹취허가 신청서(92. 3. 12자)에 대하여 피고인 및 증인에 대한 문답의 전부 녹취를 허가한다는 명.
쌍방각	항소이유서에 의하여 항소이유 진술.
쌍방각	항소기각 답변.
재판장	피고인에 대하여 피고인은 각개의 물음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이의되는 사실을 진술 할 수 있음을 고지.
피고인	물음에 따라 대답하겠다고 진술.

재판장

피고인에게

문: 피고인의 가족·재산·교육정도·경력 및 전과관계 등은 경찰 아래 원심에서 진술한 바와 같은가요?

답: 그때 진술한 바와 같습니다.

문: 피고인이 원심에서 진술한 내용은 사실과 틀림이 없는가요?

답: 예, 틀림없습니다.

변호인 김창국

피고인에게

문: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자살방조의 점은 유서를 대필해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김기설이 자살하려 한다는 사실조차 사전에 알지 못하였다 는 것이고, 둘째로 국가보안법 위반의 점은 "혁명의 불꽃"이라는 모임에는 관여하였지만 "혁노맹"에는 가입한 사실이 없다는 것인지요?

답: 예, 그렇습니다.

문: 전민련에는 상임집행위원회 밑에 정책실, 편집실 및 사무처가 있지요?

답: 예, 그렇습니다.

문: 사무처에는 조직국, 총무국, 사회국, 선전국의 4개국이 있지요?

답: 예, 그렇습니다.

문: 피고인은 총무국 소속이었나요?

답: 예, 총무국 부장이었습니다.

문: 그래서 피고인은 내근을 하면서 각종 자료의 컴퓨터 입력업무를 주로 맡아 하였지요?

답: 예, 컴퓨터 입력과 통신에 관한 일을 했습니다.

문: 한편 김기설은 사회국 소속으로 외근을 하였지요?

답: 예, 그렇습니다.

문: 김기설이 1991. 1. 초 전민련에 들어와 3. 하순 경까지는 총무국에서 문서정리 등 업무수습을 하다가 사회국으로 옮긴 뒤로는 인권위원장 서준식씨를 따라 다니며 원진레이온사건과 속초 동우전문대생 분신사건 등을 조사하러 다니느라고 사무실에 들리지도 않는 날이 많았지요.

답: 예, 사무실에 들리지도 않는 날이 많았고, 저와 업무적인 관계가 없었습니다.

문: 1991. 4. 26. 강경대군 사건이 발생한 후 김기설군을 포함한 많은 전민련 직원들이 대책위원회에 나가 있었지만 피고인은 계속 내근을 했지요.

답: 예, 그렇습니다.

문: 피고인이 생전의 김기설군을 마지막으로 본 것은 1991. 5. 4. 22:00경 전민련 사무실에서라는데 그 런가요?

답: 예, 그날 종로에서 시위가 있었기 때문에, 종로5가에 위치하고 있던 전민련 사무실로 연세대에 파견나가 있던 여럿이 들어왔는데 그때 함께 본 것이 마지막입니다.

문: 그 자리에서 피고인은 김기설군과 대화를 나눈 사실이 있는가요?

답: 특별히 대화를 나눈 기억은 없고 인사정도 했을 것이라고 생각되며, 다만 당시 편집실의 오세중선배가 강경대군 사건에 관한 텔레비전 방송국의 보도 태도가 아주 좋지 않아서 김기설에게 항의의 표시로 전화를 하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김기설이 엠비시(M.B.C.) 방송국에 전화를 했던 기억이 남니다.

문: 그 당시 사무실에는 누구누구가 있었나요?

답: 당시 오랜만에 전민련 상근자들이 모두 모였는데 10여명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문: 그때 김기설군의 행동이나 표정에서 평소와는 다른 특별한 것을 느끼지는 못하였나요?

답: 특별한 것을 느끼지 못하였습니다.

문: 1991. 5. 4. 22:00경 이후 5. 8. 08:00 김기설군 사망시까지 김기설군과 전화통화를 한 사실도 없는가요?

답: 없습니다.

문: 피고인은 김기설군이 자취하던 집 전화번호를 알고 있었나요?

답: 모릅니다.

문: 피고인이 김기설군에게 피고인집의 전화번호를 가르쳐준 일이 있는가요?

답: 가르쳐준 일이 있으므로 아마 알고 있을 것입니다.

문: 피고인이나 김기설군이 총무국 부장 또는 사

회국 부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었지만 전민련에는 다른 직장처럼 매일매일 처리해야 할 업무가 있는 것도 아니어서 출퇴근 시간도 일정하지 아니하고 사무실에 아예 들리지 않는 날도 많았지요.

답 : 월요일과 목요일에는 정례 상근자회의가 있었기 때문에 모였지만 그 외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문 : 피고인이 이영미의 친구 홍성은을 김기설에게 소개하였다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었나요.

답 : 기설이가 부탁을 했기 때문이었고, 당시 기설이가 저뿐만 아니라 전민련의 다른 상근자들에게도 가볍게 여자친구를 소개시켜 달라는 얘기를 하곤 하였습니다.

문 : 김기설군은 전민련 상근자 중에 누구와 제일 가까웠다고 볼 수 있었나요.

답 : 김기설이 전민련 사회국 소속이었으므로 사회국에 있던, 지금은 그만둔 남중현과, 임무영 등과 친밀했던 것 같습니다.

문 : 기록을 보면, 피고인은 김진수와 1991. 5. 14:30경 이영미 집에 가서 미리 와 있던 홍성은을 만나 같이 논 사실이 있지요.

답 : 예, 그렇습니다.
문 : 당시 18:30경부터 21:30경까지는 전국대 앞 '반달집'에서 막걸리를 마셨고, '반달집'을 나온 후 이영미는 집에 들어가고 나머지 3사람은 계속 술을 마셨다는데 그런가요.

답 : 예, 그렇습니다.
문 : 그때 이영미는 왜 혼자 일찍 집에 들어갔나요.

답 : 배가 아프다고 하여 일찍 집에 들어갔습니다.
문 : 피고인, 김진수, 홍성은 3사람은 5. 6. 01:00경 까지 화양리 생맥주집과 건대입구 '고바우집'이라는 실내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셨지요.

답 : 예, 그렇습니다.
문 : 당시 피고인은 술에 많이 취하여 집에 일찍 들어가겠다는 홍성은을 불잡고 더 마시며 데리고 다녔다는데 그런가요.

답 : 예, 그렇습니다.
문 : 피고인은 5. 6.에는 그날 새벽까지 너무 과음한 때문에 몸이 좋지 아니하여 하루종일 집에서 쉬었다는데 그런가요.

답 : 예, 쉬었습니다.

문 : 5. 7. 23:00경 홍성은이 피고인 집으로 전화한 사실이 있지요.

답 : 예, 있습니다.

문 : 홍성은양이 전화해서 피고인이 수화기를 들었을 때 홍성은양의 첫 마디가 무엇이었는지 기억나나요.

답 : "왜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았나요"라고 물어봤습니다. 아마 5. 6. 제가 집에서 쉬던 날 사무실로 전화를 했었던 것 같았습니다.

문 : 피고인은 무슨 얘기를 했었나요.

답 : "5. 6. 새벽까지 내가 술을 많이 마셨지. 많이 취했었지. 그때 참 미안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문 : 홍성은양은 피고인이 '미안하다'는 말을 3번이나 계속하여 '미안하다, 미안하다, 미안하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했나요.

답 : 그렇지 않습니다. 가볍게 '미안하다'는 얘기를 했을 뿐입니다.

문 : 홍성은이 5. 7. 밤에 전화했을 때 김기설이가 자살하려고 한다는 얘기를 했나요.

답 : 그런 얘기 전혀 없었습니다.

문 : 홍성은은, 피고인에게 전화로 김기설에게 무슨 일이 있으면 연락을 해달라고 하면서 김군 아버지집 전화번호를 일러주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검찰에 출두하여 검사로부터 그 점에 관하여 심한 추궁을 받았지요.

답 : 예, 그 점에 관해 많이 물어보더군요.

문 : 그래서 피고인은 홍성은이 무슨 전화번호를 일리준 것 같은 생각도 들어서 '자기집 전화번호 같은 것을 얘기한 것 같다'고 대답하니까 검사가 '그것이 기설이 아버지 전화번호야'라고 이야기 하였지요.

답 : 예, 그러면서 상당히 물어부쳤습니다.

문 : 그래서 피고인은 홍성인이 그런 걸 가지고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되어 '아마 내가 기억을 잘못하나보다'라고만 생각을 하였지요.

답 : 예, 그렇습니다.

문 : 지금 다시 생각해보면, 홍성은이 전화할 때 그녀는 이미 김기설이 자살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

었는데 피고인에게 그 얘기를 하지 않았고 또 피고인과 통화한 직후 김군 아버지에게 직접 전화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전화번호를 일러줬다는 부분에 대한 진술이 무언가 석연치 않다는 생각이 들지요.

답 : 예, 무언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 : 피고인이 검찰에 출두한 것이 언제였나요.

답 : 1991. 6. 24. 이었습니다.

문 : 검찰에 출두한 후 검사가 맨처음 피고인에게 보여준 서류는 무엇이었나요.

답 : 각종 필적자료들이었는데, 유서원본, 김기설의 수첩, 주민등록분실신고서, 누님에게 선물하면서 주었다는 책표지, 군에서 친구에게 보냈다는 편지 등이었습니다.

문 : 그 필적들을 보여주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던가요.

답 : "네 눈으로 봐, 네 눈으로 봐도 이 유서의 필적과 '누님 우리 혜정이 잘 키워주세요'라고 쓴 책표지나 군대에서 보낸 편지의 필적과 다르지 않느냐"라는 얘기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문 : 사회국 업무일지는 검찰에 가서 언제 처음 보았나요.

답 : 정확한 날짜를 기억할 수 없으나 출두하고 이틀정도 후였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문 : 그 업무일지를 전민련 사무실에서 전에 본 기억은 없나요.

답 : 전에 본 적 있습니다.

문 : 어디서 언제 보았나요.

답 : 5. 10. 시간은 기억나지 않으나 여렷이 찾아서 보고 있는 것을 같이 본 적이 있습니다.

문 : 업무일지에 관하여 검사는 피고인에게 어떤 점을 추궁하던가요.

답 : "네가 이 업무일지를 조작하지 않았느냐. 빨리 조작하였다고 자백을 해라"라는 요지의 신문이었습니다.

문 : 피고인이 조작했다는 것은 그 글씨도 피고인이 모두 써서 조작하였다는 뜻인가요.

답 : 예, 그렇습니다.

문 : 그런데 위 업무일지에 3사람의 필적이 있다는 것이 나중에 밝혀졌는데 그 사실을 피고인은 언제 어

떻게 해서 알게 되었나요.

답 : 검사의 신문이 한차례 지난 후에 검사가 신상 규검사에서 다른 검사로 바뀌었는데 그 분이 신문하는 중에 내가 업무일지를 보고 "그 중간 첫 페이지는 잘은 모르겠으나 이동진 선배의 글씨같고 두번째 장의 중간 아래쪽에 있는 한줄은 무영이의 글씨 같다. 그런데 첫번째 장의 글씨는 잘 모르겠으나 두번째 장의 글씨는 무영이의 글씨가 틀림없다. 지금까지 나보고 업무일지를 조작했다고 이야기해 왔고 이 필적이 유서와 같다고 이야기했는데 이게 아래서 엉터리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 : 그게 업무일지를 처음 보여주기 시작해서 얼마나 지난 후의 이야기인가요.

답 : 오래 되어서 시간관계는 잘 생각이 안나지만 약 2-3시간 저에게 추궁을 하고 나서 제가 다시 살펴보면서부터였습니다.

문 : 피고인이 업무일지 둘째장 다섯째 칸의 '49. 4월혁명 기념대회 준비'라는 파란 글씨가 임무영의 필적 같다고 이야기하였을 때 검사의 반응은 어떠하였나요.

답 : 같이 저와 대면하고 있던 검사가 굉장히 당황해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약 5분 후 검사 여러분과 수사관 여러분이 왔는데 굉장히 격앙되고 흥분된 모습이었습니다. 강신옥부장검사는 "이게 어떻게 다른 사람의 글씨냐, 혀소리하지 마라"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신상규검사는, 잘 기억은 나질 않지만, "네가 혀소리를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흥분되고 당황한 모습들이었습니다.

문 : 피고인은 임무영이 연대 대책회의 부대변인으로 있으면서 썼다는 대학노트 반쪽 크기의 수첩을 임무영의 필적증에서 본 일이 있지요.

답 : 예, 본 일이 있습니다.

문 : 검사는 무엇이라고 하면서 그 수첩을 보여주던가요.

답 : 제가 업무일지 중간에 무영이의 글씨가 있다라고 이야기한지 얼마 뒤, 정확하지 않으나 하루나 이틀쯤 뒤에, 강신옥 부장검사께서 하루는 필적자료를 한다발 가지고 오시더니 "이것 봐라. 이럴 수가 있느냐"라면서, 무영이의 집과 사무실을 수색해서 가지고

왔는지는 모르겠으나 무영이의 글씨라는 것들을 가지고 오면서 그 속의 훌륭체 글씨와 유서나 수첩의 글씨가 같다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흥분하는 이야기를 하기에 결국 검찰은 내심 무영이의 글씨가 수첩, 유서 등의 글씨와 같다고 그때쯤부터 판단을 하고 제가 대필범이 아니라는 나름대로의 의심을 가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문 : 제가 물은 것은 임무영과 그 연대 대책회의에 있으면서 썼던 그 수첩을 피고인에게 보여주면서 그 필적이 유서와 같지 않느냐고 물었나요, 아니면 그것이 임무영의 필적이 틀림없느냐고 피고인에게 확인한 것인가요.

답 : 유서와 필적이 같지 않느냐라는 뜻이었습니다.

문 : 피고인이 보기에는 어떠하였나요.

답 : 저의 판단력이 틀렸는지는 몰라도 굉장히 같아보였습니다.

문 : 검사가 김기설의 필적이라며 보여준 주민등록 분실신고서의 글씨와 책표지 및 이면에 쓴여진 "좀더 멋있고 참한 현모양처가 되길" "누님 우리 혜정이 잘 키워주세요"라는 필적은 피고인이 보기에도 달필로 훌려쓴 유서필적과는 많이 달라보였지요.

이때 변호인은 중제 1-6, 2-1, 3-1³²¹⁾을 제시하다.

답 : 예, 많이 달라보였습니다.

문 : 피고인이 육안으로 보기에도 위 임무영의 필적과 전민련수첩의 필적이 흡사하였고, 유서의 필적과도 위 임무영의 필적이 비슷해 보였고, 위 책표지 글씨와 주민등록분실신고서 등의 필적은 유서와는 다른 필적으로 보였고, 검사의 유서는 분명히 대필되었다고 강력히 주장하는 말을 듣고, 피고인은 유서가 대필되었으면 임무영이 대필했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지요.

답 : 예, 부끄러운 일이지만 사실입니다.

문 : 피고인은, 검찰도 임무영을 대필자로 생각하고 그후로는 피고인에게 수사에 협조해 달라고 하면서 매우 부드럽게 대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답 : 예, "우리가 잘못했다면 너는 석방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면 협조를 해라. 무영이 있을 만한 곳이 어디냐, 그의 다른 사람들이 있을 만한 곳은 어디냐"라고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321) 총자료집 I 책 27쪽, 44쪽, 74쪽 참조.

문 : 피고인은 업무일지가 계기가 되어 혐의가 임무영에게 돌아가자 한편으로는 내심 '이제 나는 혐의를 벗었구나' 하는 안도감과 함께 다른 한편으로는 앞으로 고통을 받게 될 임무영을 생각하면서 마음이 무거웠지요.

답 : 예, 당시 마음이 매우 복잡하였는데, 대체로 그러한 심경이었습니다.

문 : 피고인은 '임무영이 유서를 대필하였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검사가 보여주는 전민련 수첩에 대해서도 검사가 조작되었다고 강력히 주장하므로 피고인도 그것 역시 누군가가 조작하였나보다라고 한동안 생각하였습니다.

답 : 예,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문 : 홍성은은, 중인의 어머니가 1991. 5. 17. 저녁에 홍성은의 어머니를 찾아가서 "홍양이 이야기를 잘 못하면 강기훈의 입장이 곤란해진다. 왜 변호사를 안 대느냐"라고 얘기한 사실을 자기 어머니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은 어머니가 홍양 집에 찾아간 사실을 알고 있었나요.

답 : 예, 알고 있습니다.

문 : 어떻게 알고 있었나요.

답 : 그때는 성은이 뿐만 아니라 영미도 검찰에 연행되어 있었습니다. 그때는 왜 검찰이 사람을 이렇게 연행하는지 굉장히 어리둥절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조사를 할지 모른다는 얘기도 오고 가는 것 같고, 주위의 학교동문들을 모두 연행해 가려 했으므로, 도대체 이러한 불법행위가 계속될 수 있는 나는 생각하에 저희 학교 선배이신 박원순변호사를 한번 찾아가서 "도대체 아래도 되는 겁니까"라고 물었던 적이 있고, 아무튼 연행되어 풀려나지 않고 있던 성은이와 영미가 상당히 걱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직접 갈 수는 없었고, 저의 집에서 매우 가깝기 때문에 양쪽 집안이 너무 걱정하실 것 같아서 저의 어머니께 위로의 말씀이라도 드리려 가 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제가 제안을 해서 어머니가 가셨는데, 거기서 성은이가 진술을 잘못하면 제가 괴로워진다는니 하는 얘기를 하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 때는 성은이 어머니에 얘기하시는 것을 그냥 묵묵히 듣고만 왔다는 것을 제가 나중에 어머니와의 접견에

서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문 : 이것은 피고인일 검찰에 출두하기 전 명동성당에 있을 때 써서 김수환추기경께 보낸 편지지요. 이때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중제 25호 편지³²²⁾를 제시하였다.

답 : 예, 그렇습니다.

문 : 추기경께 이러한 편지를 쓰게 된 이유, 경위, 동기는 무언가요.

답 : 5. 18부터 언론에서 제가 유서대필이라고 보도되면서 당시 저는 막바지로 몰렸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미 많은 사람들은 제가 유서를 대필했다라고 믿는 경지까지 갔던 상황에서 저는 누군가의 도움이라도 받아야겠다는 절박한 심정이었습니다. 마침 제가 명동성당에 기거하고 있었으므로 그곳의 제일 어른이신 추기경님께 편지를 써보지 않겠느냐는 누군가의 제의를 받고, 그렇지 않아도 제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차에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문 : 이 편지는 누가 추기경께 전달하였나요.

답 : 저와 경감실신부님과의 면담 자리에서 제가 경신부님께 직접 전달했고, 경신부님이 추기경께 전달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문 : 피고인은 수첩 등에 전화번호를 적을 때 국번과 가입자 번호 사이에 대시기호(-)를 하는가요, 콤마(,) 또는 피어리어드(.)를 쓰는가요, 아니면 아무런 표시도 하지 않는가요.

답 : 주로 대시(-)기호를 씁니다.

재판장

피고인에게

문 : 피고인은 당시법정에 이르러 "성은아 미안하다"고 가볍게 이야기했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검찰에서 "성은아, 성은아, 미안하다, 미안하다, 미안하다"라고 '미안하다'라는 말을 3번했다고 진술한 바 있지요.

답 : 그렇게 진술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미안하다'라고는 했다고 진술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문 : 원심법정에서도 '미안하다'는 말을 3번 거듭 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어떤가요.

322) 총자료집 I 책 349쪽 참조.

답 : 당시 검사가 질문을 할 때 "5. 7. 전화를 했을 때 '성은아 성은아 미안하다 미안하다'라고 한 일이 있나요"라고 질문을 했을 때 저는 "예, 미안하다라고 한 일이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문 : 1991. 5. 17. 피고인의 어머니를 홍성은양 집에 가시게 했을 때 변호사를 선임하게 하였다고 원심법정에서 진술한 바 있는데 이는 어떤가요.

답 : 변호사 선임에 관한 것은 원심법정에서의 진술이 맞습니다. 조금전 변호인신문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빠져버렸는데, 당시 중요한 것은 딸자식이 검찰에 가있는 부모의 심정을 위로하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만일 분신배후니 하며 이런 식으로 상식에 어긋하는 수사를 해오던 것들이 제대로 되어야겠다는 생각에서 만일에 이러한 것들이 위법적인 것이라면 법률적인 대응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의미에서 변호사 이야기도 제가 같이 했습니다.

문 : 피고인은 6. 24. 검찰에 출두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검찰의 출두요구에도 불구하고 출두를 않다가 그때 출석한 이유는 무언가요.

답 : 제가 원심법정에서도 진술한 바 있는데, 저는 유서를 대필한 일도 없고 더구나 죽어가는 사람의 죽음을 방조할 정도의 인격파탄자가 아닌데도 이미 신문지상이나 언론에서는 제가 그런 사람으로 단정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진실,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제 편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억울한 처지에 있는가에 대해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필요도 있었고, 물론 그런 과정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저의 사실을 믿어주었고 저는 그런 것에 힘입어 출두를 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법치국가에서 수사기관이 오라고 하는데 가지 않는 것은 분명히 옳바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간에 5. 18부터 저는 유서대필범으로 몰아가는 과정에서 검찰에서 취했던 행동도 국가수사기관으로서 정당한 행동은 아니었습니다. 상식에 어긋나고 온갖 유언비어를 퍼트리는 그런 기관에 신뢰감을 갖고 넘죽 갈 수는 없었습니다.

문 : 피고인이 처음 출석을 거부한 이유는 무언가요.

답 : 당시의 상황을 배경에 둔 자의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문 : 6. 24을 택한 특별한 이유는 있는가요
답 : 특별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어차피 제가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지 않으면 안될 것이고, 도망을 간다든지 하는 것은 생각해본 적도 없으므로 오히려 좀 늦게 갔다고 생각합니다.

문 : 피고인은 언제 피고인이 유서대필자로 협의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인가요.

답 : 5. 18. 국민일보를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문 : 그때부터 피고인이 검찰에 출두한 6. 24까지 상당한 시간이 있었는데 피고인은 필적감정 관계에 대해서 알아본 일이 있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문을 구한 일이 있는가요.

답 : 그런 일이 전혀 없습니다.

문 : 그러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필적감정 등에 관하여 알아볼만도 한데 그러지 않은 이유라도 있었나요.

답 : 5. 18 그 사건이 터지고 약 열흘동안 신문지 상에서 공방이 계속 될 때는, 아마 주위 분들도 그러했겠지만, 저는 거의 정신이 나간 상태였습니다. 그것이 회복되는 과정은 참으로 어려운 과정이었습니다.

문 : 이건의 참고인으로 나온 사람들이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도 변호인의 자문을 구하고 진술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에게는 뒤에서 도와주는 사람도 있었을 텐데 필적감정 등에 관하여 물어보거나 검토해본 일 이 전혀 없었던가요.

답 : 전혀 없었으며, 다만 제가 유서대필이라는 누명을 벗을까 하는데 모든 신경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문 : 고 김기설군의 행적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홍성은양을 만나고, 3. 17에는 춘천에 가서 홍성은양에게 결혼을 제의하고, 4. 중순에는 가족들에게 홍성은양과 결혼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였고, 5. 7. 홍성은양이 만류하는데도 이를 뿌리치고, 그 이후 전민련 관련자들이 찾아나서서 김기설군과 술을 마시고 대학로에 가서 만류하는 사이에 공증전화부스에서 몰래 도망가서 자살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상황들을 종합해보면 무언가에 쫓기다시피 하여 자살한 듯 한데, 피고인은 김기설이 이렇듯 서둘러서 자살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답 : 글세요, 인간의 복잡한 심상을 어떻게 알겠습니까만은 유서에 나온 얘기들을 보고 그 내용을 조금 짐작할 뿐입니다.

검사 신상규

피고인에게

문 : 피고인은 변호인 신문에 대한 답변에서, 5. 7. 밤 홍성은양과의 전화통화에서 '성은아 성은아, 미안하다 미안하다 미안하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가볍게 '미안하다'고 하였으며 그런 말을 한 이유는 5. 5. 밤부터 5. 6. 새벽 1시까지 일찍 돌아가려고 하는 홍성은양을 끌고다닌데 대하여 미안하다는 이야기였다고 진술하였지요.

답 : 예, 그렇습니다.

문 : 홍성은양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인 '미안하다'고 3번 이야기한 것이 마치 피고인이 김기설의 분신을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같은 생각이 들었다"고 한데 대해서, 피고인은 "그게 아니라 내가 미안하다고 한 것은 5. 6. 새벽까지 술을 먹고 끌고다닌 것에 대해 미안하다고 했다"는 뜻인가요.

답 : 예, 그렇습니다.

문 : 5. 8. 15:00경, 김기설이 죽은 후에, 피고인이 연대 영안실로 분향하러 가서 홍성은양을 만난 일이 있지요.

답 : 예, 그렇습니다.

문 : 그때 홍성은이 피고인에게 "어젯밤에 나에게 전화했을 때 왜 나에게 미안하다, 미안하다고 했느냐"고 물은 일이 있지요.

답 : 그때였는지 자세히 모르겠으나 홍성은이 저에게 "왜 미안하다고 했느냐"고 물은 일은 있습니다.

문 : 그렇다면 5. 8. 만났을 때 홍성은이 왜 피고인에게 '미안하고'고 한 이유를 물었을까요.

답 : 알아듣지 못했던 것 같고, 저는 알 수 없답니다.

문 : 5. 17. 피고인이 피고인 어머니에게 부탁을 하여, 피고인의 어머니가 홍성은의 집에 찾아가서 홍양을 만났다고 진술하였는데, 그때의 진술에서 '가까운 사이기 때문에 위로의 말씀을 해 달라고 가시라고 부탁했다고'고 하였지요.

답 : 아닙니다. 집이 가깝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문 : 그러면 홍성은의 어머니와 피고인의 어머니가 가깝다는 것이 아니라 두 집의 거리가 가깝기 때문이라는 건가요.

답 : 예,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성은이도 걱정되었지만 솔직히 같이 연행되어 있던 영미가 더 걱정이 되었습니다.

문 : 그렇다면 피고인의 집과 홍성은의 집이 가까워서 '가서 위로해 주라'고 했다는 뜻이지요.

답 : 집이 가깝기 때문에 위로하라는 것이 아니고, 경찰의 강압수사와 불법연행에 대해서 제가 선배로서 걱정하는 입장에서 위로의 말을 하라는 이야기지 집이 가깝기 때문에 위로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문 : 가까운 사이라는 것이 피고인의 어머니와 홍양의 어머니가 서로 알아서 가깝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두 집 사이의 거리가 가깝다는 뜻인가요.

답 : '가깝고'라고 한 것은 사이가 가깝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이야기의 중점은 가깝다는 것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문 : 피고인의 어머니와 홍양의 어머니가 이 일이 있기 전에 서로 아는 사이였던지, 서로 만난 일이 있나요.

답 : 그 전에는 서로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문 : 그러면 피고인과 홍양이 대학 선후배 사이라든지 하는 관계를 피고인의 어머니와 홍양의 어머니가 알고 있었나요.

답 : 저의 어머니는 알고 계셨으나, 홍양의 어머니는 아마도 모르고 계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문 : 피고인의 진술 중 '사실은 홍양도 문제지만 사실은 영미가 더 걱정이 되었다. 그래서 변호사 선임 문제도 있고 위로하려 보냈다'고 하면서 '검찰이 유서대필에 관한 배후수사로 불법연행을 하였다'고 하였지요.

답 : 5. 13. 홍양이 연행되었을 때는 안기부에 가 있는 줄 알았으므로 '왜 그러나' 하고 생각하였습니다.

문 : 5. 13. 홍성은이 연행될 때는 이미 전민련 사무실에 전화를 하고 왔고 홍양이 조사받고 있는 중에

피고인의 친구되는 단국대학교 출신들이 면회를 하러 검찰청에 왔으며, 피고인의 어머니도 왔었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요. 5. 17. 여러 사람들이 연행된 데 대해서 유서대필과 관련된 배후수사인줄 어떻게 알았나요.

답 : 당시 유서대필에 관련된 것인 줄 몰랐습니다. 유서대필 문제는 5. 18. 이후에나 나타난 문제입니다.

재판장

피고인에게

문 : 피고인이 피고인의 어머니를 홍양의 집에 보낼 때, 배후수사에 대비하여 변호사 선임문제를 말하도록 하였다면, 배후수사란 어떤 혐의에 대한 배후수사라고 생각하였는지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는가요.

답 : 배후수사가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문 : 홍성은, 이영미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불똥이 뛸다면 어떤 이유로 그려할 것이라 생각하였나요.

답 : 그것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저에게 불똥이 뛸 일도 없었습니다.

문 : 그렇다면 피고인의 어머니를 홍양의 집에 보낼 때 위로의 목적이면 충분할 텐데 변호인 선임문제 까지 거론한 이유는 무언가요.

답 : 당시 이영미는 출근하던 길에 연행되어 이를 정도 집에 안 들어왔었습니다. 그것이 걱정되었다는 것입니다.

문 : 당시 홍성은이 몇번째 연행된 것인지는 알고 있었나요.

답 : 모르고 있었습니다.

문 : 피고인이 검찰에서 '유서가 대필된 것은 확실한 것 같다', '수첩은 조작된 것 같으며, 나의 필적과 비슷하지만 나는 쓴 일이 없으므로 나는 아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원심법정에서도 이를 인정한 사실이 있는가요.

답 : 예, 그런 진술을 하였고, 거기에 관한 배경설명을 한 일이 있습니다.

문 : 피고인으로서는 시간적으로 대비가 되어 있을 텐데 위 사실에 대해 모른다고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위와 같이 인정하면서 '나는 아니다'고 진술한 이유는 무언가요.

이를 썼다고 진술을 변경하였는바, 이와 같이 착오를 일으키게 된 경위, 당시 상황 등을 규명하기 위함.
덧붙여 동인은 1심 증언에서 변호인측 증거자료 중 제8호(노트)³²³⁾ 중에 있는 동인이 쓴 녹취부분에 관하여 고 김기설군으로부터 동인이 쓴 노트면이 모두 노트 본체에 붙어 있는 상태로 노트를 받아 거기에 기재하였음이 그 형상에 의할 때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 증언 당시에는 김군이 노트 일부를 젖어 주어 거기에 썼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 사실여부 등 1심에서 미진하였던 부분들을 확인하기 위함.

라. 이지혜

1) 신분관계

고 김기설군 분신 당시 방송통신대학 재학생으로서 김군의 분신의도를 김군으로부터 최초로 들었음.

2) 입증취지

이지혜는 김군과 1991. 5. 5.과 5. 6.에 걸쳐 간 이 있으면서 김군의 분신의도를 듣고 만류하다가 5. 7.경 범국민대책회의측에 연락하였는바, 김군이 동인들에게 자살의도를 밝힌 경위, 당시 상황 및 동인이 목격한 김군 수첩관계 등을 밝혀 피고인의 무고함을 증명하기 위함.

마. 이보은

1) 신분관계

고 김기설군 분신 당시 전민련 실무자

2) 입증취지

1991. 5. 8. 새벽 김군 분신직전까지 김군의 자살기도를 만류하며 같이 있던 전민련 동료로서, 이 사건 김기설의 수첩을 보관하고 있다가 검찰에 제출하게 하였는바, 동인이 분신직전 김군을 만나게 된 경위, 만류 당시 및 헤어질 당시의 상황, 위 수첩을 보관하게 된 경위, 보관상태 등을 상세히 밝힘으로써, 이 사건 유서는 김군 본인이 썼으며 위 수첩 또한 김군의 것임을 증명하기 위함.

바. 권법재

1) 신분관계

323) 총자료집 II책 811쪽 참조.

고 김기설군 분신 당시 터사랑청년학우회 회원

2) 입증취지

변호인측 증거자료 중 제20-1호³²⁴⁾는 1991. 5.

8. 김군의 분신 직후 홍성은이 전민련에 건네준 김군수첩의 전화번호기재 부분 사본인바, 권법재는 당시 이효경 등과 함께 위 사본을 보며 김군의 연락처를 확인하면서 난외에 “대유”, “터사랑” 등의 표기를 한 바 있으므로, 이를 밝혀 검찰에 제출된 이 사건 김군의 수첩이 본래의 김군 것임을 입증하기 위함.

아. 조병길

1) 신분관계

국과수 김형영과 사설감정인들의 협의방법에 얹힌 비리를 추적하여 MBC에 제보란 자료로, 이창열 등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하였다가 검찰에 의하여 사기미수 및 무고죄로 긴급구속당한 후 1992. 3. 9. 사기미수죄로 기소되어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자임.

2) 입증취지

국과수 문서감정의 신빙성을 탐색자 함.

2. 기록검증

가. 이 사건 필적감정 의뢰서 접수 및 발송기록

일체

1) 검증대상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검찰로부터 이 사건 필적감정의뢰서를 접수하고 발송하면서 작성한 접수대장 등 그 명칭에 관계없이 접수·발송관계 서류 일체.

2) 검증장소

국립과학수사연구소

3) 입증취지

이 사건 수사기록상 검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한 감정의뢰에 대하여 일부 감정회보가 누락되어 있거나 다른 감정회보와 뒤섞여 있는 경우도 있고 아울러 위 김형영은 아예 동인의 재량으로 접수를 생략한 경우도 있다고 증언하고 있는바, 당시 감정의뢰서의 접수·발송 현황 및 동인의 증언이 사실인지

324) 총자료집 II책 854쪽 참조.

여부 및 위법성을 규명하기 위함.

나. 이 사건 필적감정자료 일체

1) 검증대상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이 사건 필적감정 결과를 얻기 위하여 또는 얻는 과정에서 작성하여 현재 보관하고 있는 서류, 문서, 사진 등 일체의 자료.

2) 검증장소

국립과학수사연구소

3) 입증취지

이 사건 필적감정 회보서에는 결론만이 기재되어 있고, 예컨대 어떤 계산과 방법에 의하여 70퍼센트 이상 또는 45퍼센트 이하 등으로 동일 비율을 판단하였는지 자료가 전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한 바,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내에는 이러한 관련자료가 보관되어 있는지의 여부 및 감정결론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규명하기 위함.

다. 김형영 등에 대한 뇌물수수사건 형사기록

1) 검증대상

서울형사지방법원 92고단 1655(죄명:뇌물수수 등, 피고인 김형영 등) 사건의 수사기록 및 관련 형사기록 일체

2) 검증장소

서울형사지방법원 또는 서울지방검찰청

3) 입증취지

위 기록은 김형영이 한 감정과 관련하여 뇌물을 주고받은 죄로 감정의뢰인 및 사설감정인 등과 함께 김형영이 구속 기소된 사건의 기록인 바, 위 기록을 통하여 이 사건 필적감정의 신빙성, 증명력을 탄핵하기 위함.

라. 이창열 등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사건 형사기록

1) 검증대상

서울형사지방법원 91고단 7533(죄명:변호사법 위반 등, 피고인 이창열 등) 사건의 형사기록 일체.

2) 검증장소

서울형사지방법원

3) 입증취지

위 사건에서 피고인중의 한 사람인 이창열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문서분석실장인 김형영의 허위문서감정에 의하여 억울하게 구속되어 있다고 폭로한 바 있고, 최근까지 서울경찰청이 위 사건과 관련하여 문서감정비리의 혐의를 수사한 바 있으므로, 위 사건 기록을 통하여 이 사건 필적감정의 신빙성, 증명력을 탄핵하기 위함.

1992. 3.

피고인의 변호인

변호사 김창국

변호사 박연철

변호사 이석태

서울고등법원 형사 제2부

귀중

자료 다-2-2 (공판기록 2377~2409)

**서울고등법원
증인신문조서**
(제 2 회 공판조서의 일부)

사건 92 노 401 자살방조 등

증인 한 송 흠 (韓松欽)

생년월일 1965. 9. 28. 생

주민등록번호

직업회사원

주거경기도

재판장은

증인에게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를 물어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인정하고 위증의 벌을 경고한 후 별지 선서서와 같이 선서를 하게 하였다.

다음에 신문할 증인은 재정하지 아니하였다.

변호인 박연철

증인에게

문 : 증인은 김기설과는 경기도 파주군 소재 광탄중학교 동기동창생이지요.

답 : 예.

문 : 당시 광탄중학교는 남녀공학이었고, 한 학년에 4반이었으며, 증인과 김기설은 중학 3년 동안 2년이나 같은 반이었지요.

답 : 예.

문 : 증인은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김기설의 생모는 김기설이 어릴 때 아이를 낳다가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곧 재혼하여 새어머니를 모시고 산다는 이야기를 들었지요.

답 : 예.

문 : 그런데, 증인도 증인이 중학교 3학년 때 어머니를 여의게 되어 김기설과 더욱 친밀감을 느끼며 교제하는 사이가 되었지요.

답 : 예.

문 : 증인과 김기설은 같은 마을에 살았었나요.

답 : 같은 마을은 아니고 버스로 약 20분 거리쯤 되는 곳에 살았으나 학교가 같아서 친구가 된 것입니다.

문 : 김기설은 워낙 마음이 착하여 새어머니와의 사이에도 갈등을 크게 일으키지 않고 생활해온 것으로 알고 있지요.

답 :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 : 김기설은 중학교에 재학중일 때 공부를 잘하였고, 뭐든지 빨리 잘 배우는 학생이었지요.

답 : 예, 머리가 좋은 편이었습니다.

문 : 증인이 다른 친구들로부터 들은 바로는 김기설은 국민학교 재학시 반에서 늘 1등을 하였다고 했지요.

답 : 예, 국민학교 때는 그랬다고 들었습니다.

문 : 증인과 김기설은 1981. 2.에 광탄중학교를 졸업하여, 증인은 문산종고로 진학하고, 김기설은 현재 광탄종고인 당시 광탄상고로 진학하였지요.

답 : 예.

문 : 김기설은 광탄상고 1학년 1학기를 마친 후 검정고시를 보겠다고 하며 학교를 중퇴하고 큰누나 집에서 공부했던 것으로 알고 있지요.

답 : 예.

문 : 당시 큰누나집이 부천에 있었나요.

답 : 부천이 아니고 마포에 있었습니다.

문 : 증인은 김기설이 부천에 소재한 수도공고에 다시 들어간 사실은 김기설이 말을 해주지 않아 모르고 있다가 김기설이 군대에 가기 직전에 특이한 주특기를 받은 듯하여 누님에게 물어보았더니 공고출신이니 주어진 것이겠지 하는 말을 듣고 비로소 김기설이 수도공고에 다녔던 사실을 알게 되었지요.

답 : 당시 공고에 다닌다는 것은 알았으나 어느 공고에 다니는지는 몰랐었습니다.

문 : 증인은 1984.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입시에 실패하여 학원에 다니며 재수하고 있었는데, 당시 김기설도 재수학원에 다니고 있었지요.

답 : 예.

문 : 증인은 1985.에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에 합격하였고, 김기설은 불합격하여 3수를 하기로 하였다가,

1985. 12.에 입영하게 된 것이지요.

답 : 예.

문 : 증인도 그보다 두달 후에 입영하여 증인과 김기설은 거의 같은 시기에 군복무를 하였지요.

답 : 예.

문 : 증인은 경기도 연천에서 보병으로 복무하였고, 김기설은 강원도 5군단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알고 있으며, 증인과 김기설은 석달에 한번 정도씩은 서로 편지를 교환했었지요.

답 : 예.

문 : 비슷한 시기에 증인과 김기설은 각각 군에서 전역하였고, 증인은 학교에 복학하였으며, 김기설은 전역후에 성남 민성련에 나가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운동권 활동을 하였지요.

답 :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 : 증인은 김기설보다 두달 늦게 입대하였으나, 교련혜택을 45일 받아 비슷한 시기에 전역하였지요.

답 : 예.

문 : 김기설은 입대전에도 운동권 활동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답 : 입대전에도 그런 식의 사고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식적인 활동을 하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문 : 전역 후 증인과 김기설은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만났었으며, 아무리 안만나도 한달에 한번은 만났었고, 김기설은 증인을 만나기 위하여 증인이 다닌 한양대 캠퍼스에 자주 놀러왔으며, 고향 파주에도 주로 증인을 만나러 자주 왔었지요.

답 : 예.

문 : 김기설은 친구들 경조사에 되도록 많이 참석하려고 힘을 쓰는 편이었고, 고향친구를 만나서는 운동권에 있다는 내색은 잘 안하였고, 친구들끼리 함께 놀러가면 궂은 일을 잘 쟁여주었고, 술 마신 후 술취한 친구들 뒷바라지도 꼬질 해주었지요.

답 : 예.

문 : 증인은 김기설이 1990. 12.경 전민련으로 옮겨 일하게 된 것을 알고 있나요.

답 : 예, 알고 있습니다.

문 : 김기설이 전민련으로 간 이후로는 그전보다

만나기가 힘들어졌었지요.

답 : 예.

문 : 증인은 김기설을 마지막으로 본 것은 언제였나요.

답 : 작년 3월말경 선거하는 날이었는데, 아마도 기초의회 의원선거일 같습니다.

문 : 증인은 김기설이 분신하였던 1991. 5. 8. 학교에 가지 않고 파주집에서 늦잠을 자고 있었다고 하였지요.

답 : 예.

문 : 그런데 증인의 사촌동생 강명원이 증인에게 전화로, 그가 목욕탕에서 텔레비전 뉴스를 보는데 김기설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분신하였다고 하므로, 증인도 곧 텔레비전을 켜서 09:45경에 방영되던 김기설 관계 뉴스를 보게 되었지요.

답 : 예.

문 : 그때 그 화면에 유서의 글씨가 방영되고 있었는데 증인은 한눈으로 김기설의 글씨라는 것을 알아보았고, 친구 김기설이 분신한 것으로 짐작하였지요.

답 : 기설이가 평소에는 분신하겠다는 내색을 전혀 안했었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지도 않아 잘 몰랐었는데 그날 사촌동생의 전화를 받고 살펴보니 텔레비전에 유서에 관한 자막이 나왔는데 기설이 글씨와 같았습니다.

문 : 이것이 유서의 진본입니다. 이것이 김기설의 글씨가 틀림없나요.

이때 변호인은 증인에게 암제1-6호 유서를 제시하다.

답 : 예, 맞습니다.

문 : 증인은 이것이 김기설의 글씨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답 : 저와 편지같은 것을 자주 주고받았고, 평소에 글씨같은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알 수 있었습니다.

문 : 그런데 증인이 알고 있던 김기설은 한양대에 진학하지 않았는데 같은 뉴스에서 한양대 철학과 3학년을 중퇴하였다 하므로 미움 한구석에서는 다른 사람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기에,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한양대에 전화를 해 보았지요.

답 : 예.

문 : 그런데 통화중이어서 통화는 못하였지요.
답 : 예.

문 : 중인은 곧, 김기설의 수첩에는 이명인 '대만'으로 기재되어 있는 친구 김형기에게 전화하여 신촌역에서 만나기로 하였고, 그로 하여금 한양대에 확인해볼 것을 부탁하였지요.
답 : 예.

문 : 김형기와 신촌역에서 만나 함께 같은 날 11:30 경 세브란스병원에 도착했지요.
답 : 예.

문 : 한양대에 전화로 문의한 김형기는 한양대로부터 그날 그와 같은 문의전화가 수없이 많이 왔었는데, 한양대 철학과에는 그러한 사람이 없다는 답을 들었다고 하였지요.
답 : 예.

문 : 중인이 연대 세브란스병원에 도착해보니 그곳에서도 김기설의 신원확인을 정확히 하지 못하고 있었지요.
답 : 예.

문 : 중인이 도착하였을 때 홍성은이라는 여자는 와 있었으나, 김기설의 가족은 와 있지 않았지요.
답 : 홍성은씨가 와 있는 것은 보지 못했으며 김기설의 가족도 와 있지 않았습니다.

문 : 그래서 중인은 양양에 근무하는 친구 조원혁을 통하여 부모, 누나들에게 연락해주도록 하였나요.
답 : 예.

문 : 김기설의 부모님, 누님들이 조원혁으로부터 처음 연락을 받았는지 아니면, 그 전에 먼저 연락을 받았는지 중인은 잘 모르지만, 중인쪽에서도 연락을 취했었지요.
답 : 예.

문 : 김기설의 부모님은 오후에 오셨지요.
답 : 예.

문 : 둘째, 셋째 누님 내외는 병원에 왔었지요.
답 : 예.

문 : 그런데 김기설에게 많은 애정을 쏟았던 큰누님은 아들 영준이 교통사고를 당하여 바로 오지 못하고 더 늦게 왔었지요.
답 : 그런 것으로 기억됩니다.

문 : 중인은 김기설의 첫째, 둘째 매형은 자주 보았는데, 셋째 매형은 그날 처음 보았지요.
답 : 예.

문 : 중인은 김기설의 분신으로 김기설의 부모님에게 불효한 것같은 느낌이 들어 난감하였으나, 김기설의 장례에 대해 의논할 때, 부모보다 일찍 죽은 자식이라 화장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을 때, 화장을 하게 되면 나중에 생각나도 찾아가볼 테가 없으니 매장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지요.
답 : 예, 그날 고향친구들이 여럿 왔었는데 고향친구들 의견이 그러하여 부모님께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문 : 김기설의 유서가 김기설 본인이 쓴 것인지에 대한 말이 나왔었지요.
답 :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 : 그리고 셋째 매형인 장병호는 중인에게 유서의 글씨가 김기설의 글씨가 맞는지 물어보았지요.
답 : 예.

문 : 그래서 중인은 중인이 일기로는 김기설의 글씨가 맞다고 대답하였지요.
답 : 예.

문 : 그러자 김기설의 누나들은 김기설과 가장 친한 중인이 김기설의 글씨가 맞다고 하면 김기설의 글씨임에 틀림없는 것이라고 하였지요.
답 : 예.

문 : 김기설의 가족들은 중인만큼 김기설의 필적을 자주 많이 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인에게 물어보았던 것으로 알고 있지요.
답 : 예.

문 : 김기설이 중인에게 편지를 써 보낼 때는 유서와 같은 필체로 쓴 편지를 보냈나요.
답 : 어떤 때는 정자로 보낸 적도 있었고, 어떤 때는 시간이 없어서 그랬는지 막 훌려쓴 글씨도 있었습니다.

문 : 중인은 군대시절에 김기설로부터 받은 편지를 보관은 안해 두었나요.
답 : 저희가 편지를 주고받은 게 주로 같이 군대생활을 할 때였는데, 군인들이 편지를 많이 쓰므로 저희들이 편지를 자주 주고받기는 했는데, 군대에서는 서

신검열이 있기 때문에 편지를 모아두기가 힘이 듩니다. 그래서 받으면 약 열흘 정도 있다가 버리곤 하여 남아 있지 않습니다.

문 : 이 전화번호란에 써여진 글씨가 김기설의 글씨가 틀림없나요.
이때 번호인은 중인에게 번호인이 제출한 중제 20의 1, 2호증 전화번호란 사본(325)을 각 제시하다.

답 : 예, 맞다고 생각합니다.

문 : 이 전화번호란에 기재된 김형기, 대만, 유기범, 안혜정, 우미애, 김진태, 박은아, 신동민은 모두 중인 및 김기설의 동창친구거나 동향친구들이지요.

답 : 예.

문 : 이 전화번호기재란 복사본에 중인이 성남 민청련 소속 이효경, 성남 터사랑소속 권법재 등과 명단에 있던 사람들의 신원을 확인하며 연락을 취한 사실이 있나요.

답 : 김기설이 죽은 날 저녁때 영안실 앞에서 체크한 것인데, 같이 체크를 하면서 온 사람 안은 사람 검사하였습니다.

문 : 바로 이 전화번호란 사본을 가지고 체크했던 것이 맞는가요.

답 : 이 사본에다가 말입니까.

문 : 이 사본을 보면서 온 사람, 안은 사람, 연락할 사람을 이효경, 권법재와 함께 확인하면서 연락했던 것이 맞는가라는 얘기입니다.

답 : 그때 수첩에다가 한 것 같기도 하고, 사본에다가 한 것 같기도 합니다.

문 : 수첩에다가요. 이것은 수첩 전화번호란 사본입니다.

답 : 아무튼 체크한 적은 있습니다.

문 : 이 복사본 위에 중인이 쓴 글씨도 있는가요.

답 : 제가 쓴 글씨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 : 김대만은 중인과 같이 세브란스병원에 갔던 친구이고, 유기범은 태어날 때부터 김기설의 옆집에 살던 친구이고, 신동민은 김기설과 6촌지간이자 중학교 동창으로서 한양대를 졸업하고 현재 알오티시(ROTC) 장교로 복무하고 있으며, 안혜정은 여성이며, 우미애는 학교 교사이고, 박은아는 서강대를 졸업하고

지금 학원을 경영하고 있지요.

답 : 예.

문 : 안혜정은 중인 및 김기설과 같은 여자동창생으로서, 현재는 서부경찰서에 근무하고 있고, 김기설과는 평소 대화를 나누는 사이였으며, 안혜정의 결혼식에 김기설이 따라 갔었지요.

답 : 안혜정이 88 겨울경 청주에서 결혼식을 했었는데, 그때 김기설이 청주까지 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 : 중인은 김기설과 가장 친한 친구였지요.

답 : 예, 가장 친한 친구중의 하나였습니다.

문 : 그런데 피고인의 이름은 이 전화번호란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가 김기설이 홍성은에게 자신의 수첩은 넘겨주기 직전에 맨 마지막에 가장 친한 친구라고 하면서 김기설이 중인의 이름, 전화번호를 기재해 주었는데, 왜 그랬을까요.

답 : 평소에 기설이가 자주 만나는 친구였고, 기설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로는 제일 친한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친한 관계였으므로 기설이가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문 : 전화번호란에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어놓을 필요가 없을 만큼 친한 친구였기 때문인가요.

답 : 예, 수시로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어보곤 하였습니다.

문 : 즉 중인은 가장 친한 친구로서 또 전화번호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적어놓을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던 것으로 짐작하는가요.

답 : 그랬을 수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문 : 중인은 김기설의 성남 민청련 및 전민련 사무실 전화번호를 암기하고 있었나요.

답 : 성남 민청련 전화번호는 지역번호가 들어가므로 길어서 당시 제가 암기 못하고 있었는데, 그때는 주로 기설이가 찾아 왔었고, 전민련에 간 다음부터는 제가 전화번호를 외우고 있었습니다.

문 : 전민련 전화번호는 지금도 외울 수가 있나요.

답 : 743-9127에서 9128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문 : 중인은 운동권 활동에 관심이 있거나 운동권서클에 가입한 적이 있는가요.

답 : 우리나라가 민주주의화되는 것에는 관심이 있

었지만 직접 공식적인 서클에 가입한 적은 없습니다.

문 : 중인은 금년 2월에 한양대를 졸업하여, 현재는 쌍용엔지니어링 도시계획부에 근무하고 있으며, 얼마 전 1년 후배인 동창 우미애와 결혼하여, 현재 광주에서 분가하여 살고 있지요.

답 : 예.

문 : 중인은 김기설의 49재, 100일재에 모두 참석하였고, 김기설의 부모님도 가끔 뵙고 오지요.

답 : 예.

검사 신상규

증인에게

문 : 김기설이 서울 마포에 와서 큰누나집에서 고등학교를 다니기 시작했지요.

답 : 예.

문 : 그게 언제였나요.

답 : 1981년에서 1982년 사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 : 이때 김기설이 마포교회에 다닌 것을 알고 있나요.

답 : 예, 교회에 다녔습니다.

문 : 어느 교회인지 아는가요.

답 : 어느 교회인지는 모르나 누님도 교회에 득실하게 다녔기 때문에 누님 영향으로 다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 : 마포교회에 다닐 때 교회학생회 책임을 맡고 있던 임근재라는 사람이 81, 82년 그때부터 김기설이 성남 터사랑이나 전민련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 접촉을 하면서 소위 운동권 의식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데 그 사람을 알고 있나요.

답 : 임근재라는 이름은 처음 들어봅니다.

문 : 안혜정과 김기설은 가까운 친구 사이였지요.

답 : 예.

문 : 안혜정의 진술에 의하면 '텔레비전에 유서가 비치는 것을 보자마자 저것은 기설이의 글씨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서 5.8 분신사건이 있었는데 5.9. 아침 출근길에 분향을 하러 갔었다'는데 당시 안혜정을 만난 적이 있는가요.

답 : 혜정이가 왔다갔다는 소리는 들었으나 만난

적은 없습니다.

문 : 안혜정이 5.9. 분향하러 갔을 때 김기설의 아버지가 안혜정에게, 당시 유서 사본들이 빈소에 많이 있었는데, 그것을 보여주면서 "내가 보기에는 기설이 글씨 같지 않은데 혜정이는 어떻게 생각하나"고 물었는데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가요.

답 : 예, 그런 말씀을 기설이 아버님으로부터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문 : 그래서 안혜정은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김기설의 글씨와 유서의 글씨가 다르기 때문에 유서사본을 집으로 가지고 가서 자기가 보관하고 있던 김기설의 편지와 함께 '유서의 글씨는 자기가 알고 있는 김기설의 글씨와 다르다'고 하면서 제출한 적이 있는데 그 얘기도 들은 적이 있는가요.

답 : 예, 있습니다.

문 : 그 당시 안혜정은 자기는 시집을 간 여자기 때문에, 중인을 포함한 김기설의 중학교 친구들에게 '유서 글씨가 기설이 글씨 같지 않은데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편지가 있으면 제출하자'고 전화로 연락하고 제의한 적이 있었지요.

답 : 예.

문 : 그때 중인은 뭐라고 대답하였나요.

답 : 저는 그때 가지고 있는 편지가 없었기 때문에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문 : 91.5. 분신사건이 났을 때 안혜정이 중인에게 '김기설의 편지나 글씨가 있으면 제출하자'고 요청을 했을 때 중인은 '친구가 죽은 마당에 각각 자기의 입장에서 주장하거나 이용하는 것이 마땅치 않고 나는 가지고 있던 기설로부터 받은 편지나 책자 선물들은 모두 태워버렸다'고 했다는데 사실인가요.

답 : 태운 적도 없고 그런 말을 한 적도 없습니다.

문 : 김기설의 4촌인 이재구라고 있는데 알고 있나요.

답 : 얼굴은 모르나 이름은 들어본 기억이 있습니다.

문 : 안혜정뿐만 아니라 4촌인 이재구도 '유서의 글씨는 김기설의 글씨와 다르다'고 원심에서 증언한 바 있는데, 중인이 보기에는 유서의 글씨가 김기설의 글씨라고 확실히 말할 수 있는가요.

답 : 예,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문 : 중인은 1심에서 증인으로 채택되었지요.

답 : 모르는 사실입니다.

문 : 조금전 중인은 "셋째 매형은 그날 처음 보았는데, 셋째 매형이 '유서가 기설이의 글씨냐'고 물었다"고 했지요.

답 : 예.

문 : 그날이 5.8인가요.

답 : 5.8이나 5.9쯤인 것 같습니다.

문 : 셋째 매형인 장병호를 5.9. 영안실에서 처음 만난 것인가요.

답 : 예.

문 : 당시 장병호씨가 '이게 기설이 글씨냐'고 묻자 증인이 맞다고 했나요.

답 : 예.

문 : 그 말을 듣고 누나들도 '기설이 친구인 송홍이가 맞다고 하면 맞을 것이다'라고 했다는데 그 '누나들'이 어느 누나인가요.

답 : 둘째 누나와 막내 누나였습니다.

문 : 5.9. 밤에 김기설의 둘째 누나, 셋째 누나, 첫째 매형, 둘째 매형, 셋째 매형이 다섯 사람은 검찰에 연락하여, 여러가지 분신당시의 경위 등에 의문점도 있지만 유서의 글씨가 기설이의 글씨가 아니라고 하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필적을 제출하고, 사망경위나 유서가 기설이의 필적인지 아닌지 세밀히 조사해 달라고 수사요청을 했는데 알고 있는가요.

답 : 그런 것은 나중에 들었습니다.

문 : 그러면 증인의 조금전 진술에 의하면 '둘째 누나와 셋째 누나 등이 "이것이 기설이 글씨가 맞다"고 얘기했다'고 하였는데 이것과 바로 그 5.9. 밤에 검사를 만나자고 하여 수사요청을 한 것과는 서로 맞지 않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가요.

답 : 시간상으로는 맞지 않는 것 같지만, 저는 누님들과 매형들이 있는 테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매형이 저를 먼저 불렀습니다.

문 : 안혜정이 자기가 알고 있는 기설이 글씨와 유서의 글씨가 다르다고 하면서 친구들에게 필적이 있으면 모두 모아보고 따져보자고 한 적이 있었지요.

답 : 저에게 전화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문 : 그때 증인은 안혜정에게 무어라고 했었나요.

답 : 저는 그냥 '없다'고만 얘기했습니다.

문 : 안혜정이 그런 전화를 한 이유는, 안혜정은 유서글씨가 김기설의 필적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증인에게 전화한 것이지요.

답 : 그러리라 생각합니다.

문 : 그 전화를 받았을 때 증인은 '편지가 없다'고만 하셨나요, 아니면 '내 생각에는 유서의 글씨가 기설이 글씨 같다'든지 아니라든지 아니면 '혜정이 네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든지 다른 이야기가 있었나요.

답 : 혜정이가 기설이의 훌려쓴 글씨에 대한 기억이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 : 그러면 증인은 지금 안혜정이 알고 있는 글씨는 또박또박 쓴 정자체이고, 이건 유서는 훌림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요.

답 : 예.

문 : 증인이 5.8. 연세대 영안실에서 연락을 하기 위하여 보았다는 것이 수첩원본이었나요, 아니면 조금 전 보여준 복사본이었나요. 그것도 아닌 다른 무슨 명단이었나요.

답 : 주소가 일목요연하게 적혀 있었던 것은 맞는데, 사본이었는지 원본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문 : 사본이든 원본이든 거기에 소속 '터사랑'이다 시골친구다 이런 것을 체크를 하고 연락을 했다면 아까 보여준 사본에 증인의 글씨가 들어있다면 알아볼 수 있을 텐데 거기에 증인의 글씨가 있는가요.

답 : 제 글씨는 없습니다.

문 : 그럼 증인은 거기에 글씨를 쓴 적이 없는가요.

답 : 제가 그 수첩에 말입니까.

문 : 예.

답 : 쓴 적이 없습니다.

문 : 그러면 그 전화번호를 보고 증인이 5.8. 연세대학에서 누구에게 연락한 일이 있었나요.

답 : 제 친구들은 이미 다 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전화번호를 참고할 일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제 친구들이 왔다라는 얘기만 해주면서 이름이 씨있는 란에 광탄의 친구인지 아닌지 그것만 얘기해 주었습니다.

문 : 거기에 의하여 전화연락을 하던지 거기에 체크한 적은 없는가요.

답 : 예.

문 : 중인의 얘기대로라면 군에 있을 때 편지를 교환한 이후로는 김기설로부터 편지를 받거나, 필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없는 것이지요.

답 : 예.

문 : 중인이 마지막으로 김기설로부터 편지를 받은 것은 언제인가요?

답 : 오래되어 기억은 안나지만 88 초쯤 될 것입니다.

문 : 지금 안혜정은 자기가 보관했던 편지를 내놓으며 '이것과 유서를 감정해보시오. 틀립니다'고 하는데, 중인도 지금 주장하는대로 필적을 보관하고 있다 는지 남아있는 게 있어서 제시하면서 얘기하면 좋겠는데 지금 하나도 없다는 것이지요.

답 : 예, 없습니다.

번호인 이석태

증인에게

문 : 안혜정도 김기설의 친구이고, 중인도 마찬가지로 김기설의 친구이지요.

답 : 예.

문 : 그러면 김기설이 분신한 뒤에 두 사람이 필적 문제에 관하여 서로 의견을 교환한 적이 있었나요?

답 : 혜정이께서 전화가 왔을 때 이야기한 것 같습 니다.

문 : 그때 한번밖에 없었나요?

답 : 그 후에도 전화한 적은 있었으나 그런 얘기는 일체 하지 않았습니다.

문 : 그러면 그때 안혜정씨의 입장은 어떠하였고, 중인이 '기설이 글씨가 맞다'는 얘기에 안혜정은 무어라고 하였나요?

답 : 저는 혜정이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보통 남자들이 여자에게 편지를 쓸 때 글씨를 훌려쓰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혜정이에게 기설이가 카드나 편지를 보낼 때도 되도록이면 정자로 정성껏 썼으므로 정자만 알고 있을 것이므로, 혜정이가 충분히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혜정이에게 이야기했었습니다.

문 : 중인은 안혜정이 김기설로부터 받은 편지를

본 적이 있는가요.

답 : 신문에서 보았습니다.

문 : 지금 중인이 안혜정에게 이야기한 것은, 중인이 신문에서 안혜정에게 보낸 김기설의 편지의 필체를 보고 안혜정에게 그런 이야기한 것인가요?

답 : 아닙니다. 혜정이가 먼저 저에게 '기설이에게 서 온 편지는 전부 잘 쓴 글씨다'라고 이야기했었습 니다.

문 : 그렇다면 중인의 이야기대로 군에서 여자에게 보낸 편지니까 그럴 수가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였나요?

답 : 그 당시에 이야기의 주제가 글씨가 다르나에 있었기 때문에, 혜정이는 전화로 저에게 이야기하기를, 아마 그 전화를 받은 것이 신문에 유서대필이 문 제되고 난 다음인 것 같은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글씨는 기설이가 이력서를 쓰고 했던 그 글씨와 거의 같다고 해서 저는 '그 글씨하고도 맞는 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문 : 중인이 '그렇지만 유서는 기설이가 쓴 것이 틀림없다'고 얘기하였나요?

답 : 예.

문 : 중인은 김기설과 가장 가까웠던 남자 친구이고 군대에서도 서로 많은 편지를 주고 받았는데, 군대 제대 후에도 기설이의 글씨를 본 적이 있었나요?

답 : 많았습니다.

문 : 그러한 중인의 경험을 통하여 안혜정에게 얘기한 것인가요?

답 : 예.

문 : 거기에 대해 안혜정이 '네 생각이 틀렸다'면서 거기에 대해 이의를 하거나 반박을 한 적이 있었나요?

답 : 혜정이가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검사 신상규

증인에게

문 : 이것이 김기설이 안혜정에게 보낸 편지인데, 중인은 이 글씨를 알고 있나요?
이때 검사는 압제13-2호 편지³²⁶⁾를 중인에게 제시하다.

답 : 예, 알고 있습니다. 기설이의 글씨가 맞습니다.

문 : 중인의 진술에 의하면 검사 신청 압제1-6호 유서원본의 글씨와 압제13-2호의 글씨가 모두 김기설의 글씨라는 이야기인가요.

답 : 예.

문 : 그리고 압제13-2호 안혜정에게 김기설이 보낸 편지는 정자체로 정성들여 쓴 글씨이고, 중인에게 보낸 편지는 그러한 글씨체로도 웠었지만 훌려서 쓴 글씨체도 웠다는 뜻인가요?

답 : 예.

문 : 그러니까 김기설의 글씨체가 정자체로 쓴 것 이 있고, 훌려서 쓴 것이 있고, 두 가지라는 뜻인가요?

답 : 예.

문 : 그러면 이것은 훌림체라는 이야기인가요?
이때 검사는 중인에게 압제1-6호 유서 원본을 제시하다.

답 : 예.

문 : 중인은 지금 압제13-2호 안혜정에게 보낸 편지는 정성들여 또박또박 쓴 글씨체라고 하였는데, 이 편지를 보면 썼다 지우고 침삭을 한 흔적이 많이 있는데 그러한 것이 한눈에도 알 수 있지요.
이때 검사는 중인에게 압제13-2호 편지를 제시하다.

답 : 예.

문 : 이것이 정성들여 쓴 것인가요?

답 : 글씨 자체는 정성이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문 : 그렇다면 유서는 운동권이나 국민에게, 또 부모님에게 죽으면서 마지막으로 쓴 것인데 이것이 여자친구에게 썼다 지우고 한 흔적이 역력한 편지보다 정성스럽게 쓴 것이 아니고 휘갈겨쓴 것이라고 생각하는가요?

답 : 예, 시간이 없거나 하여 그렇게 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 : 이 유서의 글씨와, 안혜정에게 보낸 편지의 글씨는 전혀 다른 두 가지 필체인데 같은 사람이 정성들여 쓰면 편지와 같은 글씨가 되고, 훌려서 쓰면 유서의 글씨가 된다는 말인가요?
이때 검사는 중인에게 검사신청 증거 압제1-6호 유서 원본과 압제13-2호 편지를 제시하다.

답 :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 : 유서에 쓴 글씨체도 본 적이 있는가요?

답 : 예, 그 글씨도 많이 보았습니다.

재판장

증인에게

문 : 4촌동생 강명원은 어떤 시촌동생인가요?

답 : 저의 4촌동생인데 저의 외사촌동생입니다.

문 : 김기설은 학교는 어디를 나왔나요?

답 :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고등학교를 중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 : 거기에 대해 김기설에게 물어본 일은 없었나요?

답 : 그것은 개인의 자존심을 건드릴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서 그러리라 생각만 하고 물어보거나 할 필요는 없다고 느꼈습니다.

문 : 그것은 지금 생각인가요, 아니면 그때 생각이었나요?

답 : 그때 그랬습니다.

문 : 어릴 때부터 친구 사이라면 그런 것을 모를 리가 없지 않은가요?

답 : 제가 기설이를 군대에 보내던 날 기설이 누님 댁에 갔었는데, 누님이 '기설이가 공고에 다녔었다'고 해서 그때 알았고, 그 이후에 알고 있는 데도 일부러 그런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문 : 사회에 나와서는 대학을 나왔든, 고등학교를 나왔든, 혹은 중퇴를 했든 별문제가 아닐지 모르나 고등학교 재학중일 때나 그 나이에는 학교를 중퇴한다든지 제대로 못한다든지 하는 것은 일생 일대에 큰 일이라고 생각할 것이고, 그렇다면 동창이라던지 친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자연히 화제가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이야기가 될 텐데, 중인은 김기설의 학교친구로서 친하다고 하였는데 친구가 고등학교를 어디 나왔는지도 모른다는 것은 조금 이상한 일이 아닌가요?

답 : 제가 고등학교 1학년때 기설이가 광탄상고에 들어갔다가 1학년 1학기때 학교를 중퇴했었습니다. 그래서 왜 학교를 중퇴했냐고 물었더니 자기는 인문계로 가서 공부를 해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서울 누님댁으로 바로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고, 서울에서 제가 고등학교 졸업때까지 가끔 찾아와서 하는 얘기

가 서울에서 인문계 고등학교 다닌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문 : 중인이 물어보지 않더라도 학교친구라면 자연히 알게 되는 것이 아닌가요.

답 : 저희가 사는 곳과 기설이가 사는 곳이 달랐으므로 기설이가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문 : '안혜정에게 보낸 편지는 정성들여 썼을 것이다'라고 중인이 전술했는데 김기설과 안혜정은 단순한 고향 동창이라는 사이에 지나지 않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 이상의 관계가 있는 것인가요.

답 : 남자친구, 여자친구 가리는 사이가 아니라 그냥 터놓고 대화도 하며 굉장히 친한 사이였습니다.

문 : 중인이 보기엔 그냥 동창끼리 남녀간의 애정 관계를 떠난 단순한 관계라는 것인가요.

답 : 예.

문 : 중인은 홍성은을 알고 있는가요.

답 : 기설이 사건 후에 보았습니다.

문 : 중인은 이것을 전에 본 일이 있는가요. 이때 재판장은 중인에게 검사제출 증거 압제7-2호³²⁷⁾를 제시하다

답 : 본 적이 없습니다.

문 : 이것은 김기설이 사망하기 전에 홍성은에게 잘된 것이니 보라고 주었다는 것인데, 그것을 보면 김기설이 결혼을 약속한 사람에게도 마구 훌려쓴 것을 주었는데, 그다지 큰 관계가 없는 사람에게는 또박또박 쓴 것만 보냈다는 것에 대해 중인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답 : 이 글은 편지는 아닌 듯하고 김기설의 낙서인 것 같습니다.

문 : 이것의 필체는 어떤가요.

답 : 기설이의 글씨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문 : 중인은 군대에서 김기설로부터 몇통의 편지를 받은 것인가요.

문 : 군생활동안 카드 등을 합하면 25통~30통 정도 받았을 것입니다.

문 : 그중에서 또박또박 쓴 것도 있고 훌림으로 쓴 것도 있었나요.

변호인 이석태
이 중인에게

문 : 중인은 김기설의 유서필체와 비슷한 훌려쓴

답 : 예, 카드 같은 것은 또박또박 써서 보내고, 편지같이 긴 글들은 대부분 훌려썼습니다.

문 : 중인이 장례식에 갔을 때, 당시 유서가 같다, 안같다는 얘기가 나온 배경은 어디에 있었나요.

답 : 그것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문 : 그 당시에 '배후가 있다, 없다'는 것에 대해 중인이 들어본 일은 있는가요.

답 : 그 당시에는 그런 이야기를 못들었습니다. 제가 장례를 치루는 동안에 즐끈 있었는데 '배후가 있다, 없다'는 이야기는 며칠이 지난 후에 알았습니다.

문 : 김기설의 아버지나 누나들이 '유서의 글씨가 기설이의 글씨가 맞느냐'고 물어본다면 무언가 거기에 의혹이 있으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고 보는 것 이 일반적인 것인데, 당시 중인이 '기설이의 글씨'라고 했을 때 이를 유족들이 승복을 한 것이었나요.

답 : 막내 매형은 믿지 못하는 표정이었고, 막내 누나와 둘째 누나는 제가 '같다'고 하니까 '같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문 : 그러면 중인이 '같다'고 자신있게 얘기한 것인가요.

답 : 예.

문 : 중인은 어떤 근거로 그렇게 보았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가요.

답 : 보통 사람들은 자기와 친한 사람 몇명의 글씨는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 : 그러한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수는 있는가요.

답 : 물리적인 증거는 없으나, 아는 사람 글씨는 한 눈에 알 수 있으며 기설이의 글씨의 특징은 훌려쓰는 글씨를 멋있게 쓴다고 이야기한 적도 있는데, 그냥 첫 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문 : 안혜정에게 보낸 편지도 그런 것인가요.

답 : 예, 그것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문 : 중인은 피고인은 아는가요.

답 : 전혀 모르는 사람이고 오늘 처음 보았습니다.

글씨를 보고 중인이 김기설에게 '멋있다'고 한 적이 있었나요.

답 : 글씨를 훌려쓰는 것이 잘 쓴다는 뜻이 아니라, 글씨를 빠르게 쓰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멋있다'고 했습니다.

문 : 그게 언제쯤이었나요.

답 : 언제쯤이라고 정확한 시기는 모르겠으나 약 2~3년전일 것입니다.

문 : 당시 어떤 내용의 글씨를 보고 그런 얘기를 하셨나요.

답 :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1992. 3. 26.

법원 사무관 최 인 기 재판장 판사 임 대 화

* 중인 선서서 <생략> (공판기록 2410)

문 : 김기설은 또 자기들이 하는 운동이란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말을 하였다는게 그런가요.

답 : 예.

문 : 그러면서 울기도 하였다는데 그런가요.

답 : 예.

문 : 그러다가 김기설은 '앞으로 여러분을 못 볼 것 같다', '5. 8. 분신한다'는 이야기를 하였지요.

답 : 예.

문 : '분신' 이야기가 처음 나온 것이 몇 시쯤이었나요?

답 : 23:00경이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문 : 여관에 들어간 것이 23:00경이 아닌가요.

답 : 여관에 들어간 것은 21:30경이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문 : 중인이 검찰에서 쓴 자술서에 의하면 23:00경에 여관으로 들어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어떤가요?

이때 변호인은 중인에게 수사기록 327장 13쪽줄부터 328장 11쪽줄을 제시(328)하고 읽어주다.

답 : 여관에 들어간 것은 21:00가 넘어서였다고 기억됩니다.

문 : 21:30경에 여관으로 들어갔고, 여관에 들어간지 2시간쯤 후에 분신 얘기가 나왔다는 건가요.

답 : 예.

문 : 그 말을 듣고 송국영이 '술김에 해보는 소리가 아니냐'는 얘기를 하였다가 김기설로부터 뺨을 얻어맞았다는게 그런가요.

답 : 예.

문 : 김기설군은 왜 분신하려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던가요?

답 : 예, 당시 김기설씨가 맡고 있던 실무적인 일은 모르겠으나, 원진레이온 사건과 조성만열사에 대해 설명하고 그때 한참 일어나고 있던 대학생들의 분신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가슴 아파했고, '운동이란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정의를 내리며 '작은 힘이나마 해볼려고 하는데 거대한 힘에 의해 부딪치고 있다', 그리고 '현실은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 어렵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하며 그 상황에 대해 굉장히

히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도와주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이야기하며 울고 했던 기억이 남습니다.

문 : 그런 중 자기가 분신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던가요?

답 : 그런 이야기는 못 들어보았습니다.

문 : 그렇다면 분신하겠다는 이야기를 왜 사귄지 얼마 안되는 중인 등에게 하였는지 그 이유는 아는가요?

답 : 저희들도 처음에는 그런 점 때문에 반신반의하였고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었으나, 김기설씨의 말에 의하면 우리에게 처음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분명히 가슴 아파할 것이며, 그런 이야기를 하는 의도는 '내가 조성만열사의 죽음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듯이 여러분들도 나의 죽음을 이야기해달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문 : 김기설군 분신 후에 중인은 동아일보 기자와 인터뷰한 일이 있었지요?

답 : 예.

문 : 그 인터뷰기사를 보면, 김기설군이 자신의 분신 이유를 '민중이 탄압받는 어려운 현실 속에서 자신의 삶의 안위만을 고집할 수는 없다'면서 '모두가 잘사는 자유스러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특히 잇따른 학생들의 분신을 막기 위해서 자신이 나설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자기도 남들처럼 평범하게 결혼도 하고 가정도 갖기를 바라는 사람이지만, 분신을 결심할 경위를 이해해달라'는 말을 하였다는게 그런가요?

답 : 예.

문 : 김기설은 자신의 가족이나 친한 친구들에게는 분신하겠다는 말을 차마 하지 못하였고, 중인 등은 멀친한 상태에서 더 자유롭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았면서, 자신의 분신계획을 처음으로 남에게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했다는 사실인가요?

답 : 예, 분명히 그렇게 말했습니다.

문 : 술도 마시며 이야기를 하다가 다음날 새벽 03:00경에 김기설군이 침대에서 잠이 든 후에도 중인과 송국영은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였지요.

답 : 예.

문 : 송국영은 5. 6. 09:00경 직장때문에 먼저 나가고, 중인은 마침 비번이어서 김기설이 일어날 때까지 계속 남아 있었지요.

답 : 예.

문 : 김기설은 11:00경에 눈을 떴으나 머리가 아프다고 하면서 바로 일어나지는 못하였지요.

답 : 예.

문 : 중인은 김기설이 깨어나자마자 어젯밤 한 이야기가 정말이냐고 되풀이하여 물어보았는데, 김기설은 정말이라고 하였지요.

답 : 예.

문 : 잠시 후 김기설이 세수하고 나갈 채비를 하였으나, 양말은 술에 젖어 신지 못하고 맨발로 나오게 되었지요.

답 : 예.

문 : 중인과 김기설은 식사나 하자고 하였으나 수중에 돈이 없어서, 중인의 상업은행 통장에서 예금을 인출하기로 하고 신문로쪽에 있는 상업은행에 함께 가서 금 40,000원을 인출하였습니다.

답 : 예.

문 : 중인과 김기설은 그곳에서 가장 가까운 설령탕집에 들어갔는데, 그 식당에서 김기설은 전화를 걸고 오더니 여자친구에게 전화하였다는 말을 하였지요.

답 : 예.

문 : 그 여자친구가 누구인지 아는가요?

답 : 김기설씨 분신 후, 홍성운을 만났을 때, 김기설로부터 전화가 왔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문 : 중인은 그 식당에서 수첩을 본 일이 있는가요?

답 : 예, 본 일이 있습니다.

문 : 어떻게해서 그 수첩을 보게 되었나요?

답 : 그때도 저는 분신을 믿지 못하고 당황하여 올고 있던 상황이었으며, 당시 저만 식사를시키고 김기설씨는 식사를시키지 않았았는데, 제가 국물을 먹고 있을 때 수첩을 꺼내더니 자신이 약속을 적어 놓았던 것을 다시 넘겨보면서 '약속이 다 되어 있네'라고 얘기하며 한번 웃고, 뒤의 전화번호가 적혀있는 부분을 펴더니 녹색 하이테크펜으로 동그라미를 치면서 '이 사람들에게 연락을 해달라'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 : 그러면 그 수첩을 증인에게 주던가요?

답 : 저에게 전해주려고 하다가 '아니 저녁때 연락할 사람이 있다'면서 다시 집어넣었습니다.

문 : 증인은 지금 그 수첩을 보면 기억을 할 수 있겠나요?

답 : 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 : 증인과 김기설군은 설령탕집을 나와 청암동에 있는 증인의 집에 들러 증인은 옷을 갈아입고 나와 20분 정도 걸어 '장비 및 인생'이라는 카페에 들어가 커피를 마셨지요.

답 : 예.

문 : 그 카페는 어디에 있나요?

답 : 마포 가든호텔 뒤에 있습니다.

문 : 그 카페에 들어간 것은 몇시쯤이었나요?

답 : 오후 3시쯤이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문 : 김기설은 위 카페에서 그 전날부터 가지고 다닌 전민련 봉투속에서 노트를 꺼내여 고적고적하면서 '유서에 무어라고 쓰면 좋겠느냐'는 말을 한 일이 있지요.

답 : 예.

문 : 그래서 중인이 '무슨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정말 분신하려는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고 한 일이 있지요.

답 : 예.

문 : 그러나 당시 김기설은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초연하게 보이고, 오히려 울고 있는 증인을 위로하려고 하여, 증인은 '사태가 심각하구나, 빨리 누구에게 알려야겠다'는 생각을 하였지요.

답 : 예.

문 : 증인은 김기설이 카페에서 노트에 쓰고 있던 그 내용을 보았나요?

답 : 못 보았습니다.

문 : 당시 많이 썼나요, 아니면 그저 고적고적하던가요?

답 : 많이 써 놓았던 것을 장을 넘기면서 본 것으로 기억됩니다.

문 : 장을 넘기면서 '유서에 무어라고 쓰면 좋겠느냐'라는 말을 하던라는 얘기인가요?

답 : 예.

문 : 그 카페에서 오후 3시 조금 넘어 나와서 바로 헤어졌나요.

답 : 바로 헤어지진 않고, 차 타는 곳 앞에 사진관이 있었는데 김기설씨가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사진을 찍어야 한다며, 1분 칼라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문 : '준비를 한다'는 것은 무엇을 준비를 한다는 것인가요, 분신의 준비인가요.

답 : 예. 그래서 사진을 몇장을 찍었나요.

답 : 4장을 찍었는데, 제가 1장만 달라고 하여 1장을 제가 갖고, 3장은 그 형이 가지고 갔습니다.

문 : 다음날 18:00에 가든호텔 커피숍에서 다시 만나기로 하고 헤어졌지요.

답 : 예. 그 약속은 김기설을 다시 만나 마음을 되돌려 보기 위하여 증인이 제의했던 것이지요.

답 : 예. 문 : 증인과 헤어질 때 김기설은 어디로 간다고 하던가요.

답 : 연대로 간다고 하였습니다.

문 : 증인은 5. 6. 밤 송국영, 박경민을 만나 '김기설의 분신계획이 아무래도 정말인 것 같다'는 증인의 생각을 이야기하자, 송국영은 '잘 모르겠다'고 하고, 박경민은 '그럴 리가 없다'라는 의견이었지요.

답 : 예. 문 : 증인들은 다음날 김용희가 연대 학생회관에서 김기설을 만나기로 하였고, 밤에는 다시 증인과 만나기로 하였으나, 김용희에게 연락하여, 김기설을 만나게 되면 어떤 말을 하는지 주의해 보도록 일르자고 하고 헤어졌지요.

답 : 예. 문 : 김기설은 1991. 5. 7. 12:00 김용희와 만나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증인은 이 사실을 김용희로부터 전해들었지요.

답 : 예, 그런 이야기때문에 전화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문 : 같은 날 18:00에 증인과 만나기로 한 가든호텔 커피숍에도 증인이 두 시간반이나 기다렸는데도 김기

설은 나타나지 않았지요.

답 : 예.

문 : 증인은 마음이 불안하여 21:00경 연대 대책회의에 찾아가서 상황실에 근무하는 이보은 등에게 김기설이 분신하려 한다는 사실을 직접 알렸지요.

답 : 예.

문 : 증인의 말을 들은 그들은 매우 놀라면서 '말도 안된다', '분신을 막아야 된다'고 하였지요.

답 : 예.

문 : 그 자리에 이보은외 또 누가 있었나요.

답 : 남자 한 분이 있었는데 이름은 모르겠습니다.

문 : 증인은 불안한 마음으로 5. 7. 밤을 보내고, 이튿날 아침 역시 불안한 상태에서 출근하였는데, 오전 9시 넘어서 박경민으로부터 김기설이 분신을 결행하였다는 전화를 받았지요.

답 : 예.

문 : 증인이 검찰에 출석하여 조사받은 날짜가 기록에 5. 14로 되어 있는데 맞는가요.

답 : 날짜는 정확히 기억이 안납니다.

문 : 증인은 검찰에서 유서를 보았나요.

답 : 못보았습니다.

문 : 증인은 김기설과 알게 된 이후 김기설의 메모지, 수첩, 글씨쓰고 있는 노트에서 김기설의 글씨를 보았기 때문에 그 필체를 대강은 알 수 있는가요.

답 : 정자체 글씨는 제가 안보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고, 훌려쓰는 글씨는, 제 친구가 그런 글씨를 쓰기 때문에 비슷하다고 생각하며 본적이 있습니다.

문 : 김기설이 쓰는 글씨를 보고 '내 친구 글씨와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다는 이야기인가요.

답 : 예.

문 : 그 친구가 누군가요.

답 : 고등학교때 같이 편지를 주고받던 친구인데, 글씨가 똑같다가 보다는, 훌려쓰는 글씨인데 제가 그런 글씨를 좋아하는데, 기설이형이 그런 글씨를 쓰는 것을 보고 '남자 글씨인데 예쁘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검사 임 철

증인에게

문 : 증인은 김기설과 5. 5. 만나기 전에 두 사람이 만날 일이 있나요.

답 : 들어서는 만난 일이 없습니다.

문 : 91. 4. 경에 연세대 근처에 있는 카페에서 단둘이 만난 일이 없나요.

답 : 둘이 아니라 셋으로 기억합니다.

문 : 누구누구지요.

답 : 송국영씨, 박경민씨, 용희씨지요.

문 : 그때 김기설과 같이 만날 때 누구와 만났는가요.

답 : 그렇게 다같이 만났습니다.

문 : 그때 사랑을 주제로 하여 이야기를 하였나요.

답 : 예.

문 : 5. 5. 12:00경 방통대 친구 6명이 방통대 서클룸에서 첫모임을 가지고 16:00까지 막걸리를 마셨지요.

답 : 예.

문 : 당시 김기설이 그날 16:00경에 연대 대책회의가 있다고 한 사실이 있지요.

답 :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문 : 박경민의 진술에 의하면 16:00경에 연세대에서 대책회의가 있다고 해서 김기설에게 가지 않느냐고 하니까 김기설이 "여기는 여자가 많아 여기가 더 좋다"고 농담한 사실이 있다"고 하는데 기억이 안 나는가요.

답 : 저는 잘 기억이 안납니다.

문 : 그때 백제장여관에 들어간 시간이 정확히 몇 시쯤 되나요.

답 : 9시 좀 넘은 때라고 기억됩니다.

문 : 송국영, 박경민의 진술을 종합하면, 23:00경이었으며 그래서 그 당시에는 달리 술 마실 곳도 없어서 김기설이 '술을 더 마시자 그런데 장소가 없으니 여관으로 가자'고 했는데, 23:00경이 아닌가요.

답 : 23:00경이 아니었고 21:00는 넘었고 22:00되어 가고 있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문 : 막걸리를 마시며 이야기하던 중 김기설이 갑자기 분신계획을 말하였지요.

답 : 예.

문 : 그러면서 '살아서 일하기보다 죽어서 사람들

의 가슴에 남겠다'는 말을 하였나요.

답 : 예.

문 : 송국영이나 증인이 김기설과 만난 것이 불과 2회뿐인데, 분신계획을 이야기할 때 좀 이상하지 않던가요.

답 :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문 : 그때 김기설이 분신계획을 밝히면서 '자신을 따라다니며 자신에게 계기를 준 선배로 인하여 자신의 길이 정해졌다'라는 말을 한 사실이 있는가요.

답 :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문 : 당시 증인과 함께 김기설을 만나 같은 여관방에 있었던 송국영이 김기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는데, 기억나지 않는가요.

답 :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말은 그때 한 것이 아니라 5. 5. 자기소개를 할 때 '대학때는 서클에 들면, 선배들이 서클가입을 권유하고 자기 서클에 대해 설명을 하며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도 그랬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 : 그러니까 증인의 기억으로는 5. 5. 12:00경 김기설이 자기소개를 할 때 김기설이 그렇게 말하였다 는 건가요.

답 : 예.

문 : 5. 6. 아침 함께 있던 송국영이 여관에서 나와 출근을 하였는데 증인이 출근을 하지 않고 김기설과 계속 남아 있었던 이유는 증인이 비번이었기 때문인가요.

답 : 제가 비번이었던 것이 아니라, 무슨 날이었는지는 기억나지 않으나 그날은 전체적으로 다 쉬는 날이었습니다.

문 : 그날은 출근을 않아도 되는, 완전 휴무일이었나요.

답 : 예.

문 : 증인은 5. 6. 15:00까지 김기설과 같이 다니며, 증인의 돈으로 사진을 찍고 그 사진중의 하나와 주민등록증을 받았지요.

답 : 주민등록증은 카페에서 김기설씨가 전민련 봉투를 다 버리려고 하며 주민등록증도 구겨서 버리려고 하는 것을 제가 달라고 하였습니다.

문 : 하여간 김기설로부터 받은 것은 사진 하나, 주

민동록증 하나이지요.

답 : 예.

문 : 중인은 변호인 신문에서 '김기설이 노트, 수첩에 글자를 썼다' 그리고 '자기가 죽으니까 정리한다며 모든 것을 다 버린다고 했다'고 하였지요.

답 : 예.

문 : 그렇다면 모든 것을 다 버렸는데 어떻게 다시 수첩이 나올 수 있을까요.

답 : 수첩에 있는 것을 버린 것이 아니라, 봉투에 있는 것을 구겨서 버리고, 긁적긁적대다가 구기고, '지혜씨에게 적어줄 얘기가 있었는데' 하며 한번 웃고 …, 봉투에 있던 것을 버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재판장

증인에게

문 : 봉투란 무슨 봉투를 말하는가요.

답 : 전민련 봉투를 원래 가지고 있었습니다.

검사 임 철

증인에게

문 : 5. 5. 12:00에 김기설이 올때 가지고 온 소지품은 어떤 것이 있었나요.

답 : 제가 본 것은 봉투 하나였었습니다.

문 : 봉투 안에는 무엇이 있었나요.

답 : 속을 들여다 본 것이 아니고 노트와, 살짝 꺼낼 때 본 것은 두꺼운 복사한듯한 자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문 : 김기설이 '죽으니까 소지품을 다 정리한다'고 하였나요.

답 : 소지품을 다 정리한다는 표현이 아니라 '이것도 이제는 필요없지'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문 : 그 당시 정리한 소지품은 기억이 나는가요.

답 : 봉투에 있던 노트를 좀 찢어버리고, 복사자료는 찢지는 않고 나중에 나와서 쓰레기통에 버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 : 그때 전민련 통장도 찢어버리지 않았나요.

답 : 그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버렸던 것 같습니다.

문 : 평소 수첩은 어디에 보관을 하던가요.

답 : 안주머니에 보관하였습니다.

문 : 죽기 직전에 모든 소지품을 정리하고 주민등록증까지 버리는데 수첩은 가지고 있을 이유가 있을까요.

답 : 수첩은 저녁때 연락할 사람이 있다고 하며 도로 넣었고, 주민등록증도, 그때 제가 한정덕씨로 알고 있었으므로 제가 주민등록증을 보여달라고 했었는데, 그것도 꺼낸 김에 다 버릴려고 하는 것을 제가 달라고 했습니다.

문 : 중인은 변호인 신문에서 '노트에 유서를 쓰겠다' 하며 정리를 하였고, 많이 써여 있었고 장을 넘기며 계속해서 썼다'는데 그것까지 버린 것은 이상하지 않은가요.

답 : 이상하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문 : 그렇다면 모순이 있지 않은가요. 유서를 자기가 죽기전에 정리를 했는데 그것을 쓰레기통에 버렸다면 어디서 다시 유서가 나올 수 있는가요.

답 : 정리를 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쓸까 생각하는 것 같았고, 그것이 노트에 깨끗이 정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끄적끄적댄 것 같았습니다.

문 : 중인의 진술에 의하면 그것이 유서의 초고라는 뜻이고 상당한 양인데 그것을 거기서 쓰다가 버렸다면…

답 : 그것이 유서만 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자기가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유서는 그전부터 조금 생각을 한 것 같았는데, 그때 그렇게 되어 있는 테서 끄적끄적하다가 그냥 버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 : 여하튼 '유서가 써여진 노트도 버렸다'는 취지인가요.

답 : 유서가 써여있다기 보다는 몇가지 끄적끄적댄 거지 몇 줄씩이나 되는 양은 아니었습니다.

문 : 조금전 주신문에 있어서는 중인이 답변하기를 '장을 넘기며 유서가 써여져 있었고 거기에 계속하여 썼을 것이다'라고 하였지요.

답 : '이어서 썼다'라고는 진술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문 : 5. 6.에도 16:00경 연세대의 대책회의가 있다며 헤어졌나요.

답 : 대책회의가 있다는 얘기는 기억나지 않으나, '연대에 가야 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문 : 백제장여관에서 김기설이 분신 얘기를 하면서 계속 울고 땅바닥을 치면서 자기의 심경에 대해 무슨 말을 한 일이 있는가요.

답 : 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재판장

증인에게

문 : 땅바닥을 치며 운 사실이 있었나요.

답 : 예, 땅바닥을 치면서, 사람들이 속상해서 울 때 통곡하는 모습처럼, 울었던 기억은 납니다.

문 : 울면서 얘기한 내용은 무언가요.

답 : 아까 이야기한대로입니다.

검사 임 철

증인에게

문 : 당시 김기설은 '내가 왜 죽어야 하나', 'X세기들 나 죽을 거야'라고 말한 적이 있었나요.

답 : '왜 죽어야 하나 생각해보자'라고 말한 적이 있으며, 송국영씨와 함께 '의미를 같이 생각해보자'고 이야기했습니다.

문 : 그뒤에 'X세기들 나 죽을 거야'라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는가요.

답 : 예,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문 : 그런 말을 듣고 '김기설이 자살을 결심한 사람답지 않다. 갈팡질팡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였나요.

답 : 그때는 술을 먹었기 때문에 정리되지 않은 채 이야기한다는 느낌은 들었습니다.

문 :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나요.

답 : 술이 취하면 사람들은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잘 못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기설씨는 술에 취해 있었는데도 이야기하는 내용이 논리적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문 : 그러니까 중인이 그때 김기설을 보고 느낀 것은 '술에 취하여 정리되지 않았다'는 것인가요.

답 : 아닙니다. 정리되지 않은 것처럼 보일 텐데 그런 게 아니라 논리적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문 : 검사가 질문한 것은 김기설이 당시에 자살을

결심한 사람답지 않게 갈팡질팡했는가라는 것입니다.

답 : 아닙니다.

재판장

증인에게

문 : 중인의 말은 '김기설이 술을 마셨기 때문에 술에 취해 정리되지 않은 태도를 보였지만 논리적인 면도 있었다고 느꼈다'는 의미인가요.

답 : 예.

검사 임 철

증인에게

문 : 그렇다면 당시 김기설이 자살을 결심한 사람처럼 차분히 행동을 하던가요.

답 : 그때는 차분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문 : 자살을 결심한 것은 틀림이 없던가요.

답 : 틀림없었지만, 사실 저희들은 당황했기 때문에 믿지를 못했습니다.

문 : 그러니까 사후에 김기설이 자살한 것을 보니, 그때 결심을 한 것 같은데, 당시 상황으로서는 술이 취해서 진의를 몰랐다는 뜻인가요.

답 : 그렇습니다.

문 : 5. 25자 동아일보에 중인의 진술³²⁹⁾이 보도되었는데, 그 진술이 증인이 검찰에서 작성한 자술서의 내용과, 그리고 송국영이 전술한 부분은 5. 24자 중앙일보³³⁰⁾에 보도되었는데, 증인의 진술과 송국영의 달라서 어느것이 옳은가 확인하기 위하여 검찰에서 재소환한 사실이 있지요.

답 : 연락은 받지 못하고 바로 찾아왔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 : 검찰청 직원이 증인을 찾아가자 증인은 피하고, 그 이후에 동아일보 조사부를 그만두고 잠적하였지요.

답 : 예.

문 : 잠적한 이유는 무언가요.

답 : 피한 것이 아니라, 어찌면 피한다는 표현이 맞을지도 모르지만, 그전에 송국영씨에게서 전화가 자주

329) 총자료집 I 책 279쪽 참조.

330) 총자료집 III 책 626쪽 참조.

있었는데 '나는 그런 뜻으로 이야기한 것이 아닌데 왜곡하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저에게 했습니다. 제가 그 기사를 봤을 때도 그것은 기사를 읽는 사람들에게, '아' 다르고 '어' 다르듯이, '왜 죽어야 되나 개새끼들아'와 '왜 죽어야 되는지 같이 의미를 생각해보자'는 표현은 분명히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송국영씨는 분명히 자기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았다면 자기가 의도한 대로 보도되지 않았다고 했고, 제가 동아일보 인터뷰를 하면서 분명히 이야기한 것은 '내가 얘기한 것 그대로만 신지 나름대로 바꾸어서 신는다면 절대로 인터뷰에 응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했고, 그래서 바로 나온 상태에서 검찰측에서 온 것이었고, 제가 잠적한 이유는 당시 홍성은씨도 기사화된 후 잠적했다는 얘기가 있었고, 그러한 것에 검찰이 개입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었고, 불안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재판장

증인에게

문 : 증인이 의도적으로 동아일보를 그만둔 것은 인정하는가요.

답 : 의도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문 : 의도적으로 안나온 것은 맞으나, 그것은 휘말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뜻인가요.

답 : 휘말린다는 것보다는 제가 생각한대로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지금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피해가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 송국영씨도 그전에 저에게 '이런 기사가 나가서 미안하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죄책감을 저에게 표현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홍성은씨 문제도 저에게는 두려웠습니다.

문 : 홍성은씨 문제라는 것은 무언가요.

답 :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도 그랬고, 그것이 검찰측이 관련되어 같이 있다는 생각도 들고 해서, 저는 그런 경험이 없었으므로 굉장히 겁을 먹은 상태였습니다.

검사 임 철

증인에게

문 : 증인은 검찰에 처음 소환되어 자술서를 작성할 때 시간별로 나누어서 김기설과의 관계에 대해 초안을 만들고 자술서를 작성하였지요.

답 : 예.

문 : 그 당시에 자술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이 동아일보에 보도되고 지금 변호인의 주신문에 나오는데, 왜 그러한 것을 그 당시에 진술을 하지 않았나요.

답 : 당시 진술하지 않으려고 의도한 것이 아니라, 그때는 있었던 일을 대충 적는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문 : 그러면 그때는 대충 적었다는 이야기인가요.

답 : 시간대는 제가 기억나는대로 다 적었다고 생각하고, 한 말은 제가 생각나는대로 적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문 : 동아일보에 보도된 내용, 그리고 변호인이 법정에서 변호인들이 신문하는 사항 중에는 상당히 중요한 것들이 들어있는데, 그것을 왜 증인이 검찰에 처음 나왔을 때 시간별로 나누어 행적을 물어볼 때 진술을 하지 않았었나요.

답 : 행동한 것은 모두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 : 증인은 변호인의 주신문시 '김기설과의 개별 면담은 증인과는 1991. 5. 6.에, 김용희와는 5. 7., 신기한과는 5. 9., 송국영과는 5. 10.에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 시간과 장소를 수첩에 기재하였고, 증인은 그 기재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지요.

답 : 예.

문 : 위의 부분 등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검찰에서 진술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답 : 그때는 분명히 유서 이야기는 나오지 않은 상황이었고, 그것에 대해 시비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못했으며, '식당에 갔다. 밥을 먹었다. 식당에 갔는데 그 사람이 순가락을 들었다 안들었다'라는 이야기를 모두 쓸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검찰에 갔을 때 분명히 유서 이야기는 저에게 묻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 : 당시 증인이 자술서를 쓰는 이유는 김기설의 분신자살과 관련하여 참고인 자격으로 진술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요.

답 : 예.

문 : 그렇다면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별로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는 취지인가요.

답 : 그때는 유서 생각은 하지 못하였고, 그때 한 행동만 쓴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문 : 이것은 유서와는 관계가 없는 것인데요.

답 : 그 생각은 못하고 있었습니다.

문 : 그리고 5. 10.까지 증인들과 만나기로 약속을 하였다면, 그 당시는 김기설이 죽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 되는데 어떤가요.

답 : 식당에서 수첩을 보면 '약속이 다 되어 있네'라고 말했으며, 그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약속은 했었습니다.

문 : 증인의 의견을 묻는 겁니다. 사전에 증인들과 5. 10.까지 약속을 하였다면 그러한 약속을 수첩에 기재할 당시에는 죽을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여지는 데 어떤가요.

문 :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변호인 김창국

증인에게

문 : 증인은 이 수첩이 기억나는가요.

이때 변호인은 증제11-1호 수첩³³¹⁾을 증인에게 제시합니다.

답 : 예, 기억납니다.

문 : 김기설이 개별면담을 하기로 하고 약속한 사람, 날짜, 장소를 적은 것이 이것인가요.

답 : 예.

문 : 식당에서 하이테크펜으로 몇군데 체크를 하여 연락을 해달라고 각별히 이야기한 것이 있는가요.

답 : 예, 전에 약속을 적은 것을 한번 보면서 '약속이 다 되어 있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문 : 하이테크펜으로 체크한 곳이 어딘가요. 기억할 수 있는가요.

답 : 사람 이름은 기억나지 않으나 녹색펜을 쓴다는 것이 특이하여 녹색펜으로 동그라미를 쳤다는 것은 확실히 기억이 납니다.

문 : 이 수첩이 증인이 5. 5. 방통대 서클룸에서 보았고, 그 다음날 식당에서 본 그 수첩이 틀림없는가요.

답 : 안의 내용은 맞습니다.

문 : 곁은 어떻습니까, 전체적인 모양은…

답 : 전체의 모양은…

문 : 이건 그때, 나중에 뜯어진 것이지마는…, '조국은 하나'라고 된 이런 수첩 모르겠어요.

답 : 그건 알고 있습니다.

문 : 그때 본 수첩이 이 수첩 같나요.

답 : 예, 맞습니다.

재판장

증인에게 당시 김기설이 수첩에 기재하는 것을 보았다는 부분을 표시하라고 명하고 증제11-1호 수첩 5. 6. 12란³³²⁾을 제시하다.

변호인 김창국

증인에게

문 : 이 수첩을 보면 5. 7.로 송국영과 약속을 했다가 그래서 5. 7. 날에 '국영'이라고 적었는데, 송국영이 5. 7.은 시간이 없다고 하여 '국영'이 이름을 펜으로 지우고, 11.로 약속을 해서 11. 날에 국영이 이름을 적은 것인가요.

답 : 예.

문 : 그리고 7.은 용희를 만나기로 약속을 해서 용희 이름을 적은 것인가요.

답 : 예, 바꾸어서 다시 용희로 했습니다.

문 : 증인이 김기설의 바로 옆자리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쓰는 것을 증인이 다 본 것인가요.

답 : 예.

검사 임 철

증인에게

문 : 김기설이 수첩의 전화번호부란에 연락할 사람이라고 하이테크펜으로 동그라미를 쳤다고 했는데, 당시 몇 사람이나 치던가요.

답 :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마주 앉아서 밥을 먹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치고 있는 것만 보았습니다.

문 : 그러면 장을 넘겨서 동그라미를 치던가요, 아

331) 총자료집 I 책 717쪽 참조.

332) 총자료집 I 책 729쪽 참조.

니면 한 페이지만 치던가요.

답 : 장을 넘긴 것으로 기억합니다.

문 : 끝까지 다 치던가요.

답 :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문 : 홍성은의 진술에 의하면 연락할 사람의 이름에 하이테크펜으로 동그라미를 친 것은 홍성은이 목격을 했다고 하는데, 말이 틀린 것이 아닌가요.

답 : 저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문 : 동그라미를 이미 친 위에 홍성은 앞에서 또다시 쳤다는 결론이 되는데 맞는가요.

답 : 처음부터 끝까지 쳤는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치는 것은 분명히 제가 봤습니다. 녹색 펜으로 쳤기 때문에 기억에 많이 남으며 '왜 녹색 펜을 쓸까'란 생각을 해서 '녹색을 좋아해요'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문 : 그때 김기설이 필기구를 몇 가지 가지고 다니던가요.

답 : 그건 기억이 안나고..., 다 꺼낸 것이 아니므로 제가 쓰는 것을 본 것은 녹색 펜이었습니다.

문 : 그러면 증인과 약속한 것을 기재할 때도 녹색 펜을 사용하였나요.

답 : 예, 그때 쓰는 필기구는 녹색 펜이었습니다.

문 : 증인은 김기설과 알게 된 이후 김기설의 메모지에서, 약속메모를 적는 수첩에서, 글씨를 쓰고 있는 노트에서 김기설의 글씨를 보았다고 진술했지요.

답 : 노트에 쓰는 것은 자세히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메모지도 보지 못했습니다.

문 : 그럼 수첩만 보았나요.

답 : 예.

문 : 수첩에 약속을 적은 몇자 되지 않는 것을 보고서 그 필체를 다른 사람의 필체와 구별하고 동일성을 인식할 수 있는가요.

답 : 훌려쓰는 글씨로서 같다라고 생각했고, 약속장소를 다른 사람은 전혀 알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의 만남에 대해서 전민련에 계시는 분들은 아마 아무도 모르고 있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 : 묻는 것은 그런 취지가 아니라, 증인이 김기설의 필체를 수첩에 몇자 적는 것을 봐서 인식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는데, 그 몇자 본 것을 가지고, 어떤 글

씨가 나왔을 때 필체가 동일하다든지 다른 사람의 필체와 구별할 수 있다든지 과연 그렇게 확신할 수 있는 것인가요.

답 : 득실부답.

문 : 평소 친구도 아니고, 처음 만나서 그날 잠시 본 것인데 그것을 기억할 수 있을까요, 다른 필체와 대조하지도 않고, '이 필체와 같다. 저 필체와는 다르다'고 할 수 있을까요.

답 : 약간 훌려쓰고 조금 훌려쓴 것들을 다 갖다놓고 본다면 확실하게는 알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변호인 김창국

증인에게

문 : 증인은 백제장여관에서 김기설군이 '내가 왜 죽어야 되는지 같이 생각해보자'라고 이야기한 것인가요, 아니면 '내가 왜 죽어야 하나'라고 말했나요.

답 : '내가 왜 죽어야 하는지 그 의미를 생각해봅시다'라고 했습니다.

문 : '개새끼들 나 죽을 거야'라고 하였나요.

답 : 예.

문 : 그렇다면 증인이 그때 들을 때, 그 개새끼라는 것은 누구를 지칭하는 것으로 들었나요. 당시 앞뒤 말과 그때 말이 오고간 분위기로 보아서.

답 :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앞에 '작은 사람'이 거대한 힘에 맞부딪쳐 싸우는 것은 정말 힘들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아들었습니다.

문 : 그러니까 거대한 힘이란 공권력을 의미한다고 알아들었나요.

답 : 그때 하고 있던 얘기가 그랬으니까...

문 :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람들을 지칭하는 욕으로 알아들었나요.

답 :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문 : 증인이 검찰에서 자술서를 쓴 후, 동아일보 인터뷰기사가 나가고, 또 중앙일보에는 송국영의 인터뷰기사가 나오고, 그래서 검찰에서 소환을 하자 피신을 했다고 하였는데, 증인이 검찰에 출두를 안한 것은 송국영은 '인터뷰할 때 그 기사대로 얘기를 한 것이 아닌데 그 인터뷰를 했던 기자가 왜곡해서 기사를 썼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런 다음에 검찰에서 나와달라

는 요구가 와서, 증인이 검찰에 가면 증인 자신이 매우 시달릴 거라는 생각을 했고, 또 신문 인터뷰기사에 대해 송국영과 대질을 하는 등 시달리는 것이 귀찮았기 때문이 아닌가요.

답 : 귀찮고 두려웠습니다.

문 : 귀찮고 두려운 외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요.

답 : 예, 아닙니다.

검사

변호인 김창국의 증인에 대한 신문은 유도신문이므로 취소할 것을 바라고 이에 이의신청.

재판장

문 : 지금까지의 변호인의 신문은 이를 허용하며 이에 대한 검사의 이의신청은 기각한다 결정고지하고, 변호인에게 앞으로는 유도신문을 금지한다고 고지.

변호인 김창국

증인에게

문 : 증인이 검찰에서 진술서를 작성할 때, 증인으로서는 당시 검사가 묻는 것과 증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부분만 진술한 것이지, 굳이 일부러 감춘 것이 있었나요.

답 : 일부러 감춘 것은 없었습니다.

문 : 만일 지금 여러가지 필적을 가져다 놓고, 김기설의 필적을 고르라고 한다면 지금 명확히 구분해낼 자신은 없지요.

답 : 예, 없습니다.

변호인 박연철

증인에게

문 : 5. 5. 방통대 서클룸에서 자기소개를 할 때 증인은 김기설의 바로 옆자리에 앉았었나요.

답 : 예.

문 : 그때 김기설씨가 먼저 자기소개를 한 후, 다른 회원들이 소개를 할 때 김기설은 다른 회원의 소개 내용을 메모하고 있었나요.

답 : 예, 신문지에 메모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문 : 백제장여관에 갈 때, 송국영이 장난으로 '그려면 여관으로 가자'고 이야기했다는데 기억이 나는가요.

답 : '여관에 가자'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그때 저희는 길을 알지 못하여 혜교고 있었는데, 갈만한 곳도 없고, 30-40분정도 혜교 후에, 거기는 여관이 많아서 국영이언니가 '이러다가는 여관가겠어요'라고 했었습니다.

문 : '여관에 가자'고 한 것이 아니고 송국영이 '이러다가 여관가겠어요'한 것이 계기가 되어 가게 된 것인가요.

답 : 예.

문 : 증인은 여관에 2130분경에 여관에 들어갔다고 했는데, 증인의 진술서에는 들어간 시간은 적혀져 있지 않고 '23:00경에 형이 취한 것 같았고 노래를 불렀다'라고만 적혀 있는데, 이것은 여관에 들어간 지 약 1시간반 뒤의 상황을 증인이 기재한 것인가요.

답 : 예, 연결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문 : 23:00경을 잘못 읽으면 꼭 23:00경에 들어간 것으로 오해할 수 있겠는데...

답 : 제가 지금 자술서를 봐도 23:00경에 들어갔다는 것이 아니라 23:00경에 기설이형의 행동을 기술한 것입니다.

변호인 이석태

증인에게

문 : 증인이, 유서가 남이 쓴 것이 아니라는 의혹이 제기되었다는 사실은 언제 처음 알게 되었나요. 보도는 5. 18. 처음 신문에 보도되었는데, 증인은 신문보도를 보고서 유서가 대필되었으며 수사를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인가요.

답 : 예.

문 : 그러면 증인이 자술서를 작성할 당시에는 유서대필 여부라든지 수사의 방향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가요.

답 : 예, 몰랐습니다.

문 : 그때 증인은 검찰에 가서 자술서만 쓰고 진술조서는 작성하지 않았지요.

답 : 예.

문 : 그때 검사가 조목조목 여러가지 항을 따져서 물어본 것인가요, 아니면 증인에게 '증인이 5.5 김기설을 만나서 경험한 것을 기억나는대로 써라'고 해서 쓴 것인가요.

답 : 문답식으로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문 : 특별히 더 물어보거나 그런 적은 없었나요?

답 : 나중에 유서대필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생각이 난 것인데, 다 쓰고선지는 모르겠으나, 그분이 강신육검사인지 이름은 잘 생각이 안나는데, 그분이 '그 글씨 알아? 그 유서 김기설이 유서 맞어?'라고 던지듯이 물어봐서, 제가 '그것이 맞는데요'라고 대답했더니, '살짝 보고 어떻게 알아'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재판장

증인에게

문 : 5.5. 증인이 서클룸에 도착한 시간은 언제였나요.

답 : 10시 넘어서 11시전이었는데, 정확한 것은 기억이 없습니다.

문 : 당시 모인 6사람 중 몇번째쯤 도착한 것인가요.

답 : 제가 중간 정도였고, 제가 도착하니 아마 3사람쯤 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문 : 당시 김기설을 증인들 모임에 지도자로 생각하고 초빙한 것인가요.

답 : 예.

문 : 당시 김기설 본인이 말아서 해보겠다고 하였나요.

답 : 그 모임의 성격 등을 모르므로 좀더 생각해보자고 했습니다.

문 : 그러면 모임의 성격이나 기타 관계를 잘 모르니까 알고나서 확답하겠다고 한 것인가요.

답 : 일단 모이기로 한 것이고 '저희들을 알고나서 그후에 무슨 이야기를 할 것인지, 주제를 뭘로 삼아서 토론할 것인지 결정할 것이며 우선 여러분을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하며 인간 대 인간의 만남이 제일 중요하니까 일단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 : 자기가 리드해서 어떻게 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것을 계속 알면서 논의해보자라는 취지였나요?

답 : 예.

문 : 5.5. 당일 김기설이 술을 마신 것 같은데, 몇 시부터 술을 마시기 시작하였나요.

답 : 13:00경부터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문 : 그럼 서클활동을 하면서부터 마시기 시작한 것인가요.

답 : 자기소개가 그날 주제였는데, 자기소개를 마친 후, 문윤희씨와 융희씨는 가고난 후에 다른 얘기를 할 때부터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문 : 다른 얘기를 하였지만 공식모임중이었지요.

답 : 예, 그렇습니다.

문 : 당시 돈은 누가 낸 것인가요.

답 : 술을 바깥에 나가 1-2번 사았는데, 돈은 누가 낸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문 : 모임중이었고 더구나 대낮부터 술을 먹었는데, 이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나요.

답 : '왜 낮부터 술을 먹어요'라고는 했었지만 이상하게는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문 : 당시 점심식사하러 간 시간은 어떻게 되는가요.

답 : 오후 3-4시경이었는데 확실히 기억은 안납니다.

문 : 점심을 먹으면서도 술을 마셨나요.

답 : 예, 그때는 밥을 위주로하여 술도 마셨습니다.

문 : 밥보다 술을 더 마신 것은 아닌가요.

답 : 그때 저는 술을 마시지 않아 잘 모르겠습니다.

문 : 그후에 저녁식사는 하였나요.

답 : 저녁은 안먹었으며, 그것이 점심겸 저녁이었습니다.

문 : 박경민의 진술에 의하면 자기는 22:00에 헤어져서 집에 갔다는데 이는 어떤가요.

답 : 그것은 박경민씨가 잘못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 : 21:00경이라면 주위에 얼마든지 술을 파는 곳도 있었을 것이고, 굳이 여관에까지 가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이는 어떤가요.

답 : 당시 기설이형이 피곤하다고 하였기 때문에,

30-40분 계속 헤매다가 그분을 쉬게 해주고 우리는 가야겠다는 생각을 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문 : 그렇다면 증인이 알기로는 여관에 들어간 것이 21:00경이었다는 말인가요.

답 : 21:00는 넘었고 22:00 가까이 되었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40분 가까이 헤맸으니까요.

문 : 증인과 송국영의 진술에 의하면 '그때 분신이 야기를 하기에 왜 그러느냐고 했더니 대답은 않고 울기만 했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사실인가요.

답 : 예, 처음에는 많이 울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문 : 몇시경부터 김기설이 울었던 것인가요.

답 : 몇시경부터 눈물이 나온 것인지는 기억나지 않으나,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울었습니다.

문 : 증인이 검사 신문시에는 '당시 김기설이 술이 취하여 정리는 안되었지만 상당히 논리적인 느낌을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변호인 신문에서는 '상당히 조리있게, '민중이 탄압받는 어려운 현실속에서 자신의 삶의 안위만을 고집할 수는 없다. 모두가 잘사는 자유스러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특히 잇단 대학생들의 분신을 막기 위해서 자신이 나설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자기도 남들처럼 평범하게 결혼도 하고 가정도 갖기를 바라는 사람이지만, 분신을 결심한 경위를 이해해달라'는 말을 하였다'고 하였는데, 이는 자기의 생각을 강력히 나타내는, 어찌보면 설득조의 이야기인데, 어느쪽이 더 정확한 표현인가요.

답 : 저희들이 계속 말리는 상황에서 한 이야기였고, '자기도 결혼도 하고 싶다'는 이야기는 같이 이어져서 나온 말이 아니었습니다.

문 : 그런 이야기를 하였다면, 슬탓에 정리되지 않은 느낌을 받았다는 이야기와는 틀린 것이 아닌가요.

답 : 술을 마신 상태에서 올면서 이야기하는 상황이었고, 위 이야기는 제가 정리한 것이며, 예를 들어 '민중이 탄압받는 현실속에서'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무리 살아볼려고 해도 우리 민중은 이렇게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진행된 것입니다.

문 : 증인의 기억이 명확한 것은 아니지만, 당시의 전체적인 흐름이나 분위기는 어느 쪽이 더 가까운가요.

답 : 변호인 쪽입니다.

문 : 그렇다면 그 이유와 명분에 대해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이야기했다는 것인가요.

답 : 자신감이 있다기보다는 의지가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은 당황했었습니다.

문 : 그렇다면 '그 당시에는 슬탓이려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는 증인의 진술과는 맞지 않는 것인가요.

답 : 당시 저희들은 그런 곳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이야기하는지 잘 몰랐고, 그 분이 술을 마셨지만 논리적이다라고 생각은 했었지만 울기도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정말인가라고 생각했습니다.

문 : 그렇다면 '말뿐이고 제대로 실행하겠느냐'라고 생각한 것인가요.

답 : 말뿐이라는 생각은 않고, '슬이 취했으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겠지', '설마'라고 생각했습니다.

문 : 그 다음날 증인이 김기설에게 '어젯밤 이야기한 것이 사실이냐'고 다시 물었을 때, 김기설은 망설임없이 '사실이다'라고 하던가요, 아니면 망설이는 것을 여러번 물어보고 '사실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것인가요.

답 : 5.5. 밤에는 올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확실하지 않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5.6. 이야기할 때는, 물론 숙취때문에 머리가 아프다고 하였으나, 초연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너무 짧기 때문에 설득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5.7. 약속을 정하게 된 것입니다. 경민이형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알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문 : 그렇다면 5.6에는 '틀림없구나'라고 생각한 것인가요.

답 : 그렇게 생각했지만, 경민이형에게 이야기를 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문 : 증인의 물음에 바로 대답을 하였나요, 아니면 망설이다가 마지 못해 대답하던가요.

답 : 망설임없이 '맞다. 틀림이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문 : 증인이 개인적으로 김기설에게 호감을 느낀 일은 있나요.

답 : 호감은 없었고, 저는 '굉장히 딱딱하다'라는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문 : 송국영도 김기설에 대한 감정이 그러했다고 생각하는가요.

답 : 예, 당연합니다.

문 : 3사람이 여관에서 밤을 세운 이유는 무언가요.
답 : 저희들은 가고 김기설형만 거기서 잘 생각이었는데, 분신 이야기를 듣고 저희들이 너무 당황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으며, 혼자 두고 갈 수가 없어서 경민이형에게 전화를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문 : 사진을 찍을 때 김기설이 '사진을 찍을 것이다', '사진을 찍어야 한다'고 말한 일이 있는가요.

답 : '사진을 찍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 : 사진을 왜 찍었는지는 모르는가요.

답 :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나중에 보니 영정 사진이 그 사진이었습니다.

문 : 중인이 피고인 강기훈을 당시에는 몰랐었나요.

답 : 예.

문 : 피고인을 언제 처음 알게 된 것인가요.

답 : 텔레비전을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문 : 홍성은은 언제 알게 된 것인가요.

답 : 5. 8. 기자회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검사 신상규

증인에게

문 : 5. 5 김기설을 만난 것은 몇번째 만난 것인가요.

답 : 세번째 만난 것입니다.

문 : 변호인 신문시에 '국영이, 경민이 등 여럿이 같아서 만났다'고 한 것은 처음에 모임을 하기로 했다가 늦게 오는 바람에 무산되었을 때 이야기고, 그후에 4. 26 이후 5. 5 사이에 김기설이 연세대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중인이 연세대로 찾아가서 연세대 근처에 있는 카페에서 단둘이 만났던 적이 있지요.

답 : 그것은 잘못 알고 있는 것이고, 그전에 만난 적은 있는데 그것은 캘터키후라이드치킨 대학로에서 만나기로 했었는데, 그 형이 안 나와서 거기에 경민이 형이 그 옆의 호프집으로 오라는 메모를 남겼는데, 그래서 그 호프집에서 다 같이 만난 것이었고, 그리고 연대에 찾아갔던 것은 박경민씨가 그분이 연대에 있

다고 해서 알게 된 것이고, 제가 박경민씨에게 '그분 위하는 사람이나'고 물었을 때 만나면 알게 될 거라고 이야기했고, 당시 저는 그분이 전민련에 있는 줄 몰랐었습니다.

문 : 그러니까 5. 5까지 3번 만났지요.

답 : 5. 5이 3번째 만남이었습니다.

문 : 두번째 만났을 때 중인이 연대로 찾아가서 만난 것이지요.

답 : 예.

문 : 그때 혼자 간 것인가요, 같이 간 것인가요.

답 : 국영씨, 용희씨랑 같이 갔으며 경민이형이 갔었는지는 기억이 안납니다. 하여튼 혼자 간 것이 아닙니다.

문 : 중인이 '노트에 쓰는 것, 전화연락번호에 체크해주는 것, 수첩의 일정표란에 약속을 적는 것을 봤기 때문에 글씨를 안다'라고 하였지요.

답 : '여러가지를 갖다 놓고 보라하면 확실히 모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문 : 글씨는 확실히 모른다는 뜻인가요.

답 : 예.

문 : 당시 학생들의 분신이 잇따랐는데 김기설이 분신을 함으로써 어떻게 학생들의 분신을 막는다는 것인지 들어본 적이 있는가요.

답 :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문 : 중인이 인터뷰에서 한 이야기인데..., 분신을 다른 것으로 어떻게 막겠다면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학생들의 분신을 자기가 분신자살함으로서 어떻게 막겠다는 건지 들은 것이 있는가요.

답 :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문 : 그렇다면 위 인터뷰에 난 것은 중인이 제대로 들은 것인가요, 아니면 후에 중인의 생각이 그런 식으로 정리가 된 것인가요.

답 : 그것은 들은 것입니다.

문 : 그 말은 들었으나, 분신함으로서 어떻게 분신을 막겠다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답 : 예.

문 : 중인이 유서의 필적이 문제된다는 것은 5. 18에 신문보도를 보고 알게 되었으므로 5. 14 중인이

검찰청에 가서 자술서를 쓸 때는 필적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대답하였지요.

답 : 예.

문 : 5. 18에 보도된 것은 전민련의 부장 아무개가 유서대필 용의자로 혐의를 받고 있다는 내용이고, 유서의 필적이 문제되므로 죽은 김기설의 집에서 필적을 찾기 위하여 압수수색을 하고, 김기설의 주민등록이 있던 호계동에서 자필진술서를 찾아내어 필적을 따지고 있다는 것은 이미 5. 9부터 보도되기 시작했는데, 5. 14이면 이미 중인도 필적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기사를 충분히 보았을 텐데 5. 14 검찰에서 자술서를 쓸 때 그때 '김기설이 유서의 초안을 잡는다고 노트에 쓰더라'라는 말을 했을 법한데, 일부러 감춘 것은 아닌가요.

답 : 일부러 감춘 것은 아닙니다. 만일 그랬다면 그때 검사가 물어보았을 때 제가 구구절절이 얘기를 했을 텐데, 저는 당시 '그런 것 같은데요'라고 그냥 생각하는대로 이야기했습니다.

문 : 그 당시의 검사는 '유서를 쓰는 것을 보았느냐', '유서를 준비하다나' 이런 것을 물을 수가 없어요 송국영 등 3사람이 만났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검사가 물었으니까요. 그래서 중요한 사항을 시간 대별로 있었던 것을 자세히 쓰라고 했을 텐데, 어쨌든 유서 부분을 그때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다가 어떻게 오늘 변호인 신문시에 나오는 건가요.

답 : 변호인들을 지난번에 만났을 때도, 당시 검사가 '그 필적 알어'라고 물어본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문 : '하이테크펜으로 전화번호란에 동그라미를 치며, 연락할 사람들에게 연락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어떤 사람, 몇명에게나 연락을 해달라고 부탁하던가요.

답 : 그런 것은 안했습니다. 중요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고, 제가 김기설씨에 대해서도 확실히 자세히는 몰랐던 상황이었으므로 그 사람이 누군지, 관련되는 사람이 누군지는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문 : 그 수첩에 김기설이 동그라미를 치며 중인에게 부탁한 것이 5. 6이었고, 실제로 그 수첩에 동그라미를 쳐서 건네받은 것은 5. 7. 밤 홍성은이 넘겨받았

는데, 홍성은은 '하이테크펜으로 연락할 사람들 동그라미를 쳐줘서 받았다'며 이를 받아가지고 있는데, 중인도 그런 부탁을 받았다면, 누구에게 연락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으며, 몇명에게나 표시를 해서 주던가요.

답 : 그러한 것은 기억하지 못합니다.

문 : 증인에게 연락을 부탁하면서, 전화번호부에 사람 이름, 중요한 사람들을 동그라미로 표시를 했다는데, 그러면 그 수첩을 증인에게 주거나 아니면 다른 종이에 다시 써서 증인에게 주었을 텐데 안준 이유는 무언가요.

답 : 주려고 하다가 저녁때 연락할 사람이 있다면서 다시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문 : 그러면 동그라미까지 치고 연락해 달라는 것도 결국 해줄 수가 없게 된 것인가요.

답 : 예, 애초에 건네받을 의향도 없었습니다.

문 : 증인은 처음에 김기설을 한정덕으로 알고 있었다고 하였는데, 김기설이란 것은 언제 알게 되었나요.

답 : 아마 주민등록증을 보고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재판장

증인에게

문 : 김기설과 주민등록증을 주고받을 때는 김기설이 술에서 깨어나 정신이 있었던가요.

답 : 속이 아프다는 얘기를 했으나 취해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문 : 술을 많이 마시면, 걸으면서는 나타나지 않더라도, 다음날 행동이 이상한 경우가 있는데 당시 김기설은 그렇지는 않던가요.

답 : 이상하다고 느끼지는 않았습니다.

문 : 5. 5 김기설이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아는가요.

답 :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1992. 3. 26.

법원 사무관 최 인 기
재판장 판사 임 대 화

□자료 다-2-4 (공판기록 2470~2506)

서울고등법원	
증인신문조서	
(제2회 공판조서의 일부)	
사건	92노401 자살방조 등
증인	이보은()
생년월일	1968.9.18생
주민등록번호	
직업	민주주의 민족통일 전국연합 자주통일위 실무자
주거경기도	
<p>재판장은 증인에게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를 물어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인정하고 위증의 벌을 경고한 후 별지 선서서와 같이 선서를 하게 하였다.</p> <p>다음에 신문할 증인은 재정하지 아니하였다.</p>	

변호인 이석태

증인에게

문 : 증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에서 조사받은 일이 있는가요.

답 : 예.

문 : 그때 사실대로 진술하였나요.

이때 변호인은 증인에게 수사기록 804장-816장, 817장-828장(333)을 제시하고 읽어주다.

답 : 예.

문 : 증인은 1991.5.7. 자정 무렵부터 다음날 새벽 5시경까지 임근재와 함께, 김기설과 같이 있으면서 분신자살을 만류한 사실이 있는가요.

답 : 있습니다. 만난 동안 계속 분신자살을 만류했다기보다, 처음 북가좌동에 있는 포장마차에서는 신변 잡기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상당시간을 보냈었고, 명륜동으로 장소를 옮겨서 시간이 한참 흐른 뒤에 ...

333) 총자료집 I 책 804~828쪽 참조.

재판장

증인에게

문 : 그것은 이런 질문을 먼저 해야 답변이 명확하게 되겠는데, 분신자살을 하겠다고 김기설이 이야기한 사실이 있는가요?

답 : 없습니다. 제가 있는 자리에서 '죽겠다'는 말을 직접 한 적은 없었습니다.

문 : 그러면 김기설이 얘기한 적은 없으나, 증인은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것을 듣고 '이 사람이 자살할 결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시간을 끌어줬다는 뜻인가요?

답 : 이지혜씨의 이야기를 듣고 저는 김기설선배를 만나려갔기 때문에 그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명륜동에 있을 때 임근재씨가 김기설선배에게 '너가 생각하는 것은 소영옹주의에 불과하다'라면서 본격적인 만류를 하기 시작하였고, 저도 그 옆에서 '선배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저도 납득을 못하는 일인데 어떻게 국민대중들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라면서 말을 거들었습니다. 그때 김기설선배는 저희들의 말을 수긍하는 듯했고, '나가서 더 이야기를 하자'면서 함께 나왔습니다.

변호인 이석태

증인에게

문 : 그때 김기설의 기분이나 표정이 전체적으로 어땠는지 기억하나요.

답 : 북가좌동에서 신변잡기적인 이야기를 나눌 때는 시종일관 무척 밝은 표정이었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등 웃음을 띤 표정이었습니다. 명륜동에 가서는, 시간이 좀 길어지면서 '지루하다. 빨리 일어나자'라는 이야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문 : 당시 증인과 임근재가 보는 앞에서, 김기설이 그가 쓴 메모를 찾은 일이 있는가요.

답 : 있습니다.

문 : 그 경위가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말해줄 수 있나요.

답 : 제가 임무영선배에게 '김기설선배와 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 전화를 하러 나가던 차에, 김기설선배가 명륜동 술집 문으로 빠져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임근재선배가 뒤쫓아 나왔고, 제가 밖에 전화를 걸려고 나가는 모습이 불쾌하게 여겨질 것 같아, 다시 술집 안으로 들어가 가게에 있는 전화를 이용하여 연세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한참을 기다렸더니, 임근재씨와 김기설선배가 같이 들어왔고, 자리에 앉자마자 임근재씨가 리포트용지 4분의 1 정도되는 종이를 꺼내주면서 '후배가 보는 앞에서 창피하니까 보여주지 말고 내가 알아서 찢어라. 네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소영옹주의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기설선배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것을 찢었습니다.

문 : 그 당시에 임근재가 메모를 가지고 있다가 김기설에게 준 것인가요?

답 : 예.

문 : 임근재가 그것을 어디에서 얻었는지 그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던가요?

답 : 이지혜씨가 연세대로 와서 상황을 알린 뒤로 저희는 김기설선배와 같이 자취를 하는 사람들을 찾아서 그 사람들에게 김기설선배의 행방을 찾아보도록 했습니다. 그때 임근재씨가 자취방에 갔더니 김기설선배는 방에 없었고, 김기설선배가 쓰다만 메모지인 리포트용지가 놓여 있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임근재씨로부터 그 뒤에 전해들었습니다.

문 : 임근재씨가 메모를 발견한 것이 정확하게 언제였나요?

답 : 5.7. 분신 소식을 들은 것이 21:00경이었으므로, 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으나 22:00에서 23:00 사이였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문 : 증인은 혹시 그 메모내용을 알고 있는가요, 아니면 후에 임근재에게 그 메모내용을 확인한 적이 있는가요?

답 : 본 일은 없고, 뒤에 임근재씨가, 김기설씨 분신 후에 해준 이야기로는, 유서의 서두와 유사한 내용이었다고 하였습니다.

문 : 당시 김기설과의 대화중에 피고인에 관한 얘기가 있었나요?

답 : 없었습니다.

문 : 증인 등과 같이 있을 때 김기설은 술에 취한 상태였나요?

답 : 맥주를 상당히 많이 마셨는데도 김기설선배는 취한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얼굴색도 전혀 변하지 않았었고, 목소리도 마찬가지여서 취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문 : 증인 등이 그날 새벽 김기설을 놓친 후 그의 행방을 찾는 과정에서 증인이나 다른 사람이 김기설의 자취방에 가보거나 전화하여 확인한 사실이 없었나요?

답 : 김기설선배를 명륜동에서 잊어버린 후에 임근재씨와 연대로 같이 돌아왔습니다. 혹시 김기설선배가 연대로 돌아오면 만류할 생각으로 연대에서 한참 기다리다가, 혹시 전화온 게 있나 해서 상황실에 올라가 보니, 상황실에 있던 한 사람이 '홍성운이라는 사람에게 전화가 왔었는데, 이대앞에 있다는 김기설선배와 전화를 했다고 하더라'고 하기에, '김기설선배가 이 부근에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에 임근재씨가 자취방으로 달려갔었습니다.

문 : 갔다오고 나서 '가보니 김기설이 없더라'라는 이야기를 하던가요?

답 : 예, 김기설선배가 거기 없었다는 얘기만 전달 받았습니다.

문 : 증인은 1991.4.말경부터 강경대군 타살사건과 관련하여 연세대 학생회관에 설치된 범국민대책회의 총무국에서 문서수발업무 등을 담당하는 일을 하였지요.

답 : 예.

문 : 증인이 위 총무국에서 일을 하던 1991.5.9. 낮 전민련 실무자인 최재인으로부터 김기설 관련자료가 들어있는 서류봉투를 받은 일이 있나요?

답 : 제가 다른 업무를 보고 있었으므로, 최재인선배가 '김기설열사 분신관련자료'라고 써여진 노란봉투를 보이면서 '이 봉투를 맡아달라'고 하기에 서류함에 집어넣었습니다.

문 : 그때 그 서류봉투가 봉해져 있었나요, 아니면 열려져 있었나요?

답 : 봉해진 상태는 아니었다고 기억합니다.

문 : 그러면 그것을 받아서 서류봉투 속에 있는 자료를 증인이 확인해 보았나요?

답 :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

재판장

증인에게

문 : 당시 증인이 받아서 넣은 건가요, 아니면 최재인에게 넣어라고 해서 최재인이 직접 넣은 것인가요.

답 : 제가 봉투를 직접 받지 않고, 최재인씨에게 '서류함에 집어넣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최재인씨가 집어넣은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변호인 이석태

증인에게

문 : 위 서류봉투는 당시 어디에 보관되어 있었나요.

답 : 범국민대책회의 총무국실에,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라면박스보다 재질이 두껍고 부피도 큰 박스를 놓고 거기에 중요한 서류나 문건들을 파일을 해서 집어넣기도 하고 봉투로 집어넣기도 해서 보관했습니다. 그리고 문건과 관련된 것은 총무국원들이 다루게 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상황이 정부당국과 대책회의가 팽팽하게 맞서 있었으므로 문건이 잘못 유출되어 이용당하는 상황에 대한 염려가 있었으므로 문건의 보안에 대한 책임을 총무국 직원들이 져야 했습니다.

재판장

증인에게

문 : 그러면 당시 보관한 곳이 라면상자보다 크고 좀 두꺼운 종이상자였나요.

답 : 예.

문 : 그러한 종이상자가 몇개나 있었나요.

답 : 처음에는 박스 하나에 있었는데, 시일이 지나면서 문건들이 많아지자 박스가 두개로 늘었습니다.

문 : 당시에는 박스가 몇개였나요.

답 : 확실한 기억은 없으나,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변호인 이석태

증인에게

문 : 총무국 일은 증인 혼자서 담당하였나요.

답 : 아닙니다. 총무국원들이 있었습니다.

문 : 누구누구였나요.

답 :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있던 총무국원으로는,

민주당 대의협력국 파견인 김극목씨가 있었고, 당시 신민당 대의협력국 파견인이었던 심상대씨, 나라사랑 청년회의 송현진씨가 주로 총무국실에서 같이 업무를 맡았습니다.

문 : 증인 등 총무국 업무담당자의 허락없이 다른 사람이 총무국에 보관되어 있는 서류를 임의로 보거나 반출할 수는 없지요.

답 : 예.

문 : 증인은 1991. 5. 12. 위 서류봉투속에서 김기설이 사용하던 전민련 수첩을 꺼낸 일이 있었지요.

답 : 예.

문 : 그 경위는 어떤가요.

답 : 5. 12. 아침경에 전민련 선전국원이었던 원순용씨가 저에게 와서 '김기설을 매장하는데 신분증이 필요하다. 그 신분증을 재인이가 너에게 맡겼다고 하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억이 없었는데 곰곰히 생각해보니 그 자료봉투가 생각이 나서 서류함을 찾아보았고, 그 자료봉투에서 수첩을 발견했습니다. 그 수첩의 갈피…, 수첩 카바에 끼어 있었는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수첩카바에 주민등록증이 끼어 있어서 주민등록증을 꺼내고 다시 수첩은 자료봉투에 넣어서 사물함에 보관했습니다.

문 : 그러면 그때 수첩을 본 것이 처음이었나요.

답 : 예.

문 : 그때 그 수첩의 기재내용이나 모양새, 형상을 자세히 보았나요.

답 : 자세히 보지 못하였으나 인상에 남을 정도였습니다. 내용은 살펴보지 못하였습니다.

문 : 김기설의 전민련수첩이 들어 있는 서류봉투는 1991. 5. 13. 오후 총무국의 다른 서류와 함께 종이상자에 넣어진 채로 봉합되어 명지대로 옮겨졌지요.

답 : 예.

문 : 그 경위는 어떤가요.

답 : 5. 14. 아침에 강경대군 장례가 명지대로에서 빌인하기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세대측에 계속 철수압력을 받고 있던 터여서 시신이 명지대로 옮겨지면서 동시에 저희 대책회의 관계자들과 비품들도 명지대로 옮겨졌습니다.

문 : 상자를 옮길 때는 어떤 상태로 봉합하는가요.

답 : 이송중에는 물품들이 종이상자 밖으로 빠져나올 염려가 있으므로 총무국원들이 테이프로, 파란색 테이프인지 노란색 짙은 테이프인지는 모르겠으나, 직접 봉하고 트럭편으로 명지대로 옮겼습니다.

문 : 증인이 직접 봉함하였나요.

답 : 저도 비품을 썼던 기억은 있는데, 그 서류상자를 제가 직접 옮겼는지는 기억할 수 없습니다. 총무국원들이 함께 비품정리를 하고 옮겼던 기억이 납니다.

문 : 테이프 굽기는 기억나는가요.

답 : 청색테이프였던 것 같고, 흔히 쓰는 넓이가 10센티정도되는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문 : 그후 종이상자는 봉해진 채로 1991. 5. 15. 경 연세대로 옮겨졌다가 개봉되지 아니한 채로 다시 1991. 5. 18. 오전 전민련 실무자인 김현수가 운전하는 피업차량에 실려 전민련 사무실로 보내졌나요.

답 : 예, 5. 14. 명지대로 갔을 때는 장례준비로 문서나 문구, 비품들을 열어볼 겨울이 없었습니다. 당시 박스는 3개였는데 2개는 서류박스였고 하나는 문구박스였는데, 장례준비로 열어볼 필요가 없었고, 봉해진 채로 두다가 5. 14. 장례가 아현동 토터리에서 마하면 서 운구행렬이 다시 연세대로 돌아오게 되어 연세대 대책회의 활동이 계속되었기 때문에 비품들을 연세대로 다시 옮겼는데 그 과정에서 개봉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문 : 당시 3개의 종이상자 중 하나에 김기설 수첩이 든 서류봉투가 들어 있은 것인가요.

답 : 예.

문 : 당시 3개의 상자 모두 봉해진 상태였나요.

답 : 3개가 다 봉해졌던 것은 아니고, 자료봉투가 들어있던 서류함은 대책회의 초기문건들이었기 때문에, 대책회의 활동이 후반기로 가면서 굳이 서류함을 열 필요가 없었고, 그 서류함은 꽉 차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서류를 보관할 수도 없었으므로 명지대로 온 이후에도 열 필요가 없어서 그대로 보관했었으며, 나머지 하나는 새로 첨가되는 서류를 넣을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개봉했으며 나머지 3번째 박스는 문구박스였으므로 당연히 열었습니다. 5. 18. 아침에 나머지 2개의 박스까지 봉하여 전민련 사무실로 보내고, 저는 강경대군 장례행렬을 뒤따랐습니다.

문 : 증인의 진술서에 의하면 '5. 18. 09:00경 장례행렬이 나가기 전에 모든 비품을 전민련에 보관하기 위하여 정리했다. 사물함은 봉함을 해서 …'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의 사물함이란 어떤 것인가요.

이때 변호인은 증인에게 수사기록 815장(34)을 제시하고 읽어주다.

답 : 나머지 2개의 사물함을 봉합한 것입니다.

문 : 결국 1991. 5. 13.부터 1991. 5. 18. 전민련에 보낼 때까지 김기설의 전민련 수첩이 들어 있는 서류봉투는 봉함이 되어 있는 종이상자속에 계속 보관되어 있었지요.

답 : 예.

문 : 증인이 5. 9. 김기설의 수첩이 들어 있는 서류봉투를 전네받은 때부터 종이상자속에 봉함되어 5. 18. 전민련에 보내질 때까지, 전민련 관계자, 김기설의 가족 또는 친지, 검찰 등 다른 사람이 위 서류봉투 또는 김기설의 수첩소지에 관하여 증인에게 묻거나 전네달라고 요청한 일이 있었나요.

답 : 없었습니다. 주민등록증을 찾으라는 원순용선배의 부탁을 받은 외에는 없었습니다.

문 : 5. 12. 주민등록증 얘기 외에는 없었다는 뜻인가요.

답 : 예.

문 : 위 종이상자는 명지대로에서 연세대로 옮겨진 이후 계속해서 총무국에서 보관하고 관리하였나요.

답 : 예.

문 : 증인은 이처럼 명지대에서 1991. 5. 15. 연세대로 다시 옮겨 대책회의 총무국에 근무하면서 1991. 5. 18. 연대를 떠날 때까지 연대내에서 피고인을 본 일이 있나요.

답 : 예, 있습니다.

문 : 몇번 정도 보았나요.

답 : 정확하게 횟수는 기억할 수 없으나, 16.인자 17.인자 기억할 수는 없으나 왔다갔다 하며 마주친 일이 있습니다.

문 : 증인은 당시 피고인이 어떤 경위로 연대에 와 있었는지 알고 있었나요.

답 : 몰랐습니다.

문 : 당시 피고인이 중인이 일하는 총무국을 방문하거나 업무를 도와준 일이 있었나요.

답 : 없었습니다.

문 : 당시 피고인이 중인에게 김기설의 전민련 수첩과 관련하여 말하거나 기타 김기설의 분신자살과 관련하여 서로 대화를 나눈 일이 있는가요?

답 : 없었습니다.

문 : 총무국에서 일하는 사람들 중 중인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 중 피고인과 아는 사람이 있었나요?

답 : 제가 아는 한에는 없었습니다.

문 : 그 사람들이 총무국에서 상근하였나요?

답 : 5. 18 강경대 장례행렬이 나갈 때까지 같이 있었고 그 대부분은 명동농성도 같이 했습니다.

문 : 중인은 언제 어떤 경위로 피고인이 이전 유서 대필 혐의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나요?

답 : 5. 18 저는 모금책임을 맡고, 모금함을 실은 트럭을 타고 장례행렬을 따랐는데, 아현동 로타리에서 전경들과 대치하고 있을 때 차안에서 카 스테레오를 통해서 '전민련의 케이(K)모군이 유서대필 혐의를 받고 있다'라는 내용의 방송을 들었으며, 그 방송을 듣고 임무영씨에게 달려가서 '그 사실을 아느냐'고 했더니 '국민일보가 나왔다'는 얘기를 하였습니다.

문 : 그때 중인은 보관하고 있던 김기설의 수첩을 찾아 검찰에 제출하는 등의 생각은 하지 못하였나요?

답 : 못했습니다.

문 : 그러면 당시 중인은 수첩이 총무국에 있다는 사실조차 알고 있었나요?

답 : 그때 제 업무는 총무국 대책회의 업무였는데 그 업무가 바쁘고 산만한 일들이었기 때문에 수첩이나 김기설선배 문제에 관심을 가질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수첩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문 : 중인은 5. 19. 김현수로부터 김기설 수첩의 소재에 관하여 질문을 받은 일이 있지요?

답 : 5. 19. 교회예배에 참석하고 가까운 친지들과 함께 외식을 나갔는데, 집에 전화를 했더니 전민련에서 저를 찾는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민련에 전화를 해서 김현수부장님과 통화를 했는데, '수첩을 네가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 수첩이 있어야 한다'

고 하시기에 '총무국 사물함 3개가 있는데 그중의 하나에 자료봉투가 들어 있는데 그안에 보관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약 5분 뒤에 다시 전화를 하여 찾았느냐고 물었더니 찾았다고 했습니다.

문 : 중인은 김현수가 위 수첩을 찾았을 당시 위 수첩이 들어 있는 서류봉투가 보관되어 있는 종이상자가 봉합 또는 개봉되어 있었는지 나중에 김현수에게 확인한 사실이 있나요?

답 : 확인했습니다.

문 : 어떤 상태로 되어 있다고 하던가요?

답 : 청색 테이프로 봉해져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문 : 중인은 당시 김현수가 왜 김기설의 수첩을 찾고 있었는지 알고 있었나요?

답 : 수첩을 찾는다는 얘기를 듣는 순간 '그것이 유서대필 혐의를 벗을 수 있는 자료가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 : 중인은 그날 저녁 늦게 명동성당으로 가서 서준식 전민련 인권위원장과 비롯한 전민련 관계자들이 김기설의 수첩을 앞에 놓고 논의하는 것을 목격하였나요?

답 : 목격하였습니다.

문 : 그때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나요?

답 : 최규성선생님, 인재근부의장님, 서준식위원장님, 전민련 실무자로서는 박홍순, 이동진, 실무자들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문 : 그때 어떤 얘기가 오고갔으며, 분위기가 어떠하였나요?

답 : 수첩을 가지고 김현수부장님이 복사본까지 해서 들어왔을 때 모두 다 강기훈씨의 유서대필 혐의를 벗게 할 수 있는 유력한 증거가 될 것이라고 확신을 가졌었고, 기쁨에 들뜬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검사 송명식

증인에게

문 : 이 진술서는 중인이 7. 3. 검찰에 출석해서 중인이 스스로 작성하고 다시 검토하면서 첨삭하거나 가감하고 무인한 그 자술서지요.

이때 검사는 중인에게 수사기록 804정-816정을 제시하고 읽어주다.

답 : 맞습니다.

문 : 이 진술서는 중인이 조사를 받고, 검사의 요구에 의하여 전화전 장소의 약도까지 자필로 첨부해 그린데, 중인이 나중에 내용을 직접 읽어보고 서명 무인한 조서가 맞지요?

이때 검사는 중인에게 수사기록 817정-828정을 제시하고 읽어주다.

답 : 예, 맞습니다.

문 : 중인은 성남주민교회 이해학목사의 딸이지요.

답 : 예.

문 : 중인의 부친은 범민족연합 결성준비차 베를린에 갔다가 북조선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 전금철을 만난 사실로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되었지요.

답 : 예.

문 : 중인은 그후 구속자가족모임을 만들기 위하여 전민련과 접촉하다가 1991. 4. 말경부터 전민련 조국통일위원회 상근자로 일하게 되었지요.

답 : 예.

문 : 중인은 그후 강경대군 치사사건을 계기로 1991. 4. 28 결성된 연대 범국민대책회의 총무국에서 일하였지요.

답 : 예.

문 : 그리고 1991. 5. 19.부터 명동성당으로 옮긴 범국민대책회의에서도 일하였지요.

답 : 예.

문 : 중인은 언제 어떤 경위로 김기설을 알게 되었나요?

답 : 만나서 얘기를 했던 것은 전민련에 온 이후이고, 그전에 김기설이란 사람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이 민청련 활동을 한다는 것은 성남에 있을 때 민청련에 있는 선후배를 통하여 알았습니다.

문 : 중인은 김기설이 죽기 직전에 5. 8. 0030경부터 새벽 5시 좀 넘은 시각까지 김기설을 만난 사실이 있지요?

답 : 예.

문 : 5. 8. 김기설의 사망 직후 연대병원 1층 회의

식에서 임근재가 진술한 바에 의하면, 당시 중인이 임근재 및 김기설과 함께 있었다는 말이 전혀 없는데, 과연 중인이 김기설을 5. 8. 새벽에 만난 것이 사실인가요?

답 : 예.

문 : 중인이 5. 8. 새벽 임근재의 연락을 받고 북가좌동의 포장마차에 갔을 때 김기설이 분신하려는 것을 사전에 알고 간 것이지요?

답 : 알았습니다만 사실 반신반의하는 중언이 있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것은 사실입니다.

문 : 임근재의 연락을 받고 중인 혼자만 갔다는데 그것도 사실인가요?

답 : 사실입니다.

문 : 그렇다면 왜 중인만 가고 중인보다 김기설과 친밀하거나 김기설을 설득하여 말릴 수 있는 사람이 가지 않고, 방금 중언한대로 성남에서는 얘기만 듣고 전민련 가서 얼핏 안 사람인 중인 혼자만 갔었가요.

답 : 저를 불러낸 사람은 임근재씨였습니다. 그리고 임근재씨에게 '다른 사람과 같이 가는 것이 좋겠느냐'고 이야기했더니, 임근재씨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분위기를 무겁게 하면 기설이 뛰쳐나갈지도 모르지 않느냐, 내가 네가 온다는 얘기도 하지 않았으니까 와서 분위기를 편안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였고, 저도 많이 걱정이 되었습니다만 임무영선배님과 의논하면서 수시로 전화를 걸고, 가능한 빨리 기설이형과 함께 연세대로 돌아오던지 전민련 사무실로 가라는 부탁 말씀을 전해 들으면서 나왔습니다.

문 : 중인이 북가좌동 포장마차에 갔을 때는 임근재의 말하는 투로 봐서 '분신하려는 것이 상당히 신빙성이 높다'는 생각을 하고 간 것인가요?

답 : '이지혜씨 말이 공연한 말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갔습니다.

문 : 북가좌동 포장마차에 갔을 때 중인은 무슨 옷을 입었나요?

답 : 카키색 짐바를 입었으며, 하의는 무엇을 입었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문 : 당시 머리모양은 어땠나요?

답 : 짧은 커트머리 스타일이었습니다.

문 : 그 당시에 포장마차에 있던 아주머니의 중인

에 의하면, 당시 그 포장마차에 있던 여자의 인상착의를 얘기하면서 '머리는 파마머리에 어깨까지 내려왔다'고 하는데 이는 어떤가요.

답 : 그것은 잘못 본 것이며 제가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은 확실합니다.

문 : 포장마차에 가서 임근재와 중인이 김기설의 분신계획을 만류하였나요.

답 : 포장마차에서는 그런 얘기가 오가지 않았습니다.

문 : 명륜동에 옮겨서 말렸나요.

답 : 명륜동에서는 한참 시간이 지난 뒤에 그런 얘기가 나왔고, 그 상황은 아까 말한 대로입니다.

문 : 아까 얘기한 부분이 전부인가요.

답 : 예, 그렇습니다.

문 : 당시 포장마차에서 중인과 김기설, 임근재가 조용히 노래를 부른 사실이 있는가요.

답 : 좋아하는 노래를 부르겠다며 김기설선배가 '소양강처녀'라는 노래를 불렀고, 저희들도 돌아가면서 노래를 몇곡 불렀는데 술좌석에서 자주 부르는 운동권 가요였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문 : 그후 임근재의 권유로 명륜동 술집으로 자리 를 옮긴 것이 사실인가요.

답 : 예.

문 : 당시 자리를 옮기기 전 김기설이 자취방으로 가서, 입고 있던 쿠리닝과 티셔츠를 양복으로 갈아입은 것이 사실인가요.

답 : 예.

문 : 김기설이 죽은 직후의 임근재의 5. 8자 진술에 의하면, '김기설은 명륜동까지 쿠리닝 차림이었고, 명륜동에서 놓친 후 자취방으로 가보니 김기설의 양복이 없어졌다'고 했는데, 이는 중인의 진술과는 다른 것인데, 어느 것이 사실인가요.

답 : 제 얘기가 맞습니다. 그후 임근재씨와 서로 상황을 얘기했었는데, '임근재씨가 착각을 한 것이다'라고 제가 지적을 하자 임근재씨도 자기의 착각을 시인했습니다.

문 : 명륜동에서 중인이 연대의 임무영에게 전화하여 '김기설 선배의 결심이 선 것 같다'고 얘기했다는 데, 사실인가요.

답 : '우리가 걱정했던 상황이 사실인 것 같다, 가능한대로 빨리 기설이형과 함께 연대로 들어가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문 : '김기설선배의 결심이 선 것 같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은 사실이지요?

답 : 그 결심이 사실인 것 같다는 취지입니다.

문 : 당시 임무영에게 추가로 사람을 보내달라고 요청했었나요?

답 : 추가로 지원을 요청한 사실은 없고, 빨리 들어가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문 : 김기설의 결심이 사실인 것 같으면 다른 사람을 더 보내달라든지, 김기설이 포장마차에서 언급했다는 존경하는 사람을 보내달라고 얘기해야 되지 않은가요?

답 : 저는 당시 저와 임근재씨만으로도 김기설선배를 설득하여 연대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전화로 임무영씨가 '더 사람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우려의 말을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문 : 명륜동 술집에서 임근재가 김기설에게 메모를 주면서, 중인의 아명은 '도래'인데, '도래가 보는 앞에서 젖어라'고 하면서, '네 결심은 소영옹주의에 불과하다'고 하셨다는데, 사실인가요.

답 : 예.

문 : 위 메모내용을 중인은 못봤다고 했지요.

답 : 예.

문 : 당시 임근재가 한 말이 정확하게 '도래가 보는 앞에서 젖어라. 네 결심은 소영옹주의에 불과하다'라고 하였었나요. 이는 중인이 조사받을 때에도 이를 물으면서 확인하고 정확하게 따옴표안에 넣은 것인데, 그 말 그대로인가요.

답 : 제가 기억하는 한 그대로입니다.

문 : 그렇다면 당시 포장마차에서나 명륜동 술집에서 임근재가 김기설에게 '해라', '불과하다'라는 반말 투의 얘기를 하던가요?

답 : 제가 알기로는 나이차가 없었고, 서로 반말을 쓰는 사이였고, 저는 두 선배님께 반말과 존대말을 섞어쓰는 편이었습니다.

문 : 임근재의 진술에 의하면, 김기설과 임근재는 '말은 상호 놓지 않고, 허물없이 말을 하며 어울리고

지내는 사이'하는데 당시 말을 놓던가요.

답 : 술자리가 길어서인지 저는 그 자리에서 말을 놓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김기설선배는 존칭을 자주 쓰시는 분인데, 저는 김기설선배에게 반말을 섞어서 얘기를 하곤 했었지만, 김기설선배는 저에게 시종일관 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임근재씨와도, 임근재씨는 말을 주로 놓는 편인데 김기설선배는 항상 놓는 것은 아니었다고 기억합니다.

문 : 중인은 위 메모의 내용은 못 보았어도 그 메모지는 보았지요.

답 : 예.

문 : 위 메모는 리포트용지인가요, 편지지인가요, 아니면 일반적인 메모지인가요?

답 : 대학생들은 일반적으로 리포트용지의 규격에 대해서는 익숙해져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딱 봐서 용지의 질감 등이 리포트용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 : 임근재의 중언에 의하면 편지지같은 종이였다고 하는데 어떤가요?

답 : 임근재씨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제가 보기에는 리포트용지 같았습니다.

문 : 당시 05:10경 김기설이 혼자 전화를 한다며 중인과 임근재의 시야에서 벗어난 곳에 위치한 공중전화 박스로 가서 전화하였다는데 사실인가요.

답 : 예.

문 : 분신계획을 알고 말리러간 중인과 임근재가 왜 김기설을 혼자 시야에 안보이는 곳에 가서 전화를 하게 하였나요?

답 : 전화박스 옆에서 감시하듯이 있는 것이 김기설선배의 신경을 거스르게 할 것 같아서 그렇게 하였습니다. 당시 전화박스가 안보이는 곳이었으나, 멀리 떨어져 있지는 않은 곳이었습니다.

문 : 당시 김기설이 전화를 한 시각은 홍성온에게 전화한 시각과 차이가 있는데, 어디에 전화한 것인지 안다는가요?

답 : 모릅니다.

문 : 그날 김기설은 술을 얼마나 마셨나요.

답 : 김기설선배는 평소 술을 잘 마시는 편이었습니다. 북가좌동 포장마차에서 맥주 10병 남짓 마신 것 같고, 명륜동에서는 맥주를 주문은 했으나, 김기설선

배는 1-2잔밖에 안 마셨습니다.

문 : 중인은 5. 12. 09:00경 원순용이 김기설의 주민등록증을 달라고 하여 자신은 김기설의 주민등록증을 보관하지 않고 있다고 하니 최재인에게 다시 확인하여, 중인에게 준 봉투에 주민등록증이 있다고 하여 그 때서야 비로소 주민등록증이 위 봉투에 들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답 : 예.

문 : 당시 증인이 직접 위 사물함에 든 봉투를 꺼내고 그 속에 든 수첩의 비닐카바에 든 주민등록증을 꺼내주었다는데, 사실인가요.

답 : 예.

문 : 증인이 주민등록증을 꺼내줄 때 봉투안에는 무엇이 들어 있었나요.

답 : 전민련 성명서와 영정사진이 있었던 것 같은데 확신한 기억은 없으며 그리고 수첩과 주민등록증이 있었습니다.

문 : 당시 영정사진은 몇 장이 있었나요.

답 : 기억나지 않습니다.

문 : 최재인의 진술에 의하면 증인에게 위 봉투를 줄 때 주민등록증을 수첩 비닐카바 안에 끼워 넣지 않고, 그냥 봉투를 열고 떨구어 넣었다는데, 그렇다면 5. 9과 5. 12. 사이에 누가 봉투를 열고 수첩을 만진 것인가요.

답 : 최재인씨의 얘기는 착각인 것 같습니다. 5. 9.에서 5. 12. 사이에 위 봉투를 만진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 : 5. 9.부터 위 봉투는 봉해지지 않은 상태로 사물함에 있었고, 5. 12., 5. 15., 5. 18., 5. 19., 장소를 옮기면서도 데이프만으로 봉하였지요.

답 : 예.

검사 신상규

증인에게

문 : 중인과 김기설 임근재 3사람이 같이 있을 때, 김기설과 임근재 2사람의 관계는 어떤 것 같았나요.

답 : 서로 많이 아는 관계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고, 같은 방을 쓰는 룸메이트의 평범한 관계라고 생각되었습니다.

문 : 잘 아는 관계라고는 생각되지 않고...

답 : 잘 아는 관계라는 것은 아까 검사님이 '수년 전부터'라고 물었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문 : 나중에라도 들었을 텐데 이 두 사람이 5. 8. 김기설이 죽을 때까지 같은 방을 쓴 기간이 어느정도 인지 아는가요?

답 : 잘 모르겠습니다.

문 : 임근재의 진술에 의하면, '김기설이 본명인자 한정덕이 본명인지도 모르고, 한대 3년 중퇴했다는 말을 들었고, 같은 방에서 3. 28. 경부터 한 방을 썼는데, 서로 안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서 사흘에 한번 정도나 본 사이다'라고 하는데, 5시간이나 같이 있으면서도 설득하려 했을 텐데, 증인이 보기에도 사람이 어떤 사이로 보였나요.

답 : 검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어느 정도를 친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문 : 김기설이 죽을 결심을 하고 있는데, 김기설과 더 가까운 전민련 관련자들이나, 김기설이 존경하는 서준식, 김선택, 백기완씨 등이 설득한 것이 아니고, 같은 방에서 생활한 지가 한 달밖에 안되는 임근재가 어떻게 설득한 것인가요?

답 : 김기설선배가 서준식위원장님 등을 존경한다고 한 것은 술자리에서 한 말이었고, 임근재선배가 김기설선배와 술자리를 같이 한 것은 자취방에서 찾으러가서 김기설선배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문 : 한 달 동안 방을 같이 쓰면서 사흘에 한번 정도 마주칠 정도의 사람이 자살하려는 사람을 혼자서 설득할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답 : 김기설선배도 민청련에 소속되어 있었고, 임근재씨도 민청련에 소속된 동료입니다. 임근재씨는 민청련 연대사업일을 하면서 전민련에 자주 드나들었으므로, 어느 누구 못지 않게 전민련 사람들과 친분이 있었으며, 제가 생각하는 한에서는, 같이 운동을 하고 뜻을 굽히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동지적 연대감은 많은 시간 같이 있지 않은 사람과도 느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 : 위 두 사람은 성남 민청련의 같은 소속원이었고...

답 : 성남 민청련 소속은 아니었고, 김기설선배는

성남 민청련에 있다가 다른 데에 있다가 전민련에 온 것으로 알고 있고, 임근재선배는 민청련 중앙본부 실무자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 : 김기설이 1990. 12. 전민련에 오기 전부터 민청련 중앙본부 임근재와 아는 사이라면 '1991. 3. 28. 방을 같이 쓰게 되면서 처음 알게 되었다'는 임근재의 진술은 거짓인가요?

답 : 아는 바가 없습니다.

문 : 1984부터 마포의 같은 교회에 다니면서 임근재가 김기설을 운동권에 끌어 넣었는데, 그런 얘기를 누구에게 들은 적이 없는가요?

답 : 들은 적이 없습니다.

재판장

증인에게

문 : 증인은 지금도 전민련에 관여하고 있는가요?

답 : 지금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에 파견 나가 상근실무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문 : 증인의 부친이 구속되었다고 했는데 그 재판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답 : 1년6월의 형을 받고, 항소가 기각되어, 지금 원주교도소에 수감중입니다.

문 : 증인 등 3명이 김기설의 자취방에 갔을 때, 증인과 임근재는 방비같이 있고 김기설 혼자 방에 들어간 것이 사실인가요?

답 : 그 방이 연립주택의 옥상 방이었습니다. 그래서 옥상까지는 같이 올라갔고 저와 임근재씨는 방문 앞에 서 있었고, 김기설선배가 옷을 갈아입으러 방에 들어갔었습니다.

문 : 문이 하나이고, 방문을 열면 바로 옥상인가요?

답 : 옥상에 딸려 있는 방이었고, 문이 하나밖에 없는 곳입니다. 옷을 갈아입는 동안만 방문을 닫고 있었고, 그외에는 방문을 열고 이야기도 했습니다. 당시 제가 '새벽인데 왜 양복을 갈아입느냐'고 했더니 '빨래를 안해서 옷이 없어서 그렇다'고 하였고, 제가 청소 좀 하고 살라고 편장을 준 일도 있습니다.

문 : 증인은 '김기설이 쪽지를 찢어서 나오는 것을 봤다'고 하였지요.

답 : 쪽지가 아니라 백지 리포트용지를 봤습니다. 아무

것도 안 써여진 리포트용지를 찢어서 나왔습니다.

문 : 그것을 자세히 얘기할 수 있는가요?

답 : 나오면서 리포트용지를 쭉 뜯어서 접어서 옷 안주머니에 집어넣고 나왔습니다. 문이 열려져 있던 상태로 본 것이며, 당시 저는 바나나가 놓여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집어서 같이 나왔습니다.

문 : 그때 임근재가 무엇을 듣거나 한 적은 없었나요?

답 : 임근재는 저랑 같이 밖에 있었고 방에는 안 들어갔습니다.

문 : 당시 증인의 생각은 어땠나요. 예를 들면 시간 만 끌면 된다고 생각한 것인지, 아니면 무슨 대책이 있었는가요?

답 : 갈 때는 반신반의했습니다. 제 상식으로는 더 이상의 분신은 남독할 수 없었고, 설마 김기설선배가 설마 그런 생각을 했을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뒤에 명륜동 술집에서 '전민련을 그만둡니다', '여자 친구에게 헤어지자는 말을 했습니다'라는 말을 들으면서도 반신반의하였습니다. 명륜동에 가서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죽음을 생각한다'라는 느낌을 받았고, 그래서 임무영선배에게 상황을 알렸습니다. 그뒤에는 다시 분위기가 이완되었습니다.

문 : 당시 그러한 사태를 어떻게 대처해야겠다고 생각하였나요?

답 : 선배가 그러한 생각을 했다는 것이 수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후배인 저로서는 내색을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연대로 빨리 돌아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문 : 증인은 '김기설선배가 너무 자극을 받을까봐 고심했고'고 하였고, 임근재도 그런 취지의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고 시간만 끌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했는데 사실인가요?

답 : 처음에는 그랬으나 뒤에는 본격적으로 언급한 때도 있었습니다.

문 : 그런데 명륜동에 와서 메모를 주면서 '도례가 보는 앞에서 찢어라', '네 결심은 소영옹주의에 불과하다'고 했다는데 갑자기 그런 이야기가 나온 이유는 무언가요?

답 : 제가 전화를 걸고 기다리는 사이에, 기설이형

과 밖에서 그런 류의 얘기를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리에 돌아오자마자 그 얘기가 뛰어나왔겠지요.

문 : 그래서 증인도 '임근재가 드디어 구체적인 얘기를 했구나'라고 생각하여 증인도 그러한 얘기를 했다는 것인가요?

답 : 예.

문 : 서류보관에 관해서는 책임자가 있는가요?

답 : 총무국은 상황실속에 편제되어 있는데, 저희 상황실 회의에서 실무자들간에 내규를 정한 바 있습니다. 서류보관에 대해서는 저와 송현진, 김군모 3 사람이 책임을 겸습니다.

문 : 3명이 공동책임이란 것은 애매하고, 상하관계 라든지, 교대관계라든지는 있었나요?

답 : 당시 긴박한 상황이었고 총무국에는 전국 각지에서는 오는 문의전화도 있었고 각 지역 상황을 알리는 전화도 있었으므로 거의 24시간 운영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상황실 총무국을 지키는 것은 불가능하였으므로 돌아가면서 지켰습니다.

문 : 3사람이 공동책임자기로 하였으나 뚜렷하게 상하관계를 정한 것은 아니고, 교대는 하였지만 시간을 정하여 교대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인가요?

답 : 예, 마땅한 잠자리가 없었기 때문에 총무국 사람들은 총무국에서 상황을 보던지 옆에서 잠을 자던지 하였습니다.

문 : 서류함을 봉함할 때 누가 도장을 찍는가요?

답 : 도장은 찍지 않습니다.

문 : 교대로 할 때는 어떻게 하였으며, 그럴 때는 서로 확인하거나 인수절차가 있었나요?

답 : 일일이 교대할 때마다 확인해 볼 필요가 없었고, 교대가 빈번한 것도 아니었고, 총무국원들은 쉬더라도 총무국 방에서 쉬었습니다. 거의 총무국원들은 총무국 안에서 숙식을 같이 하는 상황이었으며,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다른 의심이 가는 상황은 없었습니다.

문 : 그런데 증인이 바깥에 나와 있는데 내부에서 찾아보지 않고 굳이 증인에게 전화할 필요가 있었던가요?

답 : 수첩을 어디에 보관하고 있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전민련 사람들 중 총무국 일을 같이 한 사

람도 없었고 수첩의 소재에 대하여 아는 사람은 저밖에 없었습니다.

문 : 서류함이 3개밖에 안되고 그중 하나가 문구박스라면 나머지 서류함을 찾아볼 수도 있지 않았나요.

답 : 서류함을 찾아볼 생각을 못하고 있었고, 제가 수첩의 소재를 알려준 이후에 김현수씨가 청테이프로 봉해진 서류함을 뜯어봤다고 합니다.

문 : 그러면 당시 거기 있던 사람들은 서류함속에 들어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인가요?

답 : 몰랐던 것이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몰랐습니다.

1992. 3. 26.

법원 사무관 최인기
재판장 판사 임대화

* 중인 선서서 <생략> (공판기록 2507)

■자료 다-2-5 (공판기록 2508~2526)

서울고등법원

증인신문조서

(제 2 회 공판조서의 일부)

사건 92 노 401 자살방조 등

증인 권범재 (權凡載)

생년월일 1967. 12. 20. 생

주민등록번호

직업 터사랑청년회 회원

주거 서울

재판장은

증인에게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를 물어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인정하고 위증의 벌을 경고한 후 별지 선서서와 같이 선서를 하게 하였다.

변호인 박연철

증인에게

문 : 증인은 성남 터사랑청년회원으로 1989. 여름경 처음으로 김기설을 알게 되었지요.

답 : 예.

문 : 성남 터사랑은 성남 민청련과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었고, 김기설은 성남 민청련의 상근자이고, 증인은 성남 터사랑 학술분과장 일을 맡아 사무실을 자주 나갔었기 때문에 김기설과는 친숙하게 되었지요.

답 : 예.

문 : 성남 민청련에서는 김기설을 한정덕이라고 불렀으나, 증인은 김기설이 본명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요.

답 : 예.

문 : 증인은 1991. 5. 8. 09:45경 티브이뉴스에서 김기설이 분신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한양대에 재학중이던 친구 김시중에게 전화한 후 오전에 곧 연대 세브란스병원으로 갔었지요.

답 : 예.

문 : 그곳에는 이미 김기설의 친구 한송희, 성남 민청련 회원 이효경이 먼저 와 있었지요.

답 : 예.

문 : 증인은 그곳에서 위 이효경이 김기설의 전민련 수첩 중 전화번호란을 복사하여 놓은 것을 가지고 이효경, 한송희 등과 함께 신원을 확인하여 메모하여 가면서 연락을 취하였지요.

답 : 예.

문 : 이 복사본이 1991. 5. 8. 증인이 신원을 확인해 가면서 연락을 취하기 위하여 사용한 것이 맞나요. 이때 변호인은 증인에게 변호인이 제출한 중제20호의 1 전화번호란 복사본(335)을 제시하다.

문 : 예.

답 : 이 사본중에는 증인이 쓴 글씨는 어떠한 것인가요.

답 : 맨위 고기돈 옆에 '대유'라고 쓴 것은 제가 쓴 것이고, 그리고 중간에 김태원 옆에 '대유'라고 쓴 것도 제가 썼습니다. 그리고 대만이라고 쓴 옆에 '파주'라고 쓴 것도 제가 썼고, 한운석 옆에 '대유 방통대', 김지영 옆에 '건대', 유기범 옆에 '파주친구', 오미애 옆에 '파주친구', 홍성은 옆에 '친구', 기철 옆에 '대유', 그리고 '7+4명'도 각각 제가 썼습니다.

문 : 그 다음 장도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답 : 송한철 옆에 '대유', 김상호 옆에 '대유', 구보길 옆에 '대유', 이미자 옆에 '터사랑', 이효경 옆에 '민청', 임수빈 옆에 '터사랑', 박은하 옆에 '파주', 이민종 옆에 '노집', 박동희 옆에 '노집', 그리고 그 위에 '가족'이라고 쓴 것 등도 각각 제가 썼고, 체크해 놓은 것도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박경민 옆에 '대유 방통대', 강명구 옆에 '대유' 등도 제가 썼습니다.

문 : 그 옆에 7명이라고 쓴 것도 증인이 썼습니까.

답 : 예.

문 : 이 전화번호란에 기재된 자중 '고기돈'은 대유공전에 다닌 사람이죠.

답 : 예.

문 : 오후에 영안실로 왔기 때문에 증인이 그에게 수첩에 적힌 이름 중 대유공전 학생의 확인을 부탁한

사실이 있지요.

답 : 예.

문 : 고기돈은 김태원, 한원석, 송한철, 김상우, 구보길, 박경민, 강명구 등이 대유학생이라 하므로 그들 끝에 대유라고 써 두었지요.

답 : 예.

문 : 전화번호란 중 '대만' 옆에 '파주', '김지영' 옆에 '건대', '유기범' 옆에 '파주친구', '우미애' 옆에 '파주친구', '안혜정' 옆에 '파주친구'라고 기재한 것은 누가 썼나요.

답 : 제가 썼습니다.

문 : 중인은 김기설로부터 파주친구들 이야기를 자주 들었고, 1989 가을 때에는 김기설을 따라 파주에 가서 한송홍, 우미애를 만난 사실도 있다고 했죠.

답 : 예.

문 : 그래서 김기설의 파주친구들 이름을 대강 알고 있었죠.

답 : 예.

문 : 또한 파주친구들에 관하여는 한송홍의 도움을 받아 확인했지요.

답 : 예.

문 : 여기 지금 보고 계신 것 첫번째 장 이동진부터 임무영까지 10명의 전민련 간부이름 옆에 세로로 줄을 긋고 체크표시를 한 사람은 중인이었나요.

답 : 그것은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문 : 중인 이름 옆에 기재된 '터사랑'이라는 글씨는 누가 쓴 것인가요.

답 : 이효경 글씨인 것으로 압니다.

문 : 마찬가지로 '정승혜 남승호 허성옥 이승호 최경환 김용비 주연희 장경인 김교근 최애경' 옆에 '민청', '이문범' 옆에 '성남', '김형기' 옆에 '파주친구', 그리고 '이인영 양재원 정목인 임무영 서준식 김선택 김희택 권형택 박선옥 남중현 박홍순 김현수' 옆에 각각 '전민련'이라고 표시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답 : 이효경씨가 쓴 것 같습니다.

문 : 두번째 장에 '김진태' 옆에 '파주친구'라고 쓴 사람은 누구인가요.

답 : 기억이 안납니다.

문 : '이미자 이효경 임수빈' 옆에 각각 쓴 '터사

랑 민청 터사랑'이라는 글씨는 중인이 썼다고 했던가요.

답 : 예.

문 : '박은하' 옆에 '파주', '이민종' 옆에 노동자와 집의 약칭인 '노집'이라고 쓴 사람은 누구인가요.

답 : 저입니다.

문 : 그 다음에 '신동민' 옆에 '파주'라고 쓴 사람은 누구인가요.

답 : 모릅니다.

문 : '박동희' 옆에 '노집'이라고 쓴 사람은 누구인가요.

답 : 저입니다.

문 : 그러면 중인, 이효경,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이 전화번호란에 직접 확인하는데로 옆에 신원을 기재하여 가면서 연락을 취했다는 것인가요.

답 : 예.

문 : 중인 이름 옆에 '터사랑'이라고 쓴 사람은 이효경인 것 같은가요.

답 : 예.

문 : 이효경 옆에 '민청'이라고 쓴 사람은 중인이라고 그랬지요.

답 : 예.

문 : 이 복사본은 1991. 5. 8. 그 당시에 김기설의 전민련 수첩 전화번호란에서 복사해 가지고 와서 중인 등이 사용한 것이 틀림없나요.

답 : 예.

문 : 그 복사본 명단 가운데 동그라미가 쳐지고, 혹은 가위표로 지우고, 빛금을 쳐 놓은 것은 중인이 이복사본을 본 처음부터 그렇게 되어 있었지요.

답 : 예.

문 : 이 복사본의 오른쪽 귀퉁이가 떨어진 것도 기억이 납니다.

답 : 기억 없습니다.

문 : 중인은 평소 성남 터사랑 사무실에서 김기설이 써놓은 글씨를 자주 보았죠.

답 : 예.

문 : 김기설이 대체로 칠판에 써 놓고, 또 주로 어디에다 글을 써놓았습니까.

답 : 제가 주로 본 것은 김기설이 책을 읽으면서

중요한 부분을 노트에 적는다든가 메모해 놓은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문 : 김기설의 글씨가 중인의 눈에는 익어 있는 상태입니다.

답 : 예.

문 : 한눈에 김기설의 글씨를 판별할 수 있는 상태였습니까.

답 : 예.

문 : 중인이 김기설의 글씨를 보았을 때 한눈에 김기설의 글씨라는 것을 알 수 있었지요.

답 : 예.

재판장

증인에게 복사본 위에 증인이 표시했던 부분을 표시하고 명함(위 증인이 표시한 복사본을 조서 말미에 편철하다).

검사 신상규

증인에게

문 : 증인은 귀퉁이 일부가 떨어진 부분에 대해 기억이 없다고 진술했지요.

이때 검사는 증인에게 중 20의 1호 전화번호란 복사본을 제시하다.

답 : 5. 8. 당시에는 귀퉁이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문 : 그 사본에 보면 전화번호부 기재한 것이 몇 면이나 되어 있는가요, 6면 되어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보세요.

문 : 예.

문 : 거기 지금 전화번호부 기재부분 6면이 복사되어 있는데, 원래 김기설 수첩의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던 부분은 7면이었기 때문에 묻는 것인데, 지금 보고 있는 이 복사본이 5. 8. 본 복사본이 틀림없는가요, 아니면 7면이나 그 이상 복사되어 있는 것을 본적이 없는가요.

답 : 그 날 제가 본 것은 6면인 것 같습니다.

문 : 여기에 김기설의 글씨가 있으면 지적해 주십시오.

이때 검사는 증인에게 중제7호³³⁶⁾ 성남 민청련 상황

일지를 제시하다.

재판장

증인에게 위 상황일지의 원본과 대조하여 김기설의 필적부분을 복사본 위에 표시하라고 명한 즉, 증인은 이에 따라 복사본 위에 표시를 하다.(위 증인이 표시한 복사본을 조서 말미에 편철하다).

검사 신상규

증인에게

문 : 지금 증인에게 상황일지, 중제 7호를 제시하고 김기설의 글씨를 지적하게 해서 증인이 붉은 볼펜으로 동그라미를 쳤지요.

답 : 예.

문 : 바로 지금 증인이 동그라미를 친 글씨들이 증인이 알고 있는 김기설의 글씨인가요.

답 : 예.

문 : 그런 글씨들을 늘 보았나요.

답 : 늘 본 것이 아니고 자주 보았습니다.

문 : 증인이 동그라미를 친 부분의 글씨와 위 유서의 글씨가 같은가요.

이때 검사는 증인에게 중 1-6호 유서원본을 제시하다.

답 : 글씨체는 다르지만 기설이형이 썼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 : 왜 그런가요.

답 : 평소 기설이형은 성격이 급한 편이라 메모 등 흘려쓰는 글씨가 많아서 그런 글씨를 많이 보았는데, 글씨를 급하게 쓸 때와 또박또박 쓸 때가 달랐습니다.

문 : 그러면 중 7호의 글씨를 흘려쓰면 중 1-6호의 글씨가 된다는 얘기인가요.

답 : 그런 뜻은 아니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기설이형은 또박또박 쓰는 글씨와 흘려쓰는 글씨, 2가지 필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답 : 사람은 필적은 하나인데, 또박또박 쓸 때도 있고 흘려쓸 때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답 : 예.

문 : 그럼 상황일지에 쓴 글씨는 흘려쓴 것인가요, 또박또박 쓴 글씨인가요.

336) 총자료집 I 책 107쪽 참조.

답 : 또박또박 정자체로 쓴 글씨입니다.
문 : 유서의 글씨는 훌려쓴 것인가요.

답 : 예.

변호인 김창국
검사의 질문은 사실관계에 관한 신문이 아니므로 부적절한 신문이라고 이의신청.

검사 신상규
증인이 김기설의 필적 두 가지를 모두 안다고 진술하므로 이에 대해 확인하는 것이므로 부적절한 신문이 아니라고 진술.

재판장
변호인의 이의신청은 이유있다고 결정 고지하고 검사에게 사실관계에 관한 것이 아닌 막연한 질문은 금지한다고 고지.

검사 신상규
증인에게
문 : 증인은 중제7호 상황일지의 글씨는 김기설의 정자체 글씨이고, 중제1-6호 유서의 글씨는 훌림체라고 생각한다는 것인가요.

얘기하기가 좀 곤란하지 않은가요.
답 : 묵묵부답.

변호인 김창국

증인에게

문 : 증인과 김기설군은 평소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였으므로, 한 회사직원처럼 평소 김기설의 메모라는 지 업무처리 중 쓰는 것을, 그 문서이름은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자주 많이 김기설의 글씨를 보았으므로 그 글씨가 눈에 익어 알 수 있다는 것인지요.

답 : 예.

검사 신상규

증인에게

문 : 증인은 중제7호 상황일지의 글씨는 김기설의 정자체 글씨이고, 중제1-6호 유서의 글씨는 훌림체라고 생각한다는 것인가요.

답 : 예.

문 : 유서의 글씨가 훌려쓰거나 갈겨쓴 것이 아닌데, 증인은 이를 김기설의 훌림체 글씨라고 생각한다는 것인가요.

답 : 글씨를 좀 빨리 쓴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문 : 상황일지의 글씨는 정자체로 또박또박 쓴 것이고, 유서의 글씨는 훌려서 빨리 쓰면 그렇게 된다는 것인지요.

답 : 어떤 의도로 물으시는지는 모르겠습이다만, 두 글씨가 모두 기설이형의 글씨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 : 증인은 상황일지의 글씨를 표를 하고 가려내었는 것으로 보아 증인이 그러한 글씨를 알고 있는 것 같으나, 김기설이 훌려쓰고 빨리 쓰면 유서의 글씨로 변하느냐는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문기관의 감정결과에 의하여 두 글씨가 같은 사람이 쓴 글씨가 아니다라는 판단이 나와 있으므로, 증인에게 짐작이나 추측을 묻는 것이 아니라 확실히 아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문 :

그렇다면 업무일지라든지 제대로 된 문장같은 것은 본 적이 없으며, 전화번호 등 한두 자나 한 줄 정도 적은 것을 본 것밖에 없다는 것인가요.

답 : 묵묵부답.

문 : 그렇다면 증인이 김기설의 글씨를 잘 안다고

여 증인에게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증인을 혼란에 빠트려 잘못 답변하게 할 염려가 있는 유도신문이므로 검사의 발문의 철회를 명하여 줄 것을 바라고 이에 이의신청.

검사

증인이 변호인의 신문시 김기설의 글씨를 잘 알고 유서의 글씨가 김기설의 글씨라고 진술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반대신문의 범위 내이므로 유도신문이 아니라고 진술.

재판장

검사의 감정결과 인용부분은 변호인들의 이의신청이 이유 있으므로 그 부분에 관한 검사의 신문의 철회를 명하여 그 외의 부분에 대한 변호인들의 이의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결정 고지.

답 : 저는 유서의 글씨와 상황일지의 글씨가 모두 기설이형의 글씨라고 생각합니다.

재판장

증인에게

문 : 증인은 필적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그에 대한 지식이 있는가요.

답 : 없습니다.

검사 송명식

증인에게

문 : 증인은 전화번호란 복사본을 가지고 이효경, 한송희 등과 함께 신원을 확인하여 메모해 가며 연락을 하였다고 하였는데, 당시 연락을 누가 하였나요.

답 : 수첩에 나와 있는 사람들 중 제가 연락을 한 사람이 조금 있고…

문 : 증인이 연락한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답 : 임수빈, 이화정은 제가 연락을 했었고, 다른 사람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문 : 연락한 사람이 증인 외에 또 누가 있었나요.

답 : 다른 사람이 연락한 것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문 : 수첩 복사본을 2부 가지고 체크를 해가며 나

누어 연락을 하였다는 데, 연대 범대위 사무실이 그렇게 넓었나요.

답 : 거기서 연락을 한 것이 아니라 저는 영안실 앞에 있는 공중전화에서 연락을 하였습니다.

문 : 그러면 안에서는 누가 연락하였나요.

답 : 기억나지 않습니다.

문 : '대민' 옆에 '파주', '김지영' 옆에 '건대', '유기범' 옆에 '파주친구', '우미애' 옆에 '파주친구', '안혜정' 옆에 '파주친구'는 증인이 썼다고 진술하였지요.

답 :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는데, 여기 와서 보니 '안혜정' 옆에 '파주친구'는 제가 쓴 것 같지 않습니다.

문 : 그럼 '안혜정' 옆에 '파주친구'는 누가 쓴 것인가요.

답 : 모르겠습니다.

문 : '김진태' 옆에 '파주친구'는 누가 쓴 것인가요.

답 : 기억나지 않습니다.

문 : 중제20-1호 수첩사본을 소지하고 있다가 제출한 이효경의 1심 증언에 의하면 '확인과정에서 '대유', '건대'는 권법재가, '파주친구'는 한송희가 썼습니다'라고 하였는데 '파주친구'는 누가 쓴 것인가요.

답 : 제가 썼습니다.

문 : 이 수첩이 검찰에 제출될 때까지 몇 차례에 걸쳐 몇 부가 복사되었는지 아는가요.

답 : 모릅니다.

문 : 그러면 위 수첩사본이 어디에 보관되었다가 어떤 경위로 제출되었는지 아는가요.

답 : 모릅니다.

문 : 다른 사람의 증언에 의하면 '수첩 사본의 우상단의 찢어진 부분은 한상열 공동의장의 전화번호가 있어서, 외부유출을 염려하여, 남들이 찢었다'는데, 증인은 이 수첩사본이 왜 외부로 훌려나갔는지 아는가요.

답 : 모릅니다.

재판장

증인에게

문 : 증인은 당시 수첩을 복사한 것이라는 것을 알았나요.

답 : 기설이형이 가지고 있던 수첩을 복사한 것이
라는 얘기를 이효경씨로부터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문 : 당시 복시를 4-5장 하여 나누어 가지고 연락을 취하지 않고, 일일이 확인하며 번거롭게 연락을 한 특별한 이유라도 있었나요.

답 : 사람이름 옆에 소속과 관계를 써 놓은 이유는, 우리가 누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하자 는 효경이누나의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문 : 가까운 사람인지, 연락할 만한 사람인지를 따지기 위해 쓴 것인가요.

답 : 저희가 확인해 보고 싶었던 것은, 당시 수첩에 적혀 있는 이름들이 대부분 저나 효경이 누나가 모르

는 이름이라 연락의 편의를 위하여, 기설이형과의 관계를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1992.3.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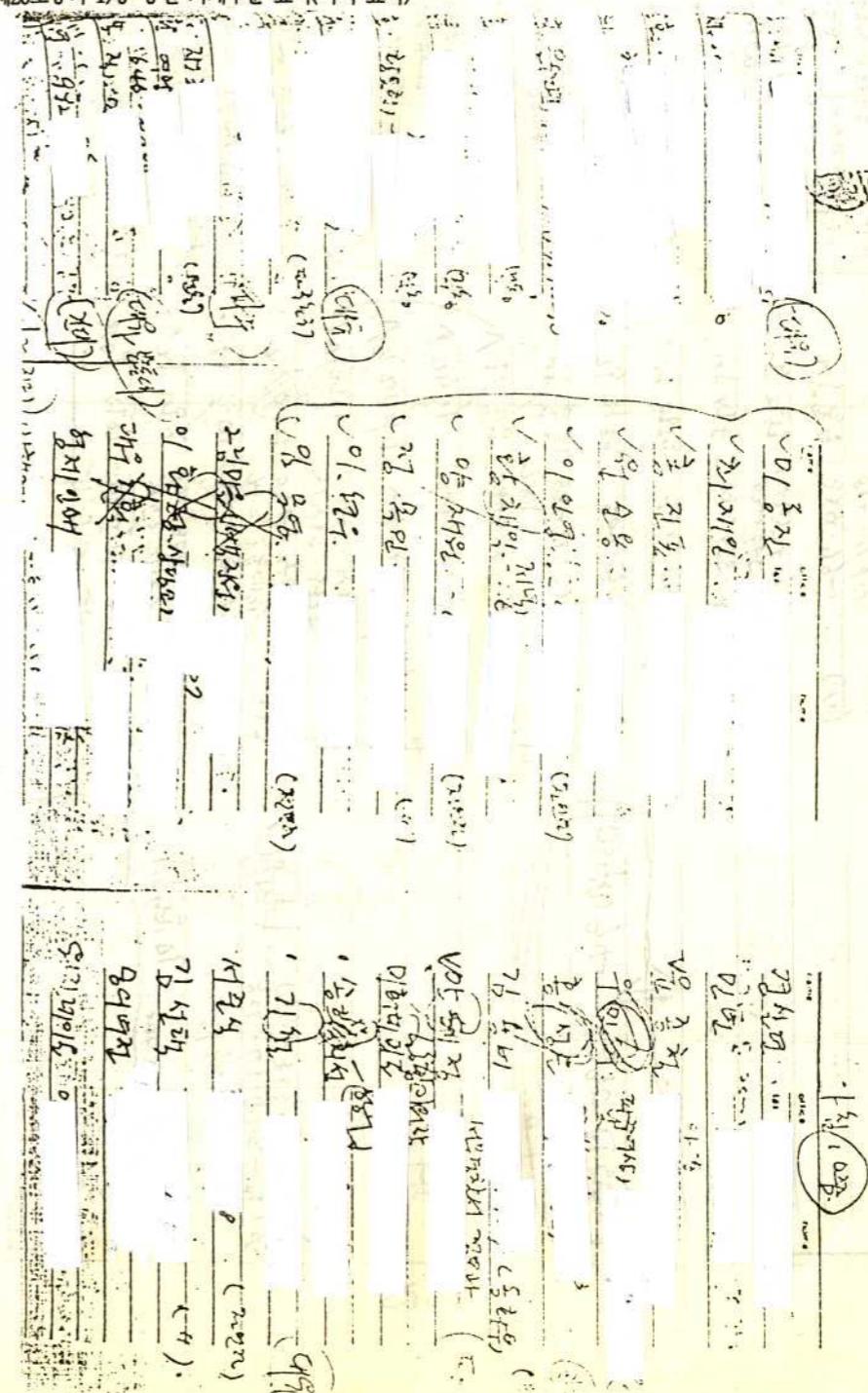
법원 사무관 최 인 기
재판장 판사 임 대 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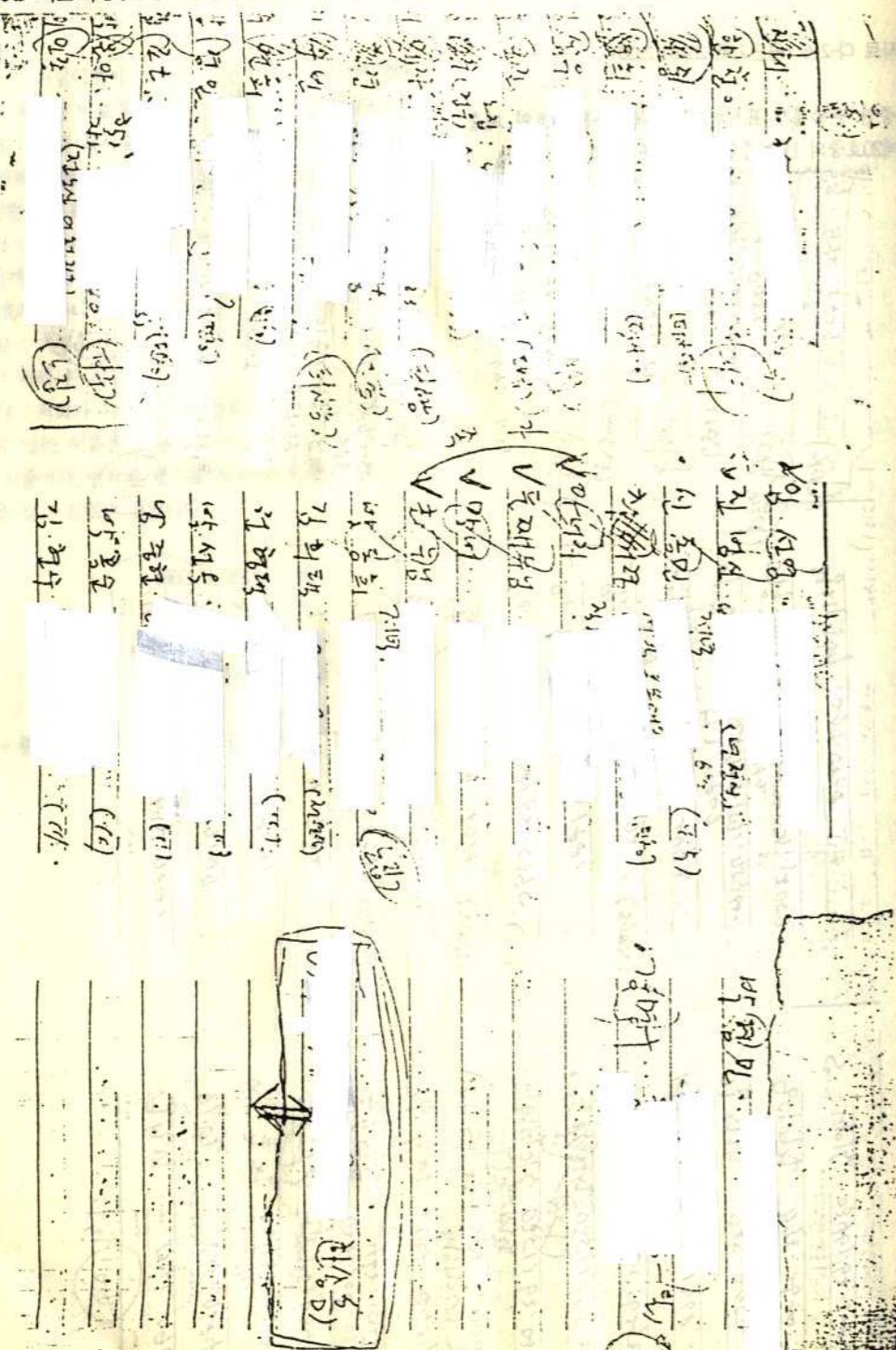
* 중인 선서서 <생락> (공판기록 2527)

■자료 다-2-6 (공판기록 2528~2530)

중인 권법재가 표시한 수첩 복사부분(변호인 제출)

제20호 줄의 1)줄 줄의 기재부분 표시(적색 표시)





▣자료 다-2-7 (공판기록 2531~2542)

증인 권범재가 표시한 상황일지(변호인 제출 증제7호) 중 김기설 필적부분을 표시한 것(적색 표시).